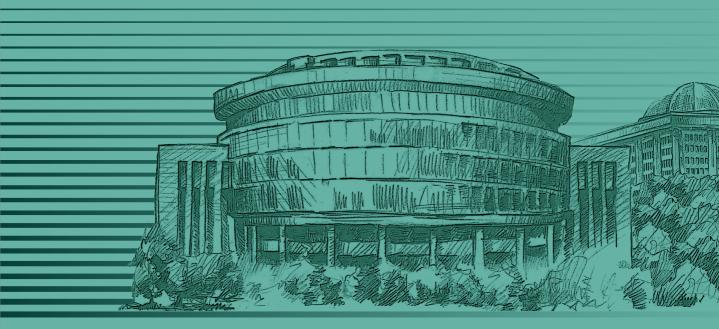


#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 결산분석시리즈॥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송병철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I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신은호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세용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석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 **착 성 l** 홍선기 예산분석관 이강구 예산분석관 이선화 예산분석관

지 원 I 이주호 예산분석관보 장유진 행정실무원 김예은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2021. 8.





# 발 간 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8.8조원, 총지출은 549.9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57.5조원이 악화되어 112.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및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재정운용의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그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 연도 예산과정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 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 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위원회별 분석」,「공공기관 결산 분석」,「2019회계 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성인지 결산서 분석」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성장산업 지원 사업,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업, 재난지원금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④「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 과정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 겠습니다.

2021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 차 례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Ⅰ. 결산 개요	
1. 현 황	3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일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 1C
Ⅱ. 주요 현안 분석	
1.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2 11
2.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합리적 중기	배당정책 수립 필요16
3. 재정 조기집행 관리제도 보완방안	23
4. 연례적인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31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상	t의 개선사항 ······38
6.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h 해소방안 마련 필요 ······45
7. 공공기관 결산서 조기 제출 검토	필요51
8.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개선사항54
9. 물납주식에 대한 효과적인 매각 활	발성화 조치 필요64
10.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규모의 적정	영성 논의 필요 ······71
11. 외국환평형기금의 신중한 외환거	래 운용 필요76
12.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시	l업 사업절차 정비 필요 ······81

#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1. 법령상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 마련 필요89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비중의 관리노력 필요95
3. 특별물가조사 사업의 공정거래위원회 사업과 차별화 필요100
4. 통일기반 조성 연구용역 공개 범위 확대 필요105
5.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역할 분담 명확화 필요 ·· 110
6. 대규모 정보화시스템 구축시 예산편성 전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의무화 필요116
[국세청]
I. 결산 개요
1. 현 황125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129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130
II. 주요 현안 분석
1. 역외탈세 대응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관리 필요131
2.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의 국토교통부 일원화 필요135
3. 일반우편의 모바일 송달을 통한 예산절감 확대 노력 필요140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미상환(체납) 관리 필요145



### Ⅲ. 개별 사업 분석

1. 코로나19를 고려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성과지표 개선 필요 … 150

#### [관세청]

#### Ⅰ. 결산 개요

	1. 현황1	157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1	61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1	162
П.	주요 현안 분석	
	1. 마약 밀수 적발 증가에 따른 감시·단속 강화 필요 ······1	163
	2. 감시정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필요1	68
	3. AEO 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검토 필요 ······1	75
III.	개별 사업 분석	
	1.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필요	80
	2.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및 장비도입 관리 필요1	84

# CONTENTS

## [조달청]

I. 결산 개요
1. 현 황195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0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202
Ⅱ. 주요 현안 분석
1.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의 신속한 공개 필요203
2.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특수성 및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나라장터로의 통합 추진 필요209
Ⅲ. 개별 사업 분석
1.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사업 예산 집행 문제218
2. 실질적 성과평가를 위한 측정방법 마련 필요223
2-1. 해외진출 지원 업체 만족도 측정 설문조사 항목 세분화 필요223
2-2. 정책연구용역 실무 활용률의 상세 활용도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필요226

## [통계청]

١.	결산 개요		

	1. 현황20	31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23	35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2	36
ΙΙ.	주요 현안 분석	
	1. 비대면조사 참여 지원 확대를 통한 행정사업체 응답률 제고 필요 20	37
Ⅲ.	개별 사업 분석	
	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실적 관리 필요 … 24	43
	2.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 비목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25	52
	3 나라톡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우영 사업 통한 진행 픽요	56

# 기획재정부

#### 1

####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89조 1,937억 8,600만원이며, 442조 3,753억원을 정수결정하여 이 중 89.0%인 393조 5,779억 6,500만원을 수납하고 44조 9,349억 1,0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조 8,624억 2,5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 본예산	산 추경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348,438,294	380,483,768	380,483,768	433,589,058	384,791,723	44,934,910	3,862,425	88.7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8,710,018	8,710,018	8,786,242	8,786,242	-	-	100.0
합계	357,234,421	389,193,786	389,193,786	442,375,300	393,577,965	44,934,910	3,862,425	89.0

자료: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조 4,583억 6,800만원이며, 이 중 89.5%인 13조 8,346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6,205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78	예산		예산	지출액	다음연도	H O 0H	집행률
구분	본예산	추경	현액(A)	(B)	이월액 불용액		(B/A)
일반회계	17,421,225	20,222,886	15,236,279	13,612,534	3,232	1,620,513	89.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7,637	222,089	222,089	222,089	-	-	100.0
합계	17,708,862	20,444,975	15,458,368	13,834,623	3,232	1,620,513	89.5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기금 결산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384조 3,960억 4,900만 원이며, 374조 1,118억 7,200만원을 정수결정하여 이 중 100.0%인 374조 1,008억 1,100만원을 수납하고 110억 6,1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7 H	수입계획		괴팅크이	징수	수납액	미스나애	불납	수납률
구분	당초	수정	계획현액 <mark>결정액(A) (B) </mark>		미수납액	결손액	(B/A)	
공공자금관리기금	219,104,342	268,073,827	268,073,827	268,774,029	268,774,017	12	-	100.0
국유재산관리기금	1,609,525	1,611,264	1,804,219	1,608,155	1,608,155	-	-	100.0
대외경제협력기금	1,412,533	1,212,533	1,219,139	1,152,855	1,142,668	10,187	-	99.1
복권기금	5,737,667	6,443,710	6,443,710	6,535,848	6,534,986	862	-	1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56,995	657,258	657,258	712,878	712,878	-	-	100.0
외국환평형기금	110,434,337	106397,457	106,397,457	95,328,107	95,328,107	-	-	100.0
합계	338955,399	384,393,049	384,595,610	374,111,872	374,100,811	11,061	-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지출현액은 384조 5,956억 1,000만원이며, 이 중 97.3%인 374조 1,008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151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조 1,134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7 H	지출	계획	계획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률
구분	당초	수정	현액(A)	(B)	이월액	불용액	(B/A)
공공자금관리기금	219,104,342	268,073,827	268,073,827	268,774,017	-	3,806,958	100.3
국유재산관리기금	1,609,525	1,611,264	1,804,219	1,608,155	104,782	13,299	89.1
대외경제협력기금	1,412,533	1,212,533	1,219,139	1,142,668	10,397	100,973	93.7
복권기금	5,737,667	6,443,710	6,443,710	6,534,986	-	24,445	101.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56,995	657,258	657,258	712,878	-	16,086	108.5
외국환평형기금	110,434,337	106,397,457	106,397,457	95,328,107	-	1,151,734	89.6
합계	338,955,399	384,396,049	384,595,610	374,100,811	115,179	5,113,495	97.3

자료: 기획재정부

####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조 345억 6,900 만원(1.4%)이 증가한 291조 1,975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조 1,707억 5,900만원(△3.1%)이 감소하였다.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0		2020			
구분	2019	예	<u></u> 산	결산	예산 대비	전년 대비
	결산(A)	본예산	추경(B)	(C)	(C-B)	(C-A)
예산	292,699,817	291,288,103	279,595,527	283,633,263	4,037,736	△9,066,554
기금	7,668,502	6,930,399	7,567,464	7,564,297	△3,167	△104,205
합계	300,368,319	298,218,502	287,162,991	291,197,560	4,034,569	△9,170,759

자료: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조 424억 8,700만원 (△19.5%)이 감소한 20조 8,735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9,915억 9,900만원(16.7%)이 증가하였다.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20			
구분	2019	예	산	결산	예산 대비	전년 대비 (C A)
	결산(A)	본예산	추경(B)	(C)	(C-B)	(C-A)
예산	1,048,137	4,171,433	6,696,803	1,589,685	△5,107,118	541,548
기금	16,833,840	19,219,260	19,219,260	19,283,891	64,631	2,450,051
합계	17,881,977	23,390,693	25,916,063	20,873,576	△5,042,487	2,991,599

자료: 기획재정부

#### 라. 재무 결산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기획재정부의 자산은 437조 5,679억 4,500만원, 부채는 789조 7,618억 7,500만원으로 순자산은 △352조 1,939억 3,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12조 3,066억 5,600만원, 투자자산 298조 2,423억 8,400만원, 일반유형자산 26조 5,757억 2,800만원, 무형자산 235억 93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195억 8,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4조 4,501억 5,800만원(5.9%)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이 크게 감소(△7조 7,046억 6,400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대폭 증가(30조 7,439억 4,000만원)하고 일반유형자산도 일부 증가(1조 4,704억 2,500만원)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83조 7,413억 6,100만원, 장기차입부채 704조 8,673억 1,800만원, 장기충당부채 626억 3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조 905억 9,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23조 4,636억 2,800만원(18.5%) 증가하였다. 이는 단기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16조 1,722억 1,800만원 증가, 국채 및 장기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07조 2,960억 1,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	2019	2020	전년도 대비	
구 분	회계연도	회계연도	금 액	비 율
자 산	413,117,787	437,567,945	24,450,158	5.9
1. 유동자산	120,011,320	112,306,656	△7,704,664	△6.4
Ⅱ. 투자자산	267,498,444	298,242,384	30,743,940	11.5
Ⅲ. 일반유형자산	25,105,303	26,575,728	1,470,425	5.9
IV. 사회기반시설	-	-	-	-
V. 무형자산	29,629	23,593	△6,036	△20.4
VI. 기타비유동자산	473,092	419,584	△53,508	△11.3
부 채	666,298,247	789,761,875	123,463,628	18.5
1. 유동부채	67,569,143	83,741,361	16,172,218	23.9
Ⅱ. 장기차입부채	597,571,302	704,867,318	107,296,016	18.0
Ⅲ. 장기충당부채	54,366	62,603	8,237	15.2
Ⅳ. 기타비유동부채	1,103,436	1,090,593	△12,843	△1.2
순 자 산	△253,180,460	△352,193,930	△99,013,470	△39.1
1. 기본순자산	△962,532	△962,532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84,885,930	△385,898,237	△101 <b>,</b> 012 <b>,</b> 307	△35.5
Ⅲ. 순자산 조정	32,668,002	34,666,839	1,998,837	6.1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비용이 재정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2조 1,014억 3,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9조 3,783억 700만원, 관리운영비 1,944억 2,200만원, 비배분비용 2조 2,489억 3,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7조 2,768억 6,800만원, 비배분수익 3조 7,979억 5,6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조 3,207억 3,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4조 9,981억 6,700만원(86.9%) 증가한 10조 7,468억 4,2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 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5조 7,103억 3,3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총 2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 (16조 3,348억 5,400만원)과 국제금융 프로그램(9,268억 3,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80억 1,300만원과 경비 964억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6,168억 6,400만원과 평가손실 522억 7,000 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61). 70					
¬ н	2019	2020	전년도 대비	비 증감	
구 분	회계연도	회계연도	급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391,106	12,101,439	5,710,333	89.3	
가. 프로그램 총원가	22,178,658	29,378,307	7,199,649	32.5	
나. 프로그램 수익	△15,787,552	△17 <b>,</b> 276 <b>,</b> 868	△1,489,316	△9.4	
Ⅱ. 관리운영비	219,304	194,422	△24,882	△11.3	
Ⅲ. 비배분비용	2,827,643	2,248,937	△578,706	△20.5	
IV. 비배분수익	3,689,377	3,797,956	108,579	2.9	
V .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5,748,675	10,746,842	4,998,167	86.9	
VI. 비교환수익 등	△2,425,247	△2,320,738	104,509	4.3	
₩. 재정운영결과(V-VI)	8,173,922	13,067,580	4,893,658	59.9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기초순자산은 △253조 1,804억 6,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52조 1,939억 3,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9조 134억 7,000만원(39.1%)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4조 8,936억 5,8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6조 2,278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65조 371억 9,7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차감항목·가산항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0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8조 774 억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16조 221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 항목은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 1조 9,988억 3,700만원으로 구성된다.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н	2019	2020	전년도 대	비 증감
구 분	회계연도	회계연도	금액	비율
1. 기초순자산	△240,325,740	△253,180,460	△12,854,720	△5.3
Ⅱ. 재정운영결과	8,173,922	13,067,580	4,893,658	59.9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907,530	△87,944,727	△65,037,197	△283.9
Ⅳ. 조정항목	18,226,733	1,998,837	△16,227,896	△89.0
V. 기말순자산(I-II+III+IV)	△ <b>253,180,46</b> 0	△352,193,930	△99,013,470	△39.1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일부 국세수입, ②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③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④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비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에서는 개별소비세 172억 8,000만원, 부가가치세 67억원 및 교육세 52억 2,000만원 등 총 7개 세목에서 383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다. 세출예산에서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과다 편성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52억원(520억원→468억원)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 200억원(8,080억 5,800만원→7,880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에서 17억원이 감액(665억 600만원→648억 600만원)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중액된 사업**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등이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사업에서 예수금 이자상환비용 등으로 예산 13억 3,000만원이 증액(9조 4,355억 9,900만원→9조 4,369억 2,900만원)되었다.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등이 있다. 공공자금관 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은 추가적으로 국채발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542억 100만원이 증액 되었다.3)

<sup>1)</sup> 국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12.

<sup>2)</sup> 국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12.

<sup>3)</sup>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4.

기획재정부는 ①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반등, ②성과가 가시화되는 혁신 성장, ③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성장, ④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혁신 등을 2020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반적인 국세 수입규모에 대한 예측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세목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어 초과 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세목에 대해 추계모형 및 모형에 대입하는 거시변수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정확한 세입규모 예측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9년, 2020년에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중기배당계획보다 낮은 배당성 향의 출자금이 수납되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였으므로, 출자공공기관의 경기 대응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 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실현가 능하고 합리적인 중기배당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은 연례적으로 세입재원의 확보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및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세입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세출예산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최근 여유자금이 과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확보하는 한편, 국유재산 개 발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현황

2020회계연도 총수입 수납액은 세입예산외 수입을 포함할 때 478.8조원으로서 국세수입 285.5조원, 세외수입 26.9조원, 기금수입 166.2조원 및 세입예산외 수입 0.08조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전년 대비 5.7조원 증가한 규모이고, 추경예산 대비 8.1조원 초과수납된 것이다.

####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단위: 조원, %)

(E), 20, 70							
	20	2019		2020			
구 분	결산 (A)	추경대비	본예산	추경예산 (B)	결산 (C)	추경대비 (C-B)	(C-A)
총수입	473.1	△3.3	481.8	470.7	478.8	8.1	5.7
국세수입	293.5	△1.3	292.0	279.7	285.5	5.8	△7.9
세외수입	25.3	△1.6	27.9	29.1	26.9	△2.2	1.6
기금수입	154.0	△0.7	161.9	161.9	166.2	4.3	12.2
세입예산외 수입1)	0.4	0.4	-	-	0.08	0.1	△0.32

주: 1) 세입예산외 수입은 「국고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는 한국은행 국고금 통합계정 여유자금의 운용수익 등임

정부 총수입은 2016~2018회계연도에는 초과수납 되었다가, 2019회계연도에 △3.3조원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2020회계연도에는 다시 8.1조원이 초과수납 되었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 [2016~2020회계연도 총수입 초과·과소수납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추경예산(A)	401.0	423.1	447.7	476.4	470.7
결산(B)	401.8	430.6	465.3	473.1	478.8
초과·과소수납(B-A)	+0.8	+ 7.5	+17.6	△3.3	+8.1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예산액 279.7억원 대비 5.8조원 초과된 285.5조원이 수납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7.9조원 감소한 실적이다.

최근 5년간 국세 예산과 수납실적을 비교했을 때, 양자 간의 차이는 2016년 9.8조원에서 2018년 25.4조원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 1.3조원, 2020년 5.8조원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 [2016~2020회계연도 국세수입 예산과 수납 실적]

(단위: 조원)

					( - 1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A)	232.7	251.1	268.1	294.8	279.7
결산(B)	242.6	265.4	293.6	293.5	285.5
초과⋅과소수납(B-A)	+9.8	+14.3	+25.4	-1.3	+5.8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납실적의 전년 대비 변동폭이 큰 세목을 보면,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주식 등 거래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각각 9.5조원, 2.4조원 초과수납 되었고, 법인세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실적 부진으로 전년 대비 16.7조원 감소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및 민간소비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5.9조원 감소하였다.

한편, 2020년 예산과 대비하여 초과 수납된 세목을 보면, 소득세(+4.6조원), 상속·증여세(+2.0조원), 증권거래세(+3.9조원), 농어촌 특별세(+1.6조원) 등이다. 이중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는 2020년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우발적인 세수증가라고 보인다.

####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19실적	'20	 )년	'10신저대비	· '20예산대비
	구 분	(A)	예산(B)	실적(C)	(C-A)	(C-B)
	▶ 내국세	255.8	240.3	247.0	△8.8	6.6
	- 소득세	83.6	88.5	93.1	9.5	4.6
	- 법인세	72.2	58.5	55.5	△16.7	△3.0
	- 부가가치세	70.8	64.6	64.9	△5.9	0.3
	- 상속·증여세	8.3	8.4	10.4	2.0	2.0
	- 증권거래세	4.5	4.9	8.8	4.3	3.8
일반회계	- 인지세	0.8	1.1	1.0	0.1	△0.1
	- 개별소비세	9.7	9.5	9.2	△0.5	△0.3
	- 과년도수입	5.9	4.9	4.2	△1.7	△0.8
	▶ 관세	7.9	7.7	7.1	△0.8	△0.7
	▶ 교통·에너지·환경세	14.6	15.5	13.9	△0.5	△1.5
	▶ 교육세	5.1	5.0	4.7	△0.4	△0.3
	▶ 종합부동산세	2.7	3.3	3.6	0.9	0.3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주세	3.5	3.2	3.0	△0.5	△0.2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3.9	4.7	6.3	2.3	1.6
	합 계	293.5	279.7	285.5	△7.9	5.8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반적인 국세 수입규모에 대한 예측은 양호하다고 볼수 있으나,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세목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어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세목에 대해 추계모형 및 모형에 대입하는 거시변수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정확한 세입규모 예측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별 세목별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연례적으로 수납실적에 비해 과소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1)의 경우 최근 5년간 예산대비 수납률은 2016년 106.6%에서 2018년 115.9%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104.0%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105.2%로 증가하는 등 예산 대비 수납률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개년 평균 5.8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2016~2020회계연도 소득세 예산 및 수납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A)	수납액(B)	B-A	수납률(B/A)
2016	633,028	684,970	51,942	106.6
2017	695,793	750,658	54,865	107.9
2018	728,956	844,616	115,660	115.9
2019	803,678	835,620	31,942	104.0
2020	884,654	931,087	46,434	105.2
평 균	749,222	807,390	58,169	107.8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상속세의 경우에도 5년간 예산 대비 수납률을 보면, 2016년 102.0%에서 2018년 130.5%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116.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129.0%로 증가하는 등 예산 대비 수납률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개년 평균 0.5조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2016~2020회계연도 상속세 예산 및 수납 실적]

(단위: 억원, %)

	예산액(C)	수납액(D)	D-C	수납률(D/C)
2016	19,557	19,949	392	102.0
2017	20,386	23,419	3,033	114.9
2018	21,696	28,315	6,619	130.5
2019	27,085	31,542	4,457	116.5
2020	30,262	39,042	8,780	129.0
평균	23,797	28,453	4,656	120.0

자료: 기획재정부

<sup>1)</sup> 소득세는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구분되는데, 신고분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성되고, 원천분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로 구성됨

증여세의 경우도 예산 대비 수납률을 보면, 2016년 102.5%에서 2020년 120.1%까지 지속적으로 수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 개년 평균 0.6조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2016~2020회계연도 증여세 예산 및 수납 실적]

(단위: 억원, %)

	예산액(E)	수납액(F)	F-E	수납률(F/E)
2016	32,744	33,551	807	102.5
2017	39,876	44,433	4,557	111.4
2018	39,823	45,274	5,451	113.7
2019	45,194	51,749	6,555	114.5
2020	53,903	64,711	10,807	120.0
평균	42,308	47,944	5,636	113.3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어 초과수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전망대비 자산(부동산·주식)가격 상승폭 확대 및 대자산가의 사망에 따라 우발적으로 세입실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특정세목의 세입실적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예산을 초과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세입실적이 예산의 5% 이상 초과하는 점에 대해서는 세입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2020년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2차례의 세입경정을 실시했음에도 이와 같은 초과수납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시 총지출 규모가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특정세목에서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균형적인 재정지출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GDP, 금리, 실효세율 등 세부 세목별 연관성 있는 거시변수를 추계모형에 대입하여 세입예산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세입예산의 추계모형에 대입하는 거시변수 산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및 추계모형의 정확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up>2) 2020</sup>년 제1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

#### 가. 현황

정부출자수입1)은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과목이다. 2020회계연도 기준 정부출자기관은 총 39개이며, 이 중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출자기관(총 30개)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자기관(1개)을 소관한다.

2020년 기획재정부 정부출자수입은 예산현액 8,549억 9,900만원의 75.3%인 6,436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받았다.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정부출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본예산	<u>·</u> 액 추경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822,239	822,239	0	822,239	606,924	606,924	0	0	100.0
외국환평형기금	32,760	32,760	0	32,760	36,654	36,654	0	0	100.0
계	854,999	854,999	0	854,999	643,578	643,578	0	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다른 부처 소관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전체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sup>1)</sup> 코드: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형기금 52-521

#### [2020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총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7)								1 12, 70)
소관	회계/기금	추경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기하기정법	일반회계	822,239	822,239	606,924	606,924	0	0	100.0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	32,760	32,760	36,654	36,654	0	0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0	0	2,709	2,709	0	0	100.0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	6,796	6,796	2,044	2,044	0	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6,796	50,236	41,493	41,493	0	0	100.0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403,926	403,926	418,912	418,912	0	0	100.0
1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234,687	234,687	302,801	302,801	0	0	100.0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810	810	2,035	2,035	0	0	100.0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4,044	4,044	2,454	2,454	0	0	100.0

주: 대상 출자공공기관 중 여러 회계 기금에 걸쳐 있는 기관이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정부는 2019년, 2020년에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중기배당계획보다 낮은 배당성향의 출자금이 수납되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였으므로, 출자공공기관의 경기 대응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중기배당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2'이다. 정부는 매년 각 정부출자기관이 제출한 배당기초자료를 토대로

<sup>2) &#</sup>x27;배당지급률' 또는 '사외분배율' 이라고도 한다.

배당협의체에서 배당액을 결정하여 수납하게 되는데, 이 때, 각 정부출자기관마다 당기순이익·재무건전성·배당여력·자체수입 확보여력·사회적 책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배당성향이 정해진다.

정부는 2014년에 발표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에서 해외 주요국 공기업 배당수준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중기목표3)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실적은 2015년 26.13%, 2016년 30.25%, 2017년 31.89%, 2018년 34.98%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배당성향이 감소하였는데, 2019년에는 목표치에 △4.52%p(전년 대비 △2.50%p감소)미달하는 32.48%를 나타냈고 2020년에는 목표치에 △7.42%p(전년 대비 0.10%p증가)미달하는 32.58% 수준을 보였다.

#### [연도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목표 및 실적 현황]

(단위: %. %p)

					(	E 11. 70. 70P)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배당성향 목표(A)	25.00	28.00	31.00	34.00	37.00	40.00
배당성향 실적(B)	26.13	30.25	31.89	34.98	32.48	32.58
В-А	1.13	2.25	0.89	0.98	△4.52	△7.42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정부출자주식 배당금 수납 관련 보도자료

이처럼 2019년부터 배당성향이 낮아진 이유는 출자공공기관의 경제활력 투자 (기업구조조정, 혁신성장투자, 환경안전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10개 기관에 1.5조원의 배당금을 축소 조정4)하였고, 2020년에도 이와 유사한 정부출자 배당정책이 유지5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sup>3)</sup> 기획재정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 2014. 12. 19.

<sup>4)</sup> 정부출자수입은 그 감면규모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2019회계연도에는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출자기관의 투자확대를 위해 1.5조원을 감액조정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근거로 1.5조원을 축소 조정했다고 판단함(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9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4,382억원 수납 확정」, 2019.5.21.)

<sup>5) 2020</sup>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정부출자배당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배당정책에 따라 2019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은 전년 대비 △20.4% (△3,678억원) 감소한 1조 4,382억원으로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20회계 연도에는 전년 대비 2.4%(△342억원) 감소한 1조 4,040억원의 수납실적을 보였다.

[정부출자수입 실적]

(단위: 억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호	계연도(B)
구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증감률
					(A)		[(B-A)/A]
일반회계	5,065	7,323	7,888	8,622	6,696	6,069	△9.4
특별회계· 기금	3,704	4,890	7,674	9,438	7,685	7,971	3.7
합계	8,769	12,213	15,562	18,060	14,382	14,040	△2.4

자료: 기획재정부

#### [최근 3년간 각 정부출자 공공기관별 배당실적]

(단위: 억워)

				(단귀: 덕권)
	기관명	2018년 배당	2019년 배당	2020년 배당
1	한국토지주택공사	4,681	3,325	3,920
2	중소기업은행	2,067	1,872	1,662
3	한국산업은행	1,471	1,449	1,120
4	한국주택금융공사	572	565	0
5	한국수출입은행	395	415	724
6	한국가스공사	-	328	92
7	한국공항공사	679	344	404
8	한국도로공사	388	260	334
9	부산항만공사	221	143	201
10	한국자산관리공사	91	145	139
11	울산항만공사	115	95	107
12	인천항만공사	50	56	21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3	11
14	한국조폐공사	41	37	39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3	29	13
16	한국감정원	19	18	13

(단위: 억원)

	기관명	2018년 배당	2019년 배당	2020년 배당
17	한국방송공사	46	-	1
18	한국농어촌공사	94	-	165
19	한국전력공사	923	-	-
20	한국관광공사	23	-	-
21	한국교육방송공사	20	-	-
22	한국방송광고진흥 <del>공</del> 사	-	-	-
23	한국수자원공사	-	-	-
24	한국석유공사	-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
26	한국철도공사	-	-	-
27	서울신문사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29	한국해양진흥공사	-	-	-
30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	-	-
31	새만금개발공사	-	-	-
32	인천국제공항공사	4,725	3,755	3,994
33	주택도시보증공사	1,025	1,229	707
34	한국투자공사	267	262	367
35	대한송유관공사	11	10	8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0.1	0.5	-
37	한국지역난방공사	113	-	-
38	공항철도주식회사	-	-	-
39	대한석탄공사	-	-	-
	합 계	18,060	14,382	14,040
	합 계 .추가 고고기과 O 근 분디 스나하 이 b	(25개)	(21개) 기그이 베다스이	(22개)

주: 1. 각 정부출자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일반회계, 특별회게, 기금의 배당수입을 합한 수치임 2. 배당실적이 없는 공공기관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의 경기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배당성향을 목표치보다 낮게 설정하여 배당금을 수납하면, 정부출자기관이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거나 예 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해야할 경우 필요한 재원을 신속하게 확보0할 수

<sup>6)</sup> 출자공공기관의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시 정부 예산(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게 되면 정부와의 예산반영 협의, 국회의 심사, 예산확정 후 예산배정 등의 절차로 인해 자금조달이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있고 출자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출자공공기관은 정부가 발표한 중기배당정책에 기초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역시 정부출자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배당정책을 참고하므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행가능한 배당성향 목표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기적인 배당성향 목표치를 설정할 때,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경향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재정소요 및 국채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총지출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L 11 L)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정부총지출	398.5	410.1	432.7	475.4	554.7
일반회계					
적자보전	271.3	289.6	300.4	334.7	437.5
국가채무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따라서 정부는 출자공공기관의 경기대응력 강화 및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행가능성이 높은 합리적인 중기배당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만 정부출자기관의 중기배당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중기배당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이므로, 출자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 및 정부출자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성향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4년에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기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성향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배당성향 목표치를 2020년까지 40%수준으로 높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2021년 이후부터의 출자공공기관에 대한 배당성향에 대해서는 2021년 5월말 기준 중기배당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규모는 중기배당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2021년 5월 14일에 확정89되었다.

그러나 출자공공기관들은 중기배당계획을 참고하여 차후 정부의 배당금 수납 규모를 예측해 보고 이를 기초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정부 역시 중기배당계획을 참고하여 약 1조 4,000억원(2020년 결산기준) 규모에 이르는 '정부출자수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중기배당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국유재산법」제65조의4%에서는 정부배당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배당대상기업으로부터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법령에 주기적인 정부의 중기배당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다면 정부배당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법령에 주기적으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중기배당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sup>7)</sup> 기획재정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 2014. 12. 19.

<sup>8) 2021</sup>년 정부출자기관 배당결과는 별도의 중기배당정책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2021년 5월 14일에 이미 공표되었음

<sup>- 2021</sup>년 정부배당금은 총 1조 4,396억원으로 전년대비 356억원 증가, 평균 배당성향은 36.92%로 전년대비 4.34%p 상승하였음

<sup>9) 「</sup>국유재산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 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 가. 현 황

재정집행관리<sup>1)</sup>는 「국가재정법」 제97조<sup>2)</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sup>3)</sup>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재정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 3억 1,800만원 중 2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재정집행관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тгодия	예산 전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사업명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골중역
	재정집행관리	318	318	-	-	318	274	86.2	21	23

자료: 기획재정부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 1) 코드: 일반회계 2643-300
- 2)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국가재정법」제97조제1항4)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매월 경과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제출된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한다.

또한「국가재정법」제97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 거5)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의 세부사항으로「예 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월 1~2회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집행관리 점검의 일환으로 재정조기집행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것이다. 동 제도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며 하반기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기집행의 관리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정보원 등을 제외한 중앙관서까와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공공기관8 등이다.

#### 4)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6)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I. 일반지침
  - 3-2. 재정관리점검단 운영 및 협조사항
  - 가. 재정관리점검회의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운영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실태를 확인· 점검한다.(개최횟수 : 월 1~2회)
- 7)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 미포함

2020년도 중앙재정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성과를 보면, 목표는 연간계획 305.5조원 중 189.6조원(62.0%)이었고, 실적은 203.3조원(66.5%)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2018~2020회계연도 중앙재정의 재정조기집행 실적]

(단위: 조원)

			(271 - 2)
구 분	연간계획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2018	280.2	162.6(58.0%)	174.1(62.1%)
2019	291.9	178.1(61.0%)	190.7(65.4%)
2020	305.5	189.6(62.0%)	203.3(66.5%)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첫째, 현행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에는 상반기에 전액 집행되는 정책금융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사업과 재난이 발생해야 지출이 가능한 재난복구지원 사업 등 성질상 조기집행관리에 적합치 않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대상 사업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인건비(110목), 상환지출 (510목), 전출금 등(610목), 예비비 및 기타(710목) 비목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 (200~490목) 비목 중, '월별로 균등지급'》하거나 '원인행위 발생에 따라 집행'10)하거나 '경제 활성화와 무관'11)한 비목은 제외하고 선정한다는 입장이다.12)

<sup>8) 2021</sup>년 기준 33개의 공공기관

<sup>-</sup> 주요 투자 사업비만 해당(인건비, 기관운영경비 등 조기집행이 곤란한 사업 및 예산과목은 제외)

<sup>9)</sup> 공공요금및제세(210-02), 급식비(210-04), 특근매식비(210-05), 일숙직비(210-06), 학교운영비(210-10), 관리용역비(210-15), 연금지급금(320-03), 고용부담금(320-09) 등

<sup>10)</sup> 여비(220), 특수활동비(230), 업무추진비(240), 직무수행경비(250), 보전금(310) 등

<sup>11)</sup> 해외이전(340) 등

<sup>12)</sup> 한편, 정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어 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관리대상 사업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관리대상 사 업 구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조기집행 대상사업에는 각종 정책금융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조기집행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실익이 미미하다고 보인다.

2020회계연도 기준 조기집행 관리대상인 50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sup>13)</sup>중 각종 정책금융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사업 예산은 총 2조 2,714억원 규모이다.

# [2020년 조기집행 대상사업 중 정책금융 목적 출자・출연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	회계명	회계명 단위사업명		출자·출연시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 화 특별회계	모태조합출자	600	3월
중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모태조합출자(기금)	7,400	3월
8 보 벤처 기업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 화 특별회계	신용보증기관출연	800	2월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관출연	4,560	1월, 5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역신용보증 재단지원(기금)	1,131	1월, 6월
금융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 화 특별회계	산업은행출자	2,000	4월
위원회	일반회계	기업은행출자	3,718	6월
	일반회계	산업은행출자	2,505	4월
	합 계		22,714	-

자료: 대한민국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주요관리대상사업집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 목적의 출자·출연사업은 통상 사전준비에 착수하기 위해 피출자·피출연기관의 자본금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반기까지 출자·출연 금이 전액 교부되는 경향이 있다.

<sup>13)</sup> 정부가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중인 조기집행 대상사업 목록은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실제 2020년 포함된 8개 단위사업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부는 6월까지 해당예산 2조 2,714억원 전액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정책금융 목적의 출자·출연금 예산이 상반기에 교부가 완료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는 관리대상사업에서 정책금융 목적의 출자·출연사업을 제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1년에도 여전히 일부 정책금융 목적 출연사업이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조기집행 대상사업 중 정책금융 목적 출자・출연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	취계대	LFOLTIGIE	관리대상
구석	회계명 	단위사업명	계획규모
	일반회계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55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지역신용보증	2,329
	진흥기금	재단지원(기금)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택신보출연	1,147
	4,026		

자료: 대한민국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주요관리대상사업집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사업구조상 상반기에 전액 집행이 예상되는 정책금융 목적의 출자·출연 사업은 집행기관의 노력에 의해 집행속도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조기집행 대상사 업에 포함시킬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집행관리대상에 행안부의 '재난복구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사건(재난) 발생시에만 지출이 가능한 사업은 '원인행위 발생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조기집행관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동 사업의 2020년 집행추이를 보면, 2020년 6월말까지 계획규모 5,930억원의 1%인 60억원만이 집행되었고,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동 사업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고 재난피해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2020년에는 상반기에 특별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다가, 7·8월에 집중호우, 8·9월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여 예산집행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 [2020년 행정안전부의 재난복구지원 사업의 집행현황]

(단위: 억원)

						(27) 72)
부처	히게며	단위사업명	계획규모	상반기까지	연말까지	상반기까지
ナベ	부처 회계명	인 기사 합성	(A)	집행액(B)	집행액	집행률(B/A)
행정 안전부	일반 회계	재난복구지원	5,930	60	7,430	1%

자료: 대한민국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주요관리대상사업집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본예산 기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난복구지원' 사업과 같이 정부의 집행의지와 무관하게 특정사건(원인행위)가 발생해야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집행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일부 단위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상반기까지의 집행 실적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원인을 파악 하고 집행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집행관리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단위사업 기준)의 상반기 평균 집행률을 보면, 2018년 62.7%, 2019년 65.8%, 2020 년 67.3%로서, 대상사업의 조기집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집행관리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단위사업 기준) 중 상반기까지 집행실적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의 비중을 보면, 2018년은 총 434개 사업 중 50개(11.5%), 2019년은 총 407개 사업 중 21개(5.2%), 2020년은 총 413개 사업 중 23개(5.6%)로 2018년에 비해 2019, 2020년의 관리대상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최근 3년간 관리대상사업의 상반기 평균집행률 및 상반기까지 관리대상예산의 집행률이 40%미만인 사업의 비중]

(단위: 억원, %)

		(27) (2,7%)
구 분	관리대상사업의 상반기 평균집행률	상반기까지 관리대상예산의 집행률이 40%미만인 사업의 비중
2018	62.7	11.5
2019	65.8	5.2
2020	67.3	5.6

주: 단위사업 기준 집행관리예산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 대한민국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주요관리대상사업집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일부 사업은 연례적으로 관리대상예산의 상반기까지 집행률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환경개선(교육부', '미군기지이전(국방부)', '국립박물관 운영(문체부)', '지휘정찰 양산/구매(방사청)' 등의 사업은 3년 연속 상반기 집행률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원인분석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관리 대상사업 중 연례적으로 상반기까지 관리대상예산의 집행률 40%미만인 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20년	상반기	(6월)까지	집행 <u>률</u>
부처명	단위사업명	관리대상 규모	2018	2019	2020
경찰청	경찰유무선망개선	1,213	-	35.7	39.2
교육부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2,349	-	27.9	13.9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	1,675	32.7	36.8	25.1
문체부	국립박물관 운영	1,080	26.5	29.5	32.7
방사청	지휘정찰 양산/구매	4,623	36.6	22.1	39.2
법무부	교도소운영	859	32.7	37.4	35.4
중기부	투융자복합금융지원(기금)	2,000	57.5	19.7	31.0

주: 단위사업 기준 집행관리예산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 대한민국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주요관리대상사업집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현재 재정집행관리는 대상사업의 집행률만을 점검하고 있으나, 재정지출 은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되는 실집행까지 이루어져야 사업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실집행실적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매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광역자치단체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동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대상사업의 집행률만을 점검하고 있을 뿐, 출연금이나 자치단체 보조금의 실집행실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않다.

그러나 출연금 및 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는 중앙관서에서 예산을 교부한 것 만으로는 사업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교부받은 기관이 수혜자들에게 자금을 투입해 야 재정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연금 및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실 집행실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3. 예산조기집행편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실집행 실적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소관 사업관련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14)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도 출연금 및 보조금에 대한 실집행실적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는 현재 사업구조 및 출연금 관리시스템상 기술적으로 실 집행관리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 보조금 역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 리시스템(e-호조시스템)'간 시스템상 상호연계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현재로서는 실집행관리가 용이치 않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출연금 및 보조금의 재정투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집행실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출연금 및 보조금에 대한 실집행실적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sup>14)</sup>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3p, 2020. 1.

# 가. 현 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이다.

균특회계는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시행 및 국고보조사업 체계의 개편¹)과 함께 2005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었으며, 2009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었다가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재차 변경되었고 2019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총 4개의 계정의 8개 사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보조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는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된다. 반면, 지역지원계정은 부처가 직접편성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편성하는 사업과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사업이 혼재되어 있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sup>1)</sup> 당시 533개(12조 6,568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중 233개 사업(7조 9,485억원)만 기존대로 유지되고, 163개 사업(1조 689억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126개 사업(3조 5,777억원)은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조]

편성방식	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시·군·구	<ul><li>① 시·도 자율편성시업</li><li>② 시·군·구 자율편성시업</li></ul>	-	<ul><li>③ 시도, 시군구</li><li>자율편성사업</li><li>* 시군구 기반구축</li><li>사업 등 포함</li></ul>	<ul> <li>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li> <li>* 시·군·구 기반구축</li> <li>사업 등 포함</li> <li>⑤ 특별지방행정</li> <li>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li> </ul>
부처즈	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나. 분석의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은 연례적으로 세입재원의 확보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세입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세출예산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제48조제6항2)은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 즉 세출에 충당하고 남은 세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세입에 우선 이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목적은 이월하는 세출예산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결산상 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출예산만 이월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 세출예산만 이월되고 그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가 된다. 이를 실무상 '세 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라고 한다.

<sup>2) 「</sup>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⑥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이 음(-)의 값을 가질때 그 규모만큼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제1항3)에서는 균특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중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은 이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 균특회계의 연도별 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20회계연도 지역지원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결산상 잉여금이 각각 364억원·1억원만 발생하였음에도 세출예산을 각각 2,901억원·257억원 이월하여 각각 2,537억원·256억원의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하였다.

제주계정의 경우는 2020년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의 규모가 전년대비 53억원 감소하였으나, 지역지원 계정의 경우는 2018년 1,215억원, 2019년 2,365억원, 2020년에는 2,537억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회계연도별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 = 1).											, , ,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계정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세계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세계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I (기 권 인	세계 잉여금
합계	9,535	3,667	5,868	4,190	5,501	△1,311	2,128	4,675	△2,547	1,533	3,168	△1,635
지역자 <u>율</u> 계정	1,939	2,633	△694	1,337	2,581	△1,244	1,345	1,313	32	1,075	-	1,075
지역지원 계정	6,585	989	5,596	1,700	2,915	△1,215	680	3,045	△2,365	364	2,901	△2,537
제주계정	730	0	730	782	0	782	8	316	△309	1	257	△256
세종계정	279	45	234	371	5	365	95	0	95	92	9	83

- 주: 1. 결산상 잉여금은 연도별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세출결산(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계잉여 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
  - 2.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결산상 잉여금 규모를 초과하는 이월액(세계잉 여금의 음수값)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제43조(예산의 이월)

<sup>3) 「</sup>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이러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은 사실상 수입에 대한 대책 없이 차년도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규모가 커질 경우 국가 재정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 할 수 밖에 없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4)

또한 「국가재정법」 제3조5)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전년도의 세출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6).

이와 같이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요 과목의 세입예산이 수납액에 비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총계 기준 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1,302억 3,400만원, 2019년에는 829억 5,600만원, 2020년에는 1,018억 5,0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다.

# [지역지원계정 수입 결손현황(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611. 166)
구분		2018	2019	2020
71647101	예산현액(A)	4,283,042	4,834,014	6,591,358
지역지원   계정	수납액(B)	4,152,808	4,751,058	6,489,508
7116	세입결손(B-A)	△130,234	△82,956	△101 <b>,</b> 85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sup>4) 2021</sup>년 예산에서는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계정에 2,365억원, 제주계정에 309억원의 추가적인 일반회게 전입금 예산을 편성하였다.

<sup>5) 「</sup>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sup>6)</sup> 이에 대하여 정부는 균특회계의 이월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 재정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3조제1항은 「국가재정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이월금지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일 뿐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세입 우선 이입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up>「</sup>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 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이러한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수입 결손은 주요 세입과목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주세(기획재정부 소관), 법정부담금(국토교통부 소관), 기타경상이전수입(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년도 이월금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주요 세입과목의결손발생액의 합계가 매년 1,20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7)

#### [지역지원계정 주요 수입과목 결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액(A)	수납액(B)	결손액(B-A)
	7	2018	2,091,050	1,956,519	△134,531
	주세 (기획재정부 소관)	2019	2,061,090	2,102,466	41,376
	(/17/1181 42)	2020	1,898,196	1,805,029	△93,167
		2018	284,198	255,819	△28,379
	법정부담금 (국토교통부 소관)	2019	359,111	279,762	△79,349
	(72461 22)	2020	266,321	197,816	△68,505
71247101	기타경상이전수입 (산업통상자원부)	2018	66,151	94,386	28,235
지역지원 계정		2019	83,558	68,313	△15,245
		2020	101,568	65,867	△35,701
		2018	694,370	658,512	△35,858
	전년도 이월금	2019	258,126	169,980	△88,146
		2020 <sup>1)</sup>	0	68,041	68,041
		2018	3,135,769	2,965,236	△170,533
	합 계	2019	2,761,885	2,620,521	△141,364
		2020	2,266,085	2,136,753	△129,332

주: 1) 2020회계연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예산을 0으로 편성하여 결산액이 곧바로 예산과 수납액의 차이가 됨

<sup>1.</sup> 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수입과목은 총계기준으로, 회계간 내부거래는 제외하였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sup>7)</sup> 특히 2020년에는 수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이월금 예산을 0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 금의 결산액(680억 4,100만원)이 전부 초과 수납된 결과가 되었으나, 그에 비해 타 세입과목의 세입결손액 규모가 커서 전체적인 세입결손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각 수입목의 세입결손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주세는 「주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세목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주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예산 대비 931억 6,700만원의 수입결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주세의 수납실적을 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도 매년 수입예산 대비 수납액에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연례적 세입결손이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현상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 [지역지원계정 주요 수입과목 결손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A)	수납액(B)	결손액(B-A)	수납률 (B/A)
		2016	1,975,260	1,920,280	△54,980	97.2
	<del></del>	2017	2,000,280	1,820,757		91.0
지역지원   계정	주세 (기획재정부 소관)	2018	2,091,050	1,956,519	△134,531	93.6
711'0		2019	2,061,090	2,102,466	41,376	102.0
		2020	1,898,196	1,805,029	△93,167	95.1

자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정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례적으로 예산을 수납액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 [법정부담금(국토교통부 소관)의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A)	수납액(B)	결손액(B-A)	수납률 (B/A)
71017101	шаны	2018	284,198	255,819	△28,379	90.0
시역시원   계정	지역지원 법정부담금 계정 (국토교통부 소관)	2019	359,111	279,762	△79,349	77.9
10		2020	266,321	197,816	△68,505	74.3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수납액은 2018년 943억 8,600만원에서 2020년 658억 6,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수입예산은 2018년 661억 5,100만원에서 2020년 1,015억 6,8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되고 있어 세 입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 [기타경상이전수입(산업통상자원부)의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A)	수납액(B)	결손액(B-A)	수납률 (B/A)
71047101		2018	66,151	94,386	28,235	142.7
지역지원   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산업통상자원부)	2019	83,558	68,313	△15,245	81.8
"0	(2800-121)	2020	101,568	65,867	△35,701	64.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같이 수납액이 세입예산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세출예산 은 세입예산 규모에 맞추어 편성되므로 그에 따라 세출예산 재원에 결손이 발생하 고 결국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674억원을 편성(지역지원계정 2,395억원, 제주계정 309억원)하였고, 균특회계 자체재원인 주세 전망을 2021년에는 전년 본예산대비  $\triangle$ 2.4%감액한 1조 9,495억원으로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균특회계에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 회계 전입금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은 별도의 특별회계를 둔 취지에 맞지 않으므 로, 균특회계의 주요 수입원인 주세의 전망이 과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 는 한편, 법정부담금(국토교통부 소관)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산업통상자원부)등 의 수입목에 대한 전망도 합리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세입예산 편성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적정수준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의 재원 없는 이월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 사업1)은 국고보조금 처리의 전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 사업 예산현액 191억 6,200만원 중 17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7 日	예	산	전년도	이션용	예신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H O NI
구분	본예산	추경	이월액	믕	(A)	(B)	(B/A)	이월액	불용액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19,162	19,162			19,162	17,120	89.4	1,810	232
구축운영(정보화)	19,102	19,102	_	1	19,102	17,120	09.4	1,010	232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명칭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주요 기능은 ① 보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②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며, ③ 보조 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동 시스템 구축의 추진경과를 보면, 정부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핵심과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2016년 12월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의 하였으며, 2017년 7월에 보조금 정산, 중복·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의 기능이 갖추어진 e-나라도움 시스템이 전면 개통되었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sup>1)</sup> 코드: 일반회계 2713-501

<sup>2) 2017.1.4.</sup> 공포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으로 보조금 관리에 변화된 사항을 보면, 사업공모·사업신청·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보조사업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보조사업 관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 前後의 비교]

구 분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 前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 後
사업공모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회원가입 → 공모게시물 검색 (모든 보조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검색 가능)
사업신청	<ul><li>보조사업자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li><li>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담당자에게</li><li>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제출</li></ul>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문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보조사업자 선정	<ul><li>사업담당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검토후 해당 보조사 업자에게 선정 통보(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li></ul>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검색(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 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직접방 문하여 교부신청서, 보조금통장사 본, 서약서 등을 제출	∘교부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문없 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보조금 교부 결정	<ul><li>사업담당자는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서류 구비여부, 자부담금 예치 확인 및 교부조건 부여</li></ul>	∘교부결정 여부 실시간 검색(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 행상황 확인 가능)
보조금 교부	∘사업담당자는 교부조건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지 후 보조 사업자의 전용통장으로 국고보조 금 이체	∘교부금액 확인(예탁기관 계좌) -보조금 목적외의 오·유용 사용 원천 방지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는 매 지출건마다 지출 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등의 결재 후 지출처리(통장, 회계장부,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 직접 작성)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와 연계 된 지출내역 등록(실집행 기반 의 사업별, 재원별 구분관리 및 자동정산)
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행정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등을 반납	∘실적보고서 등 온라인 작성(사용 실적보고서 작성에 3~4주 소요 → 대폭 단축·간소화)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 나. 분석의견

첫째,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은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일원화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조시스템)의 구축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은 자치단체의 재정계획·예산편성·지출·결산 등 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업무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비를 매칭하는 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 동일한 보조사업이 국고보 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시스템에서 각각 사업으로 관리되는 등 상호 연계에 문제가 있어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은 2020년부터 국고보조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과의 데이터 정 합성 개선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2017~2019년도 분 자치단체 보조사업 16,953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정합성 개선작업을 추진한 결과 대상사업의 84.1%인 14,25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시스템의 장기개선이 필요한 나머지 2,700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 구축(사업기간: '20.11~'23.12)설계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나라도움 시스템과 e-호조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 개선작업 결과]

(단위: 건)

				( - 11)
구 분	2017	2018	2019	합계
조치대상	3,036	6,857	7,060	16,953(100%)
조치완료	2,565	6,044	5,644	14,253(84.1%)
미조치	471	813	1,416	2,700(15.9%)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데이터의 정합성 개선이 완료되지 못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시스템)'의 개선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 구축(사업기간: '20. 11~ '23. 12)설계시 데이터 정합성 개선작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나라도움 시스템과 e-호조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 미조치 원인 조사경과]

일 자	내 용				
'20. 1월	• '17년도 데이터 부정합의 원인파악을 위한 지자체(인천 샘플) 현				
20. 12	장방문				
,20 2 28	• '17년도 데이터 부정합 사업 추출				
'20. 2~3월	<ul><li>데이터 부정합 사유 조사 및 정리(2.28~3.27)</li></ul>				
'20. 4월	· '17년도 데이터 부정합 사유 조사 및 정리				
220 501	· '17년도 조치미흡한 지자체 현장방문				
'20. 5월	*경기도(도청, 수원, 성남시), 충북(도청, 청주시)				
'20 C 791	• '18년도 데이터 부정합 사업 추출				
'20. 6~7월	• '17년도 확인필요 대상 현행화 작업				
20.0.00	· '18년도분 조치결과 정리				
'20. 8~9월	· '19년도 미매핑사업 추출				
	• '18년도 추가 조치대상 독려				
'20. 10~12월	• '19년도 데이터 부정합 사유 조사 및 정리				
	• '17~19년도 지자체 데이터 부정합 사업 최종 점검결과 확인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 '지방보조금시스템'을 신규 구축3)할 계획인데, 동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에 지방 보조금으로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직접 경비, 민간 위탁·대행, 공공기 관 등에 의한 자본적 대행비 및 출연금·출자금 등으로도 편성·집행되어 운영되고

<sup>3)「</sup>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2020. 9., 행정안전부)」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시스템'만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데이터 정합성 해소에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고보조금의 데이터 정합성 문제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과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포함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체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포함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신규 구축 시부터 시스템의 설계방향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실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2.0%내외에 불과하므로, 동 시스템의 부정수급 탐지기능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기획재정부 주관의 합동점검 비중을 확대하여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5조의24)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해당 중앙관서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었고, 이처럼 의심사례로 통보 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의심사례에 대해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건 중 사업비 규모, 과거 적발된 주요 모니터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 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sup>4) 「</sup>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링 패턴, 집행증빙 등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기획재 정부 주관으로 재정정보원, 부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15,319건의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해 점검 및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부정수급 사례라고 판정된 건은 304건으로 의심사례의 2.0%에 불과하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통보건수 및 이에 따른 적발건수]

(단위: 건, %)

구분	의심통보건수(A)	적발건수(B)	적발률(B/A)
2018년	4,291	18	0.4
2019년	7,175	154	2.1
2020년	3,853	132	3.4
합 계	15,319	304	2.0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의심사례로 추출한 건의 적발률이 저조 하면,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조사하는데 지나치게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 부정수 급 적발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실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동 시스템의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7가지 '부정수급 징후 모니터링 탐지유형'5)을 통해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하는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탐지유형을 세분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최근 3년간 중앙관서 및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할 경우 적발률은 1.8%에 불과한 반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합동점검을 할 경우 적발률은 26.6%로서해당 중앙관서 및 지자체가 자체점검 할 때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up>5)</sup>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징후 모니터링 탐지유형

① 가족 간 거래, ② 급여성 경비, ③ 지출증빙 미비, ④ 집행 오·남용, ⑤ 특정거래 관리, ⑥ 자산 관리, ⑦ 기타 사업관리

물론 합동점검은 자체점검보다 비교적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선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동점검의 적발률이 자체점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일수 있다. 다만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중앙관서 및 지자체만이 해당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자체검사하게 되면, 본인이 본인의 집행을 검사하는 결과가 되어 검사의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단속의지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021년 4월말 기준 기획재정부 합동점검은 국고보조금관리단 정보관리분석팀 4명과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관리부 8명이 3개조를 편성하여 의심사업 통보후 45일 간 총 40건의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력의 한계로 인해 합동점검 규모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의 적발률 비교]

(단위: 건, %)

7.11		앙부처 및 지 자체점검 건	차체의	기획재정부 주관 합동점검 건 <sup>1)</sup>		
구분	자체점검 (A)	적발건수 (B)	적발 <del>률</del> (B/A)	합동점검 (C)	적발건수 (D)	적발률 (D/C)
2018년	4,261	16	0.4	30	2	6.7
2019년 상반기	2,850	37	1.3	28	9	32.1
2019년 하반기	4,267	96	2.2	30	12	40.0
2020년	3,813	121	3.2	40	11	27.5
합 계	15,191	270	1.8	128	34	26.6

주: 1) 기획재정부 주관 합동 점검하는 부정수급 의심사례 건은 사업비 규모, 과거 적발된 주요 모니터링 패턴, 집행증빙 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되는 건을 선정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적 발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관리단과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관리부 인력을 확충하여 기획재정 부 주관의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유재산관리기금<sup>1</sup>)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sup>2</sup>)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자금이다.

20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은 총 1조 6,081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받았다.

# [20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	L 111. 1	L L, /0)
그ㅂ	수입	계획	계획혀액	징수	수납액	미스나애	불납	수납률
구군	당초	수정	계획연락	결정액(A)	(B)	미구급적	결손액	(B/A)
국유재산관리기금	1,609,525	1,611,264	1,611,264	1,608,155	1,608,155	0	0	100.0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지출은 계획현액 1조 8,042억 1,900만원 중 1조 6,081억 5,500만원을 지출 (89.1%)하였고, 1,929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6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결산]

(다위 밴만워 %)

							(인기:	딱인된, %)
그ㅂ	지출	계획	전년도	계획	지출액	다음연도	불용액	집행률
구분 	당초	수정	이월액	현액(A)	(B)	이월액	207	(B/A)
국유재산관리기금	1,609,525	1,611,264	192,955	1,804,219	1,608,155	192,955	36,697	89.1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 1) 코드: 국유재산관리기금
- 2)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020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재산수입 1,515억 2,000만 원, 경상이전수입 590억 8,600만원, 관유물매각대 1조 398억 600만원, 여유자금회수 3,491억 4,000만원, 정부내부수입 86억 3,000만원 등 총 1조 6,081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다. 이 중 관유물매각대(국유부동산 매각대)목이 전체 수입 중 6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호	딕액	A L LOUL(D)	D./A	전체 수입에서
	당초	수정(A)	수납액(B)	B/A	차지하는 비중(%)
재산수입 <sup>1)</sup>	142,432	142,432	151,520	106.4	9.4
경상이전수입 <sup>2)</sup>	44,140	44,140	59,086	133.9	3.7
관유물매각대 <sup>3)</sup>	890,000	890,000	1,039,806	116.8	64.7
여유자금회수	523,861	523,861	349,140	66.6	21.7
정부내부수입	9,092	10,831	8,603	79.4	0.5
합 계	1,609,525	1,611,264	1,608,155	99.8	100.0

주: 1) 토지 및 건물의 대여료, 대여료 분납에 따른 이자수입

- 2)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의 납부 연체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
- 3) 국유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매각대금

1.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지출내역을 보면, 공용재산취득 사업 9,467억 4,500만원, 비축토지매입 564억 9,400만원, 기금운영비 26억 4,800만원, 기금간 거래 4,515억 8,100만원, 여유자금 운용 1,506억 8,700만원 등 총 1조 6,081억 5,500만원이 지출되었다. 이 중 공용재산취득 사업이 전체 지출 중 5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호 당초	니액 수정(A)	지출액(B)	B/A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용재산취득 <sup>1)</sup>	1,008,262	871,762	946,745	108.6	58.9
비축토지매입 <sup>2)</sup>	70,000	56,500	56,494	99.9	3.5
기금운영비	2,751	2,751	2,648	96.2	0.2
기금간거래 <sup>3)</sup>	300,000	451,581	451,581	100	28.1
여유자금운용	228,512	228,670	150,687	65.9	9.4
합 계	1,609,525	1,611,264	1,608,155	99.8	100.0

- 주: 1) 각 부처의 청·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
  - 2)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토지 매입
  - 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 1.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최근 여유자금이 과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확보하는 한편, 국유재산 개발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현황(평잔 기준)을 보면, 2016년 8,446억에서 2019년 1조 3,03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에는 9,337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유재산관리기금이 2019년에 3,000억원, 2020년에 4,516억원의 여유자 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한 규모까지 감안하면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예비적으로 유 보된 재원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sup>3) 2021</sup>년 기금운용계획에는 4,000억원의 공자기금 예탁계획이 있음

#### [최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현황]

(단위: 억원)

						( - 1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40	단기자산 (평잔)	2,130	2,580	814	906	741
여유 자금 (A)	중장기자산 (평잔)	6,316	8,540	10,202	12,124	8,596
	합 계	8,446	11,120	11,016	13,030	9,337
공자기금 예탁규모(B)		-	-	-	3,000	4,516
	자금+공자기금 탁금누적액 (A+B)	8,446	11,120	11,016	16,030	16,853 <sup>1)</sup>

- 주: 1) 2020년말 기준 여유자금 + 2020년 공자기금 예탁액+ 2019년 공자기금 예탁액의 합계
  - 1. 단기자산: 기금의 여유자금 중 자산운용의 목적으로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산(연기금투 자풀 위탁금 포함)
  - 2. 중장기자산: 기금의 여유자금 중 자산운용의 목적으로 1년 이상을 운용하는 자산(연기금투 자풀 위탁금 및 자산운용 목적의 부동산 등 대체투자 포함)으로서 단기자산과 공자기금예 탁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

이처럼 2020년도 말 기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예비적인 재원규모가 1조 6,853억 원으로 총지출(1조 58억 8,700만원)의 150%를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유자금이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대' 수입목(2020년 수입총계 기준 63.0%을 차지)에서 매년 계획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수납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5년간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 [토지매각대 수입목의 수납실적]

(단위: 억원, %)

					11. 1 (3, 7%)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현액(A)	7,388	8,437	7,214	7,598	8,718
수납액(B)	8,888	9,485	10,442	7,461	10,136
초과 수납액(B-A)	1,500	1,048	3,228	△137	1,418
수납률(B/A)	108.2	112.4	144.7	98.2	116.3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예산 편성 시에는 통상 직전 3개년 또는 5개년 결산 평균액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수입을 추계하는데, 토지매각대의 경우는 공익사업 추진 관련 토지수용 등 불가피한 매각증가 및 부동산 경기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추계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수입계획 규모에 맞추어 지출계획 규모를 설정하므로, 연례적으로 수납액 대비 수입계획이 1,000억원 이상 적은 상황이 반복된다면이에 따라 지출계획도 가용자산 대비 적게 수립될 수 밖에 없어 효율적인 기금 사업 지출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매각대 수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과도한 여유자금이 적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중장기 청사 신축계획, 국유재산기금의 중장기 수입전망 등을 고려하여 과다한 여유자금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지출규모를 확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기획재정부)」및「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기획재정부)」에서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의 본격화,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심노후 청·관사의 공익적 개발확대, 생활 SOC 시설 확충 지원 등 국유재산 개발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2021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

구 분	2020년	2021년
	① (경제활력 제고) 국유재산 토지개발 활성화, 도심 노후청 사의 공익적 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참여 개발 확대 등	① (적극적 개발 및 경제 역동 성 제고) ①국유지 토지개발 본 격 추진, ②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 활성화, ③국유재산을 활 용한 스마트·그린 뉴딜 선도, ④공공 청·관사 위탁개발 방식 다양화
정책방향	② (국민 편익 증진) 생활 SOC 확충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생활환경 개선 지원, 국민불편 해소 등	② (공익목적 활용 및 국민편익 증진) ①국유재산을 활용한 공 공주택 공급 확대, ②소상공인 등 임대 편의 개선, ③국유재산 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 지원 본격화, ④수복지역 주민의 안 정적 정주여건 조성
	③ (국유재산 가치증대) 국유재산 자산권 보호, 활용성 높은 국유재산 취득·리모델링, 도시 계획시설지정 실효재산 활용, 해외 국유재산 관리 강화 등	③ (효율적 활용 및 재산가치 중대) ①개발사업 추진 시 국유지 재산권 보호 강화, ②행정재산 관리강화, ③공용재산 취득사업 의 효율성 제고, ④노후 국유건 물 등 저활용 재산 활용 촉진
	④(국유재산 운용 효율화) 차세 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미활용 특례 존치평가, 국 유재산 취득·관리의 전문성 강 화 등	④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확충) ①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 ③국유재산 특례관리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이처럼 정부가 사업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정책방향을 수립했음에도 국 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증가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유재산관리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개발에 대한 사업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과다한 여유자금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고업무관리 사업<sup>1)</sup>은 공공기관 결산 지원, 출자·배당정책 지원 및 정부 소유 주식 관리, 수입인지제도 및 국가계약제도 운영 등 기획재정부 국고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국고업무관리의 예산현액 총 5억 100만원 중 91.8%인 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국고업무관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C 110 1	L L, 70)
コロ	예	산	전년도	이션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는 한 한
TE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돌용액
국고업무관리	418	418	68	15	501	460	91.8	0	41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공공기관 결산서가 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결산심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업무의 부담 정도가 과다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제출 일정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결산은 통상 3월 말 ~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초안이 확정된 후 4월 10일 ~ 5월 20일 감사원 회계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반면, 공공기관결산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에 따라 3월 31일까지 정부에서 확정된 후 5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sup>1)</sup> 코드: 일반회계 2233-302

<sup>2) 「</sup>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②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

월 10일 ~ 7월 31일 감사원 회계검사를 거쳐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결산이 정부에서 확정되는 시점은 3월말로서 정부결산과 유사하나, 결산서 제출은 정부결산에 비해 30일 늦고 감사원 회신은 정부결산에 비해 72일 늦으며 국회제출은 정부결산에 비해 81일 늦다.

[정부결산 및 공공기관결산 기간 비교]

구분	결산서 확정	감사원 제출	감사원 회신	국회제출
정부결산(A)	통상 3월말~4월초	4. 10.	5. 20.	5. 31.
공공기관결산(B)	3. 31.	5. 10.	7. 31.	8. 20.
차이(B-A)	유사	30일	72일	81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처럼 공공기관 결산서의 감사원 제출시기, 감사원 회신시점 및 국회제출시점 이 정부결산에 비해 늦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① 매년 4~5월은 정부결산 회계검사와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공공기관결산의 감사원 제출기한은 5월 초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② 충실한 회계검사를 위해서 회신기한도 현재와 같이 여유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시기를 앞당길 필요 가 있다고 보인다.

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sup>1.</sup>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sup>2.</sup>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감사원법」제2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국회법」 제128조의23)에서는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국회결산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결산서가 국회 결산심사 완료일의 11일 전(8월 20일)에 제출되면 이 기간 내에 정부 총지출의 18.3%4)를 차지하는 공공기관 예산에 대해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 공공기관 중 회계검사를 거치는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 350개5) 중 정부 지분율이 50%이상인 기관(2020년 기준 23개)에만 한정되고 동 회계검사는 정부결산과 별도로 감사원 외부의 회계감사를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결산에 비해 72일까지 여유기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일정을 현재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sup>3) 「</sup>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sup>4) 2021</sup>년 본예산 555.8조원 중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은 101.7조원(2021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 국회예산정책처)

<sup>5) 2021</sup>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수

# 가. 현황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는 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②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제고, ③ 대외협력 강화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기반을 확충, ④ 행정지원 확충으로 정책업무 지원을 강화 등 4개 전략목표 하에 13개의 프로그램 목표 및 22개의 단위사업을 두고 있다.1)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성과목표	단위사업	분야
전략목표 1 : 안정	·  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 I -1: 기업환경 지속개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1) 경제정책조정지원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 I -2: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1)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일반재정
전략목표Ⅱ: 재정	운용 및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1: 세제선진화 및 글로벌화	(1) 조세정책지원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 II -2: 국고관리	(1) 국유재산관리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3: 비축재산의 매입 등 수급조정 기능강화	(1) 비축토지매입	일반재정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sup>1) 2020</sup>회계연도 기획재정부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ユロ	전략	프로그램		단위	·l사업	
一工世	목표	목표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4	13	22	20	2	0
비율(%)	1	-	100	90.9	9.1	0.0

성과목표	단위사업	분야
프로그램목표॥-4: 재정제도 개선 및 국내외 재정협의 강화	(1)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5: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	(1) 국가회계운영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6:	(1)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일반재정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정보화
프로그램목표 II -7: 공공기관의 효율성, 공공성 조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1)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일반재정
전략목표Ⅲ: 대외협력 강화로 국	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기빈	을 확충한다
	(1) 국제금융강화지원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Ⅲ-1: 국제금융협력 강화지원	(2) 국제금융센터보조	일반재정
	(3) 녹색기후기금 협력지원	일반재정
	(1) 경제협력강화지원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일반재정
대외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	(3) 지식협력단지운영	일반재정
	(4)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일반재정
	(1) 대개도국차관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III-3: 대개도국 경제협력 활성화	(2) 대개도국차관지원	일반재정
1 0 11 1 20-1	(3) 경협증진자금지원	일반재정
전략목표Ⅳ: 행정	지원 확충으로 정책업무 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IV-1:	(1) 기획재정 정책지원	일반재정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 강화	(2) 기획재정정보화	정보화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서 2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중 2개 지표가 초과 달성되었고, 16개지표가 달성되었으며, 5개 지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달성 현황]

거라모ㅠ	프로그램 저랻목표	프로그램		성과 달성도	
신탁국표	목표	목표의 성과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13	23	2	16	5
4	13	100%	8.7%	69.6%	21.7%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단위사업별 목표에 대해서는 5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중 8개 지표가 초과 달성되었고, 36개 지표가 달성되었으며, 12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 하지 못했다.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단위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π = ¬ =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분 야	다이사어	지표수		성과 달성도	<u>-</u>		
	7#	분 야   단위사업		시프구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일반재정	20	49	7	30	12			
4	13	정보화	2	7	1	6	0		
		R&D	0	0	0	0	0		
합 계		22	56	8	36	12			
			22	100%	14.3%	64.3%	21.4%		

### 나. 분석의견

첫째,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치가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연례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중 실적에 비해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단위사업) 사업내의 '재정교육'(세부사업)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국고·성과관리·공공기관 분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재정교육 이수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재정교육 수료자는 각각 2,940명, 4,235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해당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2019년 2,200명, 2020년 2,650명으로 실적이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재정교육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

프로그램 목표	단위 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전릭	卡목표Ⅱ: 재정·	운용 및 공공부문	의 혁신역	격량을 제고	2한다	
(6) 중장기	중장기			목표	신규	2,200	2,650
재정 전략	재정 전략	재정교육 이수자수(명)	재정교육 수료자	실적	신규	2,940	4,235
기능 강화	수립	(0)	. ,	달성률	-	133.6%	159.8%

자료: 기획재정부

② '대개도국차관지원'(단위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에 수반되는 사업컨설팅·정책연구·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SNS 홍보채널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인식제고 기여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SNS 홍보채널의 연간 페이지뷰 및 방문자 수는 2018년 26만 3,000 명, 2019년 41만 9,000명, 2020년 66만 3,000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당 성과지표

의 목표치는 2018년 19만명, 2019년 28만명, 2020년 35만명으로 연례적으로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대개도국 차관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

프로그램 목표	단위 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전략목표Ⅲ∶	: 대외햩	력 강화로 국	가위상을 제고하고	고 세계시	장에서의 선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3)	-11-11-	③ SNS를	SNS 홍보 채널의 연간	목표	19.0	28.0	35.0
대개도국 경제 협력	대개도 국차관 지원	홍보채널의 EDCF 인식제고	페이지뷰 + 방문자수 (네이버블로그,	실적	26.3	41.9	66.3
활성화	12	기여도(만건)	네이버카페, 페이스북)	달성률	138.4%	149.6%	189.4%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성과지표의 실적에 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면 목표치 달성이 비교 적 수월해 지므로, 사업성과를 제고하려는 개선노력이 약화될 수 있고 성과관리제 도를 두는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적에 비해 성과목표치가 낮은 사업은 다소 도전적으로 성과지표 목 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일부 성과지표는 2020년 성과 달성률이 저조하므로, 성과 향상을 위한 개 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① 단위사업인 '국가회계운영'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에 따른 정부결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국가회계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결산교육 참석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 '결산교육 참석자 수' 성과지표의 최근 달성도를 보면, 2018년에는 3,600 명 목표에 3,605명 참석, 2019년은 3,800명 목표에 3,918명 참석으로 각각 100.1%, 103.1%의 달성도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3,950명 목표에 3,076명이 참석하여 달성도가 77.9%로 하락하였다.

[국가회계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

프로그램 목표	단위 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전략	목표Ⅱ: 재정운	용 및 공공부문의	의 혁신역	량을 제고	한다	
(5) 재정 운용의	ユっし	@ 74117P		목표	3,600	3,800	3,950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가 회계 8 8 8	② 결산교육 참석자	국가결산교육 참석자 수	실적	3,605	3,918	3,076
재정 관리 강화	80 안	수(명)		달성률	100.1%	103.1%	77.9%

자료: 기획재정부

② 단위사업인 '기획재정 정책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경제교육지원' 사업은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교육센터의 교육생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생 수'성과지표의 최근 달성도를 보면, 2018년에는 7만 5,000명 목표에 8만 5,000명 교육, 2019년에는 8만 5,000명 목표에 9만 2,000명 교육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목표치를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한 9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교육생은 전년 대비 1만 7,000명 감소한 7만 5,000에 그쳤다.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

프로그램 목표	단위 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전략목표IV: 행정지원 확충으로 정책업무 지원을 강화한다.							
(1) 업무 효율성	기획	② 지역경제교육	15개	목표	75	85	90
향상을 위한	재정 정책	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취약계층	실적	85	92	75
지원 업무 강화	지원	교육이수자수 (천명)	교육생	달성 <del>률</del>	113.3%	108.2%	83.3%

이처럼 두 개의 교육사업의 실적이 2020년에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제한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사한 교육사업인 '재정교육' 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교육 수료자'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온라인 교육 및 사이버 교육 실시를 통해 2020년 교육 수료자가 전년 대비 1,295명 증가된 4,235명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두 개의 교육사업은 집합교육이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회계운영' 사업과 '경제교육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의 방식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③ 프로그램 목표 중 '비축재산 매입 등 수급조정 기능강화'는 국유재산관리기 금을 활용하여 비축부동산 매입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수급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비축재산 활용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비축재산은 정책수행에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매입한 국유재산(토지)으로서, '비축재산 활용율'은 전체 비축재산 대비 비축재산 사용예약면적의 비율이다.

성과지표인 '비축재산 활용률'의 달성도를 보면, 목표치는 2018년 24%, 2019년 20%, 2020년 20%임에 반해 실적은 2018년 14%, 2019년 13%, 2020년 13.4%로 매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축재산활용율 성과지표 달성률]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전략되	전략목표॥: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비축재산 사용예약면적 /	목표	24	20	20			
비축재산의 매입 및 수급조정기능 강화		비축재산	실적	14	13	13.4			
		보유면적]×100 %	달성률	58.3%	65.0%	67.0%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비축재산 활용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중앙관서가 비축토지에 대한 사용예약을 조달청에 신청하면 조달청이 신청면적의 적정성과 신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중앙관서의 신청이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에 비축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리스트 등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축부동산 사용예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각 중앙관 서의 비축재산 사용예약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일부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보이므로, 성과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 세부사업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은 국고보조금의 전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가동률', 'e-나라도움 사용자 만족도',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효과 인식도' 등 3가지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효과 인식도'는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동 시스템이 부정수급 예방에 얼마나 기 여한다고 인식하는 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

프로그램 목표	단위 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전략목표Ⅱ: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중장기	디지털	④ e나라도움 <del>을</del>	e나라도움을	목표	신규	60	70.9			
재정전략 기능	예산 회계 시스템	통한 부정수급	방     통한 부정수급       나급     예방효과       할과     인식도	실적	신규	70.2	74.7			
강화	운영	예방효과 인식도(%)		달성률	-	117%	105.4%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이 부정수급에 기여하는 바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가 생각하는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기여도 보다는 실제로 동 시스템이 부정수급에 기여하는 바를 실증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현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은 해당 보조금 사업을 점 검하도록 의무화2)되어 있는데, 동 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통보 사례 중실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비율인 'e-나라도움 시스템의 부정수급 적발률' 지표가동 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효과 인식도' 성과지표를 'e-나라도움 시스템의 부정수급 적발률'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단위사업인 '대외경제협력 지원'은 장기저리의 차관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개도국차관 집행액(조원), 중점협력국 지원 비중, 연계사업 추진 실적 등 3가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sup>2) 「</sup>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 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

프로그램 목표	단위 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전략목표Ⅲ:	대외협	력 강화로 국기	가위상을 제고하고	고 세계시	장에서의 성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1	'20년	목표	0.71	0.83	0.65
		대개도국차관 집행액	행액     내개노국자관       집행액 합계       ②     '20년       협력국     중점협력국 앞       비중     승인액 비중	실적	0.63	1.05	0.9
		(조원)		달성 <del>률</del>	88.7	126.5	138.5
(3)	대개	대개 동점협력국 지원 비중 (%)		목표	70	73	75
대개도국 경제 협력				실적	76	91	71
활성화	차관			달성률	108.6	124.7	94.7
		3	'20년 유·무상	목표	5	6	8
		연계사업   츠지 식전	연계실적 유상사업 건수	실적	6	11	16
				달성률	120	183.3	200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대개도국차관 집행액은 동 단위사업의 집행실적에 불과한데, 이는 성과 관리제도가 투입된 비용 대비 산출물을 측정하는 것이 본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입된 비용(집행액) 그 자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성과관리제도의 취지 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차관'은 사업 승인 이후 수원국 정부와의 차 관계약 체결, 컨설턴트 및 본구매 사업자 선정, 정책협의 등을 통한 수원국 정부의 예산배정 독려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있어 차관사업의 집행률은 사업의 원 활한 진행과 프로그램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중요 핵심 성과지표로써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 교부, 사업자 공모 등 선정절차, 기초자치단체 교부 및 자치단체 예산배정 독려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대개도국차관'사업의 경우만 집행실적 이 특별한 성과지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물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가. 현 황

국세물납주식매각대<sup>1)</sup>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대금을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에 동 세입 목에서 389억 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다.

### [2020회계연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_							( .	L 11: 1	L L, 70)
	그ㅂ	급		예산현액	징수	수납액	미스나애	불납	수납률
	구분	본예산	추경	에선연락	결정액(A)	(B)	이구납적	결손액	(B/A)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34,373	34,373	34,373	38,915	38,915	-	-	100.0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해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해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 록 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 기능한다.

물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지 않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원활하게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현행법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 경우에만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 1) 코드: 국세물납주식매각대(73-833)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73조(물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 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 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물납이 허용되고 있다.

상속세 물납은 ① 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 초과하고,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③ 금융재산이 납부세액에 미달 할 때 허용된다. 단,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물납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해서는 동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상 「국유재산법」 제 42조3)와 동법 시행령 제38조4)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물납증권의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세물납증권은 비상장증권의 경우 현황조사(평가자료 수집 포함) 및 가치평가를 통해 매각을 실시하고, 미 매각시에는 매년 재평가 후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유재산법령5)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치평가

#### 3)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다.
-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 3. 삭제
-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 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를 한 후 총괄청(기획재정부) 산하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6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초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매각방식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온비드)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우선 실시하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 최종 회차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차기 입찰 전일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나. 분석의견

정부는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매각이 저조한 상황에서 개선책으로 물납주식에 대한 수요 다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물납기업 투자설명회의 성과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매각되어 국고의 귀속되는 비율을 보면, 2016년 8.0%, 2017년 14.8%, 2018년 7.5%, 2019년 9.8%, 2020년 7.1%로서 최대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상태이나 매각되어 현금화되지 못하는 증권들은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④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 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sup>6)</sup> 당연직 정부위원 3인(기획재정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조달청장) 및 위촉직 민간위원 5인(교수, 회계사, 변호사, 애널리스트)

####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물납주식의 매각 현황]

(단위: 억원, %)

					( - 11. 1 - , 79)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산관리공사의 위탁보유 규모 <sup>1)</sup> (A)	8,190	7,855	7,959	5,899	5,675
매각되어 국고에 귀속된 규모 (B)	654	1,162	599	576	402
매각률(B/A)	8.0	14.8	7.5	9.8	7.1

주: 1) 자산관리공사의 위탁보유 규모는 연도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매각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물납된 비상장주식들은 시장수요가 낮아 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물납 주식을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중이 각 회사마다 평균 13%정도로서 물납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적어 투자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매각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2019.12.10.)을 발표하여 허가단계에서는 부적당한 물납주식 납부를 방지하고, 관리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물납주식을 관리하며, 매각단계에서는 물납주식 납부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2019.12.10.)의 주요내용]

구 분	개선 방안
허가단계	(물납 불허 요건 구체화) 물납에 부적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 불허 요건을 명확화 (공동확인 절차 도입) 물납허가 前 캠코-국세청이 공동으로 물납자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물납 요건 등 확인 절차 도입 (과세관청 점검 강화) 상속개시 후 납세자의 물납주식 가치 훼손 행위를 구체화하고, 물납허가 前 필수적으로 점검 (도덕적 해이 방지)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주식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납세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수납가액 재평가제도 개선

구 분	개선 방안
관리단계	(분석 실시) 정량, 정성 분석 등 물납법인 진단 및 기업 분류 (컨설팅 제공) 물납법인 대상 '사전 컨설팅'(온·오프라인)을 통해 물납법인 애로 사항 진단, 상담 등 제공 (지원 연계) 중소벤처기업 중 ① 단기적 경영애로 또는 ②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연계
매각단계	(우선매수제도 도입) 기업승계 물납자 등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안 정적 경영 유도 및 국고 손실 가능성 방지 (매입 유인 제공) 물납주식 재매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재매입시 인센 티브 제공

자료: 「비상장주식 물납제고 개선방안(2019. 12. 10.)」, 기획재정부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추가적으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2021. 4. 23)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물납주식의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물납주식에 대한 수요 다변화 및 확대 등을 도모하여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물납주식 매각활성화 방안(2021. 4. 23.)의 주요내용]

물납주식의 적정 시장가치 반영	물납주식에 대한 수요 다변화
① 우량 물납기업 <sup>1)</sup> 의 수익가치 산출 할	①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
인율(자본환원율 <sup>2</sup> )을 시장 평가에 준	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하는 수준(자기자본비용 <sup>3)</sup> )으로 조정	제공 <sup>4)</sup>
<ul> <li>②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li> <li>운 기업(정체기업)을 선정하여 경쟁입찰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li> <li>확대(현행 20% → 40%)</li> </ul>	②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게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 활성화
③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	③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
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sup>5)</sup> 외부 회	해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현행 10
계법인에 의뢰하여 적정가치 산출	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완화

- 주: 1) 물납기업 중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분류
  - 2) 미래 배당가능액을 현재가치화 하는 할인율 (수익가치=미래배당가능액÷자본환원율)
  - 3)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
  - 4) 수탁 후 두 차례 평가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은 물납기업에 대해 물납금액에 이자 및 관리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 허용
  - 5) 시장에서 통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캠코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가치 비교

자료: 「물납주식 매각활성화 방안(2021. 4. 23.)」,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물납주식의 허용·관리·매각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물납주식의 적정가치로 반영하며, 물납주식의 수요를 다변화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비상장물납주식의 매각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납주식을 취득하는 자는 대부분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납부의무자로 수요가 한정적이었다는 점에서물납주식의 수요자를 다변화하려는 조치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2021. 4. 23)에서는 물납주식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물납금액에 이자 및 관리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까,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 링」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물납주식의 매각 평가가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8에 따른 가치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물납주식의 매각시 평가가격은 동 주식의 자산가치 및 수익 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일부 물납기업의 경우 물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물납주식 발행회사의 매입 유인이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1년 4월 23일에는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 안」에서 물납주식 발행회사에게 물납금액에 이자 및 관리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자사주매입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만 물납주식 발행회사에게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납주식의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sup>7)</sup> 과거 2014년도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 추진」(2014. 9.1)에서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물납 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물납주식의 매입을 독려

<sup>8) 「</sup>국유재산법 시행령」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④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 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가치평가를 통해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현행의 「국유재산법 시행 링」제44조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물납주식 발행회사에 대한 특례를 인정 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2021.4.23)에서 국세물납주식을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에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투자형 매각의 성과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0년 7월에는 물납주식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1회 국세물납기 업 투자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동 설명회는 투자대상이 되는 물납기업을 소개하 고, 투자유치를 원하는 물납기업이 기업 설명(IR)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 투자설명회의 성과로서 2021년 5월말 기준 2개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현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기업이 연평균 18개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기관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2019.12.10.)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연계"이를 강화하여 투자기관의 투자유인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 7. 10.(금), 14:00 ~ 16:30
  - ㅇ 장소 : 서울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
- □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국고국장, 출자관리과장),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장)
- 캠코(사장, 본부장), 한국벤처투자(CEO), 증권분과위원, 투자기관(벤처캐피탈 (VC), 증권사 등), 물납기업(투자유치 희망 기업)
- □ 주요내용
  - 기관투자자(은행·증권사 등)를 대상으로 물납기업을 홍보하여 국가 지분 매각 추진(「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월))
  - 물납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지원(「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19.12월))

자료: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2020.7.10.)」, 기획재정부

<sup>9)</sup>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차 상담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 중인 컨설팅 프로그램(경영 전반, 기술개발, M&A 등) 연계(신용보증기금)

# 가. 현황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상환1) 계획액은 당초 18조 9,055억 7,500만원이었으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34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249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제3회추가경정예산에서 1,20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다. 자체변경을 통해 국고채 이자상환액을 1조 1,800억원 감액하여 국고채 이자상환은 17조 7,554억 3,900만원으로 수정되었다. 이 중 17조 2,737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817억원을 불용하였다.

#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상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전년도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UISIUII	불용액
			이월액	(A)	(B)	(B/A)	이혈액	골용액
국고채 이자상환	18,905,575	17,755,439	-	17,755,439	17,273,739	97.3	-	481,700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은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일정부분 완충규모가 필요하나, 기타기금의 자금마련을 위해 자체변경으로 감액하는 집행과정 및 적정한 계획규모에 대해 국회심의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 물량(611.5조원, '19년말 기준)의 이자상환은 대부분 표면금리의 계획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국고채 이자상환지출의 계획과 집행의 차이는 주로 신규 국고채발행(조기상환 포함 '20년 174.5조원)의 이자상환 차이라고 볼 수있다. 2020년도 신규 국채발행금리(=공자기금 예탁금리)를 2.6%로 가정하여 예산을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sup>1)</sup>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71-780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3.5%보다 0.9%p 낮았다. 국회에서 금리는 조정되지 않았으며, 2020년도 신규 국고채 낙찰금리의 평균 이자율은 1.3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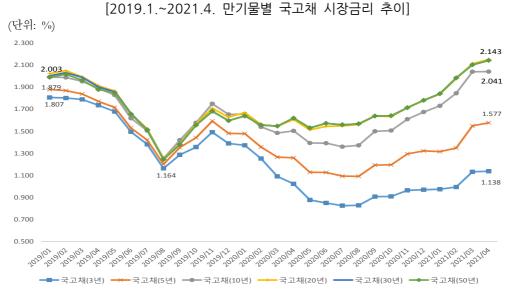
[연도별 신규 국고채 금리 현황]

(단위: %)

	정부안	국회조정	국회 확정	조달평균금리
2012	5.0	-0.5	4.5	3.23
2013	4.8	-0.8	4.0	3.14
2014	4.8	-0.8	4.0	3.02
2015	4.5	-1.0	3.5	2.15
2016	3.5	-0.7	2.8	1.63
2017	2.3	0	2.3	2.10
2018	2.7	0	2.7	2.43
2019	3.5	0	3.5	1.68
2020	2.6	0	2.6	1.39
2021	2.4	0	2.4	-

자료: 기획재정부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정 부분 완충(buffer)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2020년의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단기물과 장기물 간의 금리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낮은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단기물 금리의 경우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2020년 4/4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 및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추경으로인한 국고채 발행량 증가 등에 따라 장기 국고채 이자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유의할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만, 연례적으로 계획안을 과대 편성한 후 예산 심의시 9천억원대 규모를 삭 감한 후 1조원대 규모를 자체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 [연도별 국고채 이자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안(A)	계획(B)	계획수정(C)	결산(D)	차이(A-B)	차이(B-D)	집행률 (D/B)
2014	20,485,775	19,024,501	18,039,723	18,020,449	1,461,274	1,004,052	94.7
2015	20,740,728	18,872,854	18,952,850	18,255,731	1,867,874	617,123	96.7
2016	20,516,150	18,832,653	18,832,653	17,961,410	1,683,497	871,243	95.4
2017	18,832,819	18,141,598	18,141,598	17,197,102	691,221	944,496	94.8
2018	18,522,454	17,822,466	17,822,466	17,305,696	699,988	516,770	97.1
2019	19,052,735	18,152,502	17,181,677	16,698,028	900,233	1,454,474	92.0
2020	19,855,575	18,905,575	17,755,439	17,273,739	950,000	1,631,836	91.4
2021	21,110,096	20,210,096	-	-	900,000	-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특히 2020년 계획과 결산의 차이는 1조 6,318억 3,600만원에 이르며 이 중 1조 1,800억원은 코로나19 피해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 지원사업비 부족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800억원 예탁금 증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관경영자금 융자를 위해 응급의료기금 900억원 예탁금 증액, 국고채 원금상환 6,100억원(국고채 조기상환 비용 및 물가상승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 등 지급을 위해 증액)으로 자체변경을 통해 사용하였다.2)

[2020년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수정 사유	금액
	제1회 추경 증액	134,420
국회의결	제2회 추경 감액	△224,955
	제3회 추경 증액	120,39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탁금 증액	△480,000
기네버건	응급의료기금 예탁금 증액	△90,000
사체변경 - -	국고채원금상환 증액	△610,000
	소 계	△1,180,000

자료: 기획재정부

공자기금은 2014회계연도에도 불용이 예상되는 국고채이자상환을 9,848억원을 감액하고 공적상환기금 등 추가 예탁에 활용한 바 있다.

공자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3)에 따라 기금의 신축적 운용목적을 달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sup>2) 2019</sup>년에도 1조원을 국고채 조기상환에 필요한 추가적 비용(고금리→저금리 발행에 따른 추가적 보전 비용)을 위해 국고채 원금상환으로 자체변경을 통해 사용한 바 있다.

<sup>3) 「</sup>국가재정법」

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자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를 감액하여 기금 예탁금을 증액시킬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인다. 다만, 그 규모가 적지 않으므로 향후 자금지원이필요한 기금에 공자기금 예탁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고채 이자상환액을 자체변경으로 감액하는 재정운용과정이 효율적인 집행과정인지 국회심의과정에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 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sup>5.</sup>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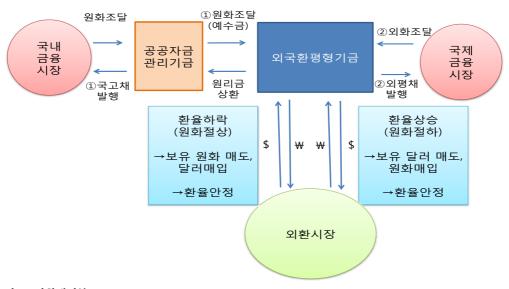
<sup>6.</sup>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 가. 현 황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 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외국환거래법」제13조 제1항1)에 따라 설치되었다.

외평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여 외화를 조달하여 자금을 확보한다.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환율 하락(원화 절상)시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sup>1) 「</sup>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2020년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자금운용2) 계획액은 당초 69조 40억 4,900만원이었으나, 65조 103억 2,600만원으로 수정되었고, 이 중 55조 927억 900만원을 집행(84.7%)하였다.

[2020년 외국환평형기금 여유자금운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OUR	계호	힉액	전년도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UISIUN
사업명	당초	수정	이월액	(A)	(B)	(B/A)	이월액
여유자금운용	69,004,049	65,010,326	0	65,010,326	55,092,709	84.7	0
한국은행 예치	51,664,718	47,670,995	0	47,670,995	42,180,056	88.5	0
비통화 금융기관예치	17,339,331	17,339,331	0	17,339,331	12,912,653	74.5	0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미국의 환율 심충분석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거래를 신중하게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는 매년 반기별로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1.4.26. 바이든 행정부 최초로 2020년 미국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정책을 분석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 및 경쟁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이하 1988년법) 3001~3006조, 「2015년 무역증진 및 무역집행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이하 2015년법) 701~702조에 따라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2015년법에서는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교역상대국 중 ① 지난 12개월 간 GDP의 2% 이상 외환 순매입

<sup>2)</sup>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9703

또는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반복적인 외환 순매입 등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Persistent, one-sided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② 지난 12개월 간 GDP 2% 이상의 현저한 경상수지 흑자(A meterial current account surplus), ③ 지난 12개월 간 200억달러 이상의 상당한 대미무역수지 흑자(A significant bilateral trade surplus with the U.S.)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재무부는 3가지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심층분석국(enhanced engagement), 2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요 교역 대상국 평가]

			외환시	장개입			경상수지		대미무역
=	구분	1년간 외환순매입 (GDP 대비 %)	1년간 외환순매입 (10억 US달러)	반년간 외환순매입 (10억 US달러)	1년 중 6개월간 순매입	경상수지 (GDP 대비 %)	3년간 변동폭 (GDP 대비 %)	경상수지 (10억 US달러)	대미 무역수지 (10억 US달러)
심층	스위스	15.3	115	22	Yes	3.7	-3.5	28	57
분석	대만	5.8	39	35	Yes	14.1	0.0	94	30
대상	베트남	4.4	15	10	Yes	3.7	4.3	13	70
	싱가포르	28.3	97	52	Yes	17.6	0.3	60	4
	인도	5.0	131	99	Yes	1.3	2.8	33	24
	태국	1.9	10	6	Yes	3.2	-6.4	16	26
	중국	-0.1~	-15~	-7~	No	1.9	0.3	274	311
	말레이	1.2	180	127					
	시아	0.6	2	2	Yes	4.4	1.6	15	32
	한국	0.3	5	12	Yes	4.6	0.0	75	25
   관찰	일본	0.0	0	0	No	3.3	-0.9	164	55
대상	캐나다	0.0	0	-	No	-1.9	0.9	-32	15
국가	영국	0.0	0	-	No	-3.5	0.3	-95	-9
	멕시코	-0.2	-2	0	No	2.4	4.2	27	113
	브라질	-2.6	-38	-2	No	-0.9	-0.1	-12	-12
	네덜란드	-	-	-	-	7.8	-3.0	71	-18
	독일	-	-	-	-	6.9	-1.0	260	57
	아일랜드	-	-	-	-	4.8	3.8	20	56
	이탈리아	-	-	-	-	3.7	1.1	69	30
	벨기에	-	-	-	-	-0.2	-0.9	-1	-7
	프랑스	-	-	-	-	-2.3	-1.5	-60	16

자료: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2021.

미국 재무부는 동 환율보고서에서 스위스, 베트남, 대만을 심층분석국(enhanced engagement)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하였다. 지난 환율보고서(2020.12.)에서 환율조작국(manipulate)으로 지정되었던 스위스와 베트남이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되었다. 1988년법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1년 경과 후 개선되지 않을 시 미국 기업의 투자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동 환율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를 감안할 때 스위스와베트남의 외환시장 개입이 무역에서 불공정 이익을 얻거나 무역수지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지를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3) 미국 재무부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에게 통화 저평가 및 무역 불균형 현상(imbalances)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연속해서 관찰대상국에 포함되고 있다. 2020년에는 2015년법 3가지 조건 중 경상수지 흑자(2020년 GDP의 4.6%), 대미무역수지 흑자(2020년 250억달러) 조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2020년 외환순매입은 GDP의 0.3%(50억 달러)로 조건(GDP의 2.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sup>3)</sup> 심층분석국이 외환시장 개입으로 무역에서 불공정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2020년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원화가치가 절하되어 환율이 상승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원화가치가 절상되어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FRB과의 통화스왑 체결(총 600억달러 중 190억달러 인출), 경상수지 흑자 및 자본유입(외국인투자자들은 2020년 한국 주식을 160억달러 순매도하였으나 채권은 1년 내내 매수하면서 330억달러 순매수) 등으로 인해 2020년 하반기 중 원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10.5% 절상4)된 것에 기인한다.

한국의 외환당국(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2020년 중 50억달러(GDP의 0.3%) 규모의 외환을 매입하였으나, 주로 2020년 4/4분기에 115.4억달러의 외환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2020년 외환당국 순거래]

(단위: 억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十世	상반기	3/4	4/4	1/4	2/4	3/4	4/4
외환 순거래	-38.0	-28.7	0.0	-58.51	-3.45	0.0	115.43

주: 기획재정부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2018.5.17.)에 따라 2018~2019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로, 2019년 3/4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외환당국의 순거래 규모를 한국은행을 통해 발표함. 자료: 한국은행(www.bok.or.kr)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2021년 환율의 불확실성은 높은 편이며, 미 달러 화는 확장적 재정정책,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절하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의 외환당국(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5년법의 3가지 조건 중무역수지 및 대미무역흑자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미국의 환율심층분석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환당국이 외환거래를 신중하게 검토후 운용할 필요가 있다.

<sup>4) 2020</sup>년 전체 6.4% 절상, 실질실효환율 기준 2.7% 절상

# 가. 현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 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2019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5.4억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이다.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되고,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증여)와 유상원조(양허성 차관)로 나누어진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는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유상원조는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및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019년 무상원조는 우리나라 전체 ODA 중 67.3%를, 유상원조는 32.7%를 차지하고 있다.

ODA의 총괄 및 조정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관기관이다.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기관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sup>1)</sup> 사업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0년도 대개도국차관 예산은 당초 1조 1,848억 7,900만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에서 9,848억 7,900만원으로 변경된 후 이 중 9,02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다.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지역별로 5개 세부사업(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태평양)으로 구분되며, 그 외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sup>1)</sup>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31-301~309

#### [2020년 대개도국차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호	액	전년도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UISIUI	H O NI
	당초	수정	이월액	(A)	(B)	(B/A)	이월액	불용액
대개도국치관	1,184,879	984,879	-	984,879	902,423	91.6	-	82,456
아시아차관	416,394	328,632	-	328,632	324,954	98.9	-	3,678
아프리카차관	229,367	99,485	-	99,485	74,279	74.7	-	25,206
중동-CIS차관	76,872	56,473	-	56,473	51,210	90.7	-	5,263
중남미차관	41,244	22,138	-	22,138	20,178	91.1	-	1,960
태평양차관	142,887	185,310	-	185,310	175,349	94.6	-	9,961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278,115	292,841	-	292,841	256,453	87.6	-	36,388

자료: 기획재정부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절차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2) 다음과 같이 절차가 이루어진다.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 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기 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5.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 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 정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 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 7.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며,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 8.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7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차주(차주) 등과 차관 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 차관사업 절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 대개도국 차관사업은 ① 정상회담, 고위급회의 의제 또는 후보사업 협의를 위한 사업 발굴 미션 등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② 이후 정부간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Rolling Plan) 등이 확정된다. ③ 그리고 수원국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F/S)를 실시하여 후보사업 건의를 하기도 하고, 수원국에서 요청할 경우 수출입은행 발주를 통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의 유무를 조사한다. ④ 수원국의 공식 차관신청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게 되며, 수출입은행은 사업범위, 사업비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현지심사 포함)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교부 등 사업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승인하게 된다. ⑥ 이후 수원국정부와 외교부가 정부간 공여협정(Agreement) 및 시행약정(Arrangement)을 체결하게 된다. ⑦ 정부간 공여협정(시행약정 포함) 내용에 따라 수출입은행장은 수원국 정부와 차관계약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차관계약 (Loan Agreement: L/A)을 체결한다. ⑧ 사업집행과정은 세부적으로 컨설턴트 고용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 간 협정과 제1항제8호에 따른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국제개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구매 → 사업실시 및 자금집행으로 구분된다. 먼저 수원국의 사업실시기관이 차 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원국 정부은 사업의 공정 이행정도에 따라 자금지출을 요청하면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집행하게 된다. ⑨ 원리금 회수 단계에서 수출입은행은 차관사업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완공점검(사업완공보고서 접수시점)시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완공점검 후 2년(사후평가) 동안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원국 국민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를 수행한다.

### 나. 분석의견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업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수원국의 긴급상황 대응, 현지사무소 중심의 사업관리 등 사업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 EDCF 대개도국 차관사업은 지속적으로 차관계약 지연, 컨설턴트 및 구매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부진에 시달려 왔다.

[집행부진이유 유형별 분류]

유형	내용
(유형1) 차관계약 지연	<ul><li>차관계약 문안 협의 지연</li><li>차관계약 체결을 위한 수원국 내부 절차, 필요서류 준비 지연</li></ul>
(유형2) 컨설턴트 및 구매 지연	- 수원국의 입찰서류 작성·검토 및 내부협의 지연 - 기술표준 변경, 기자재 사양 변경에 따른 재검토
(유형3) 수원국 예산배정 지연	- 수원국 내부 예산 심의·예산 배정 절차 지연
(유형4) 기타 지연사유	- 사업 범위 변경 요청 - 정치적 불안,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자재·물품·인력의 공급이 제한되었다. 수원국 정부의 셧다운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차관계약이 지연되었고, 예산배정 지연, 본구매 계약자 선정 지연, 차관 지출 순연, 컨설턴트 고용 순연 등 기존의집행부진 상황이 심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상주인력 철수, 인력투입 제한, 기자재 선적 지연 등으로 2020년 계획되어 있던 EDCF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수원국은 기존사업의 연기를 요청한 반면,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대응 의료기자재와 코로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수원국의 수요는 대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EDCF는 코로나 피해가 큰 수원국의 보건분야 및 위기극복 경제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차관3)을 제공하였다.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차관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국가	사업명	금액	비고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100	
캄보디아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50	
파라과이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50	IDB 협조융자
에티오피아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40	AfDB 협조융자
가나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30	AfDB 협조융자
탄자니아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40	AfDB 협조융자
방글라데시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50	
중미5개국	코로나19 대응 국제개발금융기구(CABEI) 앞 차관	50	
	합 계	4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sup>3)</sup> 프로그램차관이란 관련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관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차관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대책 수립 및 시행,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코로나19 검사 대상·절차·지침 마련 등 시스템 구축, 공공의료인력 확충, 의료기자재 등 의료인프라 확충,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대책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0년 국제개발금융기구(MDB) 및 외국의 원조기구 등 국제사회도 개도국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집중하였다.

[국제사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현황]

구분	계획 발표	지원규모 (계획 기준)	주요내용
세계은행 (WB)	'20.3월	1,600억달러	· '20.3월, 코로나19 지원계획(1,600억달러 규모) 발표 · 공공부문 지원(1,040억달러, IBRD·IDA): 국가단위 대응(국가비상계획 정비,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 현대화 등), 의료인력 강화, 질병관리체계 구축, 백 신구매 및 공급 등 지원 · '20.9월 기준 공공부문, 110개국 앞 430억불 지원
아시아 개발 <del>은</del> 행 (ADB)	'20.4월	200억달러	<ul> <li>'20.4월 코로나19 포괄적 대응 패키지 승인</li> <li>· 공공부문 지원(180억달러): 개도국 정부 앞 예산지원,</li> <li>의료장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li> <li>'21.1월 기준 167억달러 승인</li> </ul>
미주개발 은행 (IDB)	'20.3월	190억달러	<ul> <li>'20.3월, 코로나19 대응 자금지원계획 발표</li> <li>· 공공부문 지원(120억달러): 긴급 보건지원, 사회안 전망 구축, 생산성제고, 재정정책 지원 등</li> <li>'20년말 기준 총 81억달러 승인</li> </ul>
미국 (USAID /DFC)	'20.3월	53억달러	<ul> <li>· USAID: 응급 의료자금, 건강 프로그램, 경제 안정화지원, 국제 재난 지원등 13억달러 → '20.9월 기준 6.7억달러 승인</li> <li>· DFC: 코로나19 긴급대응 유동성자금(40억달러) 발표→ '20년말 기준 2.4억달러 승인</li> </ul>
독일 (KfW)	'20.4월	50억유로	· '20.4월, 코로나19 긴급대응 프로그램 발표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2억유로), 식량안보, 글로벌 공급체계 지원, 민간기업 지원, 재정지원(3억유로) 등 · '20년말 기준 기준 37억유로 승인
프랑스 (AFD)	'20.4월	11.5억유로	<ul> <li>'20.4월, COVID-19 Health in Common 발표</li> <li>' 수원국 코로나 대응정책 수립, 진단 및 치료, 지역</li> <li>사회 캠페인, 보건시스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li> <li>11.5억유로</li> <li>'20년말 기준 5억유로 승인</li> </ul>

구분	계획 지원규모 발표 (계획 기준) 주요내용					
일본 (JICA)	'20.2월	45억달러	<ul> <li>· 코로나19 위기대응 긴급차관(예산지원 방식)을 통해 2년간 약 45억달러 지원 발표</li> <li>· '21.1월말 기준 약 31억달러 승인</li> <li>· 코로나19 위기대응 긴급차관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차관 비중 대폭 확대*: 3.8%('18) → 3.2%('19) → 41.4%('20)</li> <li>* JICA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li> </ul>			
대한민국 (EDCF)	'20.4월	4억달러	<ul><li>'20.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보강방안 발표</li><li>개도국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불 이상 연내 긴급지원</li><li>'20년 중 4.8억달러 승인</li></ul>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획재정부는 수원국의 전염병·기후위기·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에 즉각 대응하고, 현지사무소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집행절 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원국의 정치불안·자연재해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바 있으나, 긴급차관업무지침 사례를 바탕으로 긴급상황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 EDCF는 수원국의 의료기자재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기존사업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긴급 기자재 차관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신속하게 의료기자재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에티오피아 및 가나의 의료기자재 공급사업(각각 3천만달러, 인공호흡기 및 진단장비 긴급 지원 등)은 사업절차(심사·구매·융자실행 등)를 대폭 간소화하여, 차관신청부터 최초 자금집행까지통상 2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8개월로 단축하였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수원국의 자연적 재난·사회적 재난 등을 구분하여 '긴급 차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EDCF 현지 사무소의 사업관리 권한을 기존 역할보다 확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사업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전세계적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외출장 등이 제한되어 EDCF는 사업발굴 및 현지 협력관계 구축(수요조사, F/S 현지조사 지원 등), 심사출장 전 사업 준비상태 점검, 정책협의 등 출장단 지원 등에

머물던 EDCF 현지 사무소의 사업관리 권한을 확대하였다. 베트남의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립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산 자재를 수입하기 어려워, EDCF 현지 사무소가 수원국과 협의하여 일부 자재의 경우 현지산으로 구매계약 변경하도록 동의하는 등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향후 EDCF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체 EDCF 사업 단계 중 비대면으로 가능한 절차는 화상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려 하고 있다.4)

[EDCF 사업 전체 단계 중 비대면 회의 적용 가능(음영부분) 절차]

사업	정책	타당성	사업	차관	정부	정부간	차관계약 체결	사업	원리금
발굴	협의	조사	심사	신청	승인	협정	체결	집행	회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수원국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전체 EDCF 사업 단계 중 비대면으로 가능한 절차는 화상 회의로 전환하되, 대면사업집행 절차는 EDCF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사업집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지 사무소 권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sup>4)</sup> EDCF는 서류 절차, 사업관리·연수, 정책공유 등 EDCF 차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별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하고, 화상 회의록 등 비대면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령상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 마련 필요

# 가. 현 황

일시차입금 이자상환1)사업은 국가가 국고금 출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그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동 사업의 예산현액 총 468억원 중 38.8%인 181 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286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 본예산	_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46,800	46,800	-	_	46,800	18,151	38.8	-	28,649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금 운용시에는 계획한 세출시기에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조기집행목표 수준을 2016년 60.0%에서 2020년 62.0%까지 상향하고 있고 조기집행 실적도 2016년 61.9%에서 2020년 66.5%까지 높이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기집행강화 경향에 따라 일시적인 세입-세출간의 불일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sup>1)</sup> 코드: 일반회계 2272-561

#### [최근 조기집행 목표치 및 실적]

(단위: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목표치	60.0	58.6	58.0	61.0	62.0
실적	61.9	60.3	62.1	65.4	66.5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은 세입-세출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고금 관리법」제32 조제1항2에 근거하여 국고금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 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최근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통한 차입규모를 보면, 2016년 29조 9,400억원에서 2018년 2조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2019년 84조 7,080억원, 2020년 142조 5,000억원의 차입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일시차입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55억원, 161억원, 24억원, 1,649억원, 1,133억원의 이자비용이 각각 발생했다.

# [최근 5년간 국고금 일시적 자금조달 유형]

(단위: 억원)

						(2111 12)
연 도		연도 2016		2017 2018		2020
차	한은 일시차입	209,400	79,400	20,000	487,080	453,000
입	재정증권 발행	90,000	20,000	-	360,000	972,000
금	합 계	299,400	99,400	20,000	847,080	1,425,000
이자비용		555	161	24	1,649	1,133

자료: 기획재정부

<sup>2) 「</sup>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자비용의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4항3)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선 ① 국고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고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이자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없을 경우 ② 일반회계의 '일시차입금 이 자상환' 사업의 예산으로 미충당된 이자비용을 지급한다.

### 나. 분석의견

첫째,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에 대한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을 세입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처리기준을 법령에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까지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 집행실적은 없었고, 2020년에 예산현액 468억원의 38.8%인 181억 5,100만원만이 집행되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현액	54,000	27,000	27,000	1,000	46,800	
집행액	0	0	0	0	18,151	
집행률	0	0	0	0	38.8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고금 관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일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우선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상환하는데, 매년(2019년까지) 국고 금 누적운용수익이 이자비용을 초과하여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에서 이자비용 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sup>3) 「</sup>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 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이처럼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이 일시차입금 이자비용을 상환하고도 상당규모의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2018년 말에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이 3,662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00억원을 세입조치하여 세입세출외로운용되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의 일부를 해소하였다.

#### [국고금 운용수익금 누적액 및 누적액 세입조치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말 국고금 운용수익금 누적액	786	2,059	3,662	838	140	
국고금 운용수익 중 세입조치 금액	-	-	-	2,000 <sup>1)</sup>	-	

주: 1) 기타재산수입목으로 이입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과거와 같이 국고금 운용수익금이 일시차입금 이자상 환에 투입되고 남은 잔여액이 계속 누적될 경우, 이를 세입처리하는 명확한 법령상 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에서 차년도에 예상되는 일 시차입금 이자비용과 예비 여유재원(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내부기준을 2019년부터 시범적용 중이라는 입장이다.

### [국고금 운용수익금 잔액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기준 산식]

세입이입 규모 = (금년) 국고금 운용수익금 이월잔액 - (차년) 일시차입금 예상 이자비용 - 1,000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세입세출외로 운용하는 자금은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감안할 때, 가급적 엄격하게 운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제17조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총계주 의의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4) 이에 국고금의 통합계정 수익금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제34조제2항5)에서 세입세출외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나, 누적된 수익금의 규모가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 세입세출 외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상 기준이 없다. 이러한 기준을 정부내부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정부의 국고금 수익금의 자의적인 운용을 야기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에 대한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중 차년도 예상 이자상환액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좌에 유보하여 운용할 계획이나 여유자금 유보의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국고금 운용수익금 잔액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에서 차년도에 예상되는 일시차입금 이자비용과 예비 여유재원(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차년도 세입으로 이입한다는 것이다. 즉, 국고금 운용수익금 잔액에서 차년도 예상 일시차입금 이자를 제외하고도 1,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외로 운용하겠다는 의미이다.

#### [국고금 운용수익금 잔액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기준 산식]

세입이입 규모 = (금년) 국고금 운용수익금 이월잔액 - (차년) 일시차입금 예상 이자비용 - 1,000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sup>4)</sup> 김춘순, 「국가재정(이론과 실제)」, 동연, 2018, p.576

<sup>5) 「</sup>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sup>1.</sup>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sup>2.</sup>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그러나 차년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전년 말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차년도 상반기 국고금 운용수익금도 활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예산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등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자금 부족에 대한 이중의 완충장치가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1,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 외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6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부기준은 시범 적용 중이므로, 향후 운용과 정을 살펴본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정식 지침으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 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국고금의 여유자금을 세입에 계상하여 세출사업에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재정지출의 효과 및 국채발행분 절감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여유자금 보유의 필요성 및 그 규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up>6) 「</sup>국고금 관리법」제34조제2항에서는 국고금 운용수익금을 일시차입금 이자비용 이외에 국고금 운용에 관련된 경비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용경비(위탁운용사에 대한 수수료)는 국고금 운용수익에서 제외된 후 통합계좌에 수납되므로, 운용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지 않음

### 가. 현 황

재정사업 타당성조사<sup>1)</sup>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예산현액 101억 400 만원 중 9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4										
	프로그램	예산		전년도	이션용	예신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H 0 M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10,066	10,066	38	-	10,104	9,967	98.6	24	113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2)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결 과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재정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결 정을 하는데 기여한다.3)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 1) 코드: 일반회계 2646-301
-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 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 3.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는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②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이나,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 청에 의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조세연구원에서 수행한다.4) 2020년에는 24건 의 예비 타당성조사, 58건의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 나. 분석의견

2018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조사면제 건수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투자 결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산편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5)을 두고 있는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청사 신·

####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2. 문화재 복원사업
-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sup>3)</sup> 박기영, 「한국재정」, 법우사, 2018, p.420

<sup>4)</sup> 대규모 국가 R&D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편, R&D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KISTEP)이다.

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개별적인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등 포괄적인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건수 중 면제 건수의 비율을 보면,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28.3%, 21.4% 수준을 보이다가 2018년 50.8%, 2019년 58.7%, 2020년 56.4%로 면제 건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건수 및 면제비율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건수(A)	43	44	29	33	2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B)	17	12	30	47	3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건수(C=A+B)	60	56	59	80	55
면제비율(B/C)	28.3	21.4	50.8	58.7	56.4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전체 면제건 수 중「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 제10호의 포괄적 면제사유로 면제된 건수의 비중 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면제사유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등" 비교적 면제요건

<sup>8.</sup>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sup>9.</sup>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이 명확하나, 제10호의 경우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서 행정부의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요건으로 규 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면제사유별로 구분할 때, 전체 면제건수 중 제10호의 포괄적 면제사유로 면제된 건수의 비중이 2018년부터 50% 를 넘어서고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별 면제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비타당성 면제건수(A)	17	12	30	47	31
제1호 (공공청사 등 신증축)	5	1	4	3	5
제2호 (문화재 복원)	-	-	1	-	-
제3호 (국방관련)	1	-	1	6	-
제4호 (국가간의 협약)	-	-	2	-	1
제5호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	1	-	-	2
제6호 (재난복구 등)	3	3	-	2	2
제7호 (재난예방)	-	-	-	1	-
제8호 (법령에 따른 사업)	8	5	6	10	5
제9호 (인건비 및 경상비지원)	-	-	-	-	-
제10호(B) (지역균형 발전 및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대응)	-	2	16	25	16
B/A(%)	0	16.7	53.3	53.2	51.6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8년0, 2019년7)에는 저출산, 청년고용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한 경제·사회 여건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등 을 위해 예타면제 비중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건수가 대상건수의 50%를 초과하고, 면제건수 중에서도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10호의 포괄적인 사유로 면제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객관적인 공공투자관리를 통해 자원의 비효율적배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국가재정법」제38조제5항이 개정되어 2020년 7월부터는 제38조제2항 제10호의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제10호의 사유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비중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면제되는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up>6) (&#</sup>x27;18년) 저출산·혁신성장(2.6), 청년일자리 대책(8.4)

<sup>7) (19</sup>년) 균형발전프로젝트(23.1), 일본 수출규제 대응(1.9)

<sup>8) 「</sup>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가. 현황

소비자 물가관리<sup>1)</sup>사업은 물가조사 및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동 사업의 예산현액 9억 6,200만원 중 9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소비자 물가관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Ī	# <b>-</b>	ㅠㅋㄱ래 예산 :		전년도	이션용	예신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100
	프로그램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이월액	눌픙액
	소비자 물가관리	962	962	-	-	962	933	97.0	-	29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조2) 및 「소비자기본법」제28조제1항제2호3) 및 제32조4)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특별물가조사' 사업과 '물가감시센터' 사업 등 2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특별물가조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가격 연구·조사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것 이고, ②'물가감시센터'는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해 제품의 실제가격 및 가격책 정의 합리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 1) 코드: 일반회계 3131-302
-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소비자 기본법」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 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 4) 「소비자 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의 특별물가조사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사업과 사업 수행주체 및 조사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 수행주체·조사내용 등의 측면에서 두 사업을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특별물가조사' 사업은 공모를 통해 가격 조사·연구를 수행할 소비자단체를 공모하고, 선정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동 사업은 2020년에 8개 소비자단체가 수행하는 14개 과제 및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상·하반기 사업보고회,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현액 4억5,400만원 중 4억 2,500만원을 집행했다.

### [2020회계연도 특별물가조사 사업의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개)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지원과제	지원단체
특별물가조사	454	425	14	8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동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합리적 거래 소비문화 확산' 및 '상품비교정보 생산지원' 사업과 수행주체 및 조사 내용상 유사한 측면이 있다.

먼저, 사업 수행주체의 측면에서는 기재부의 '특별물가조사' 사업은 한국소비자 연맹, 금융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이고, 공정위의 '합리적 거 래 소비문화 확산', '상품비교정보 생산지원' 사업 역시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 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로 수행하는 주체가 유사하다.

또한, 조사내용 측면에서는 기재부의 '특별물가조사' 사업의 과제는 "O2O 세탁서비스와 오프라인 세탁서비스 가격비교", "온라인 강의를 위한 PC 및 주변기기의 성능 및 가격 비교분석" 등 상품 및 용역의 가격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공정위의 '상품비교정보 생산지원' 및 '합리적 거래·소비문화확산' 사업의 과제 역시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의류용 세탁세제", "골프장갑", "냉동피자", "공유전동 퀵보드", "무선이어폰" 등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재부와 공정위에서 수행하는 과제 모두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역시 두 부처 사업의 유사한 점이다.

## [2020회계연도 기재부와 공정위의 가격조사 지원사업 비교]

구 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세부 사업명	소비자 물가관리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내역 사업명	○특별물가조사(보조금)	○ 합리적 거래 소비문화 확산(보조금) ○상품비교정보 생산지원(연구용역)
2020년 예산	4억 5,400만원	7억 6,000만원
	○ 한국부인회	
	○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소비자연맹
	○ 금융소비자연맹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소비자시민모임	○(사)소비자시민모임
사업	○소비자교육중앙회	
수행	ㅇ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ㅇ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단체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YWCA ○부산소비자연맹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광주소비자연맹
연구 과제	○O2O 세탁서비스와 오프라인 세탁서비스(프랜차이즈 및 일반업소)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 가격적정성 분석 ○반려동물 관련 진료비/사료/용품가격조사를 통한 소비자부담완화 및 물가안정 ○배달앱 이용 판매가격조사를 통한 소비자 부담경감 및 피해예방방안마련 ○코로나시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위한 PC 및 주변기기의 성능및 가격 비교분석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어린이용 구강청결제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영유아, 어린이용 치즈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휴대용 칫솔살균기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오가닉 아동용 실내복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오가닉 아동용 실내복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의류용 세탁세제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의류용 세탁세제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구 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재난시대(코로나19) 생필품·가공 식품 중심으로 유통업체 자체 브 랜드(PB) 상품 가격조사 및 비교 를 통한 가계물가 안정 유도사업 ○국내외 주요 농식품 및 생활필수 품의 국제물가비교 ○온라인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온 라인 강의료 적정성 분석(초중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자책 시장 현황조사를 통한 물 가정책 제언 ○방역위생용품 가격 조사를 통한 가격 변화 추이 분석 및 가격 안 정화 방안 ○음원제공사이트의 가격조사를 통 한 소비자 음원 이용 부담 안정 화를 위한 방안 연구 ○새로운 가계통신비 부담요인인 OTT서비스 및 유료VOD서비스 가격조사·비교 및 가격적정성 모 색을 위한 사업 ○2020년 하반기 생수 및 수돗물 정수필터 구매증가 및 가격변동 조사분석 ○자동차 타이어 가격 및 교체비용 유통채널별 비교 실태조사 ○통신요금 신고제 변화에 따른 개 선방안과 5G단말기 및 서비스가 격조사를 통한 가계통신 인하방 안마련 ○상, 하반기 사업보고회 및 종합 보고서 작성	○유아동용 부력보조복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심리스 브라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골프장갑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기능성 쿨링 티셔츠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냉동피자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대상자우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냉동새우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사업 ○당리적 거래·소비문화확산>  ○공유전동킥보드 ○정기구독서비스 ○연택트교육서비스 ○위오스크서비스 ○음식물처리기 ○무선이어폰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

자료: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두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조사과제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부처간 사업의 차별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 등의 가격조사를 하는 목적을 각기관의 직제상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5)에서는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6)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기재부는 물가안정 시책의 총괄·조정에,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정보제공에 중점을 두어 연구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특별물가조사' 사업의 수행주체를 소비자단체 이외의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수행주체를 다변화하고, 조사내용도 물가안정 정책제언을 위한 가격조사에 중점을 두는 등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사업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6조(경제정책국)

<sup>5) 「</sup>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sup>16.</sup>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sup>6) 「</sup>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소비자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sup>2.</sup>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sup>10.</sup>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가. 현 황

통일기반조성1) 사업은 북한경제를 분석하고 개발전략을 마련하며, 통일 전후의 경제운영방안·한반도 신경제구상·남북경협추진방안 연구 등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 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10억 6,400만원 중 5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5,3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통일기반조성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del>전용</del>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 <del>률</del>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통일기반조성	1,050	1,031	33	-	1,064	554	52.1	57	453
정책연구비	-	-		1,000	1,000	519	51.9	57	424

주: '정책연구비'(260-02)목은 당초 예산편성시 '일반용역비'(260-01)목으로 편성되었으나, 연구용역의 성격이 정책연구용역에 부합하여 정책연구비로 전용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동 사업 예산 중 정책연구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0개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다.

#### 나. 분석의견

첫째, 기획재정부는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매년 1건을 제외하고 연구과제명 및 연구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회의 결산심의 기능 확보 및 통일부의 정책연구용역 공개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범위를확대하고 최소한 연구과제명 및 연구자는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sup>1)</sup> 코드: 일반회계 3132-304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2)

그런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연구용역결과 공개 현황을 보면, 매년 1건의 연구용역만 공개되고 나머지 연구용역은 과제명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4건중 1건, 2018년에는 3건중 1건, 2019년 및 2020년에는 각각 10건중 1건만이 공개되고 있다.

##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연구용역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연구용역 과제명	금액
2017	○통일시대기반조성을 위한 통일 경제분야 한-독 국제공동연구	150
2017	○대외비 연구용역 3건(비공개)	272
2018	○통일시대 기반조성을 위한 통일 경제분야 한독 국제공동연구	150
2018	○대외비 연구용역 2건(비공개)	400
2010	○통일시대 기반조성을 위한 통일 경제분야 한독 국제공동연구	95
2019	○대외비 연구용역 9건(비공개)	541
2020	○남북한 경제용어 비교 사전 발간	74
2020	○대외비 연구용역 9건(비공개)	445

자료: 기획재정부

####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up>2) 「</sup>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 54조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결과 공개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국회가 정책연구용 역 집행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잇다.

2020년에 동 사업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비중은 과제 건수 기준으로 10%(10건중 1건), 금액 기준으로는 14.3%(5억 1,900만원 중 7,400만원)이다. 이처럼 공개 비중이 낮을 경우 국회의 결산심사시 사업목적 적합성, 타 부처 연구과제와 중복가능성4) 및 연구결과내용의 충실성 등을 심의하기 어려워지므로 국회의결산심사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 사업에서 비공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 내용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명, 연구자까지도 비공개하고 있어결산심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 관련 정책연구용역과 비교할 때, 그 공개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에서는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통일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반면, 통일부에서는 통일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부의 주요 정책연구사업으로 '통일정책 추진', '정책연구개발(R&D)' 사업 등이 있는데, 2020년에 두 정책연구용역의 공개현황을 보면 '통일정책 추진' 사업의

<sup>3)</sup> 구체적으로는 북한경제 관련 연구용역은 내용의 민감성으로 인해 ① 공개시 불필요한 혼란 초래, ②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상대측의 비공개 요구, ③ 현재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개시 국익 침해 및 불필요한 논란 야기 등의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연구를 대외비 이상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비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sup>4)</sup> 가령,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비중은 과제 건수 기준 56.3%(16건 중 9건), 금액 기준으로는 49.2%(4억 4,7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이고,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공개 비중은 과제 건수 기준 62.5%(16건 중 10건), 금액 기준으로는 63.9%(3억 5,500만원 중 2억 2,700만원)로서, 기재부의 '통일기반조성' 사업에 비해 그 공개비율이 높다. 또한 비공개 과제의 경우에도 연구과제의 내용만 비공개할 뿐이고, 과제명과 연구자는 공개하고 있어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기재부의 통일기반조성 사업과 통일부의 연구용역사업 공개 현황 비교]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통일부			
세부사업명	통일기반조성	통일정책 추진	정책연구개발(R&D)		
연구 분야	통일 관련 경제정책	통일 관련	정책 전반		
2020년 집행액	519	447	355		
연구과제 건수	10건	16건	16건		
공개건수	1건	9건	10건		
비공개 과제의 과제명, 연구자 공개여부	비공개	공개	공개		

자료: 기획재정부, 통일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회 결산심의 가능성 확보 및 통일부의 유사 연구용역의 공개범위 등을 고려하여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공개 과제건수를 확대하고, 최소한 연구과제명과 연구자는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통일기반조성 사업 정책연구용역의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집행규모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책연구용역의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 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동 사업의 예산규모를 보면, 2017년 5억 9,000만원에서 2020년 1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 5억 8,300만원, 2018년 5억 8,700만원, 2019년 6억 4,700만원, 2020년 5억 7,600만원 등 매년 6억원 수준이 집행되고 있어 집행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예산 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예산현액(A)	590	661	850	1,000
집행액 <sup>1)</sup> (B)	583	587	647	576
집행률(B/A)	98.8	88.8	76.1	57.6

주: 1) 집행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상황 및 대북정세 변화로 국 제공동연구 등 관련 연구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일부가 불용되었고<sup>5</sup>), 2021년 예산 편성시에는 최근 집행률 및 대북정세 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19% 감액 편성했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년간 지속적 예산확대에도 집행규모가 일정하다는 점에 비추어 동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정책연구용역의 과제의 규모 및 필 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sup>5)</sup> 통일기반조성 사업으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연구용역비에는 남북관계 개선시 북한과의 직접협력 사업을 위한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된 바 있음

<sup>- 2016</sup>년부터 '시장경제지식공유' 사업과 '북한기초통계 및 개발수요 국제공동연구' 사업이 통일기 반조성사업으로 통폐합

#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역할 분담 명확화 필요

#### 가. 현 황

혁신성장활성화<sup>1)</sup> 사업은 혁신성장을 기획하고 혁신성장 옴브즈만을 운영하며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현액 13억 9,200 만원 중 10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2) 사업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한국 판 뉴딜 실무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현액 12억 200만 원 중 1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혁신성장 활성화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qı.	산	전년도	MUUI	이션용	예년현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HON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	이월액	예비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혁신성장 활성화시업	1,385	1,360	32	-	-	1,392	1,084	77.9	-	308
한판님실다원	-	-	-	1,202	±119	1,202	1,140	94.8	-	62

자료: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구체적으로는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는 것3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설치되었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sup>1)</sup> 코드: 일반회계 1331-303

<sup>2)</sup> 코드: 일반회계 1331-304

<sup>3)</sup>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포탈」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출범 배경을 살펴보면, 2018년 5월경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과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18년 6월 '혁신성장본부'가 출범하였다. 2019년 4월에는 '혁신성장본부'를 겸임·지원근무에서 전임근무체계로 전환하고 범부처 합동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84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주요업무4)는 혁신성장 전략수립 및 구체화, 혁신사업 등 혁신성장 유망분야 정책추진 등이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5되어 있는데, 동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기획재정부에 '한국판 뉴딜 실무 지원단'이 설치되었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출범배경을 살펴보면, 2020년 7월경 정부는 「한국 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뒷받침을 위해 2020년 8월경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을 신설하였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22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주요업무는이 한국판 뉴딜 관련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기획재정부에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혁신성장 전략수립 및 구체화
- 2. 혁신사업 등 혁신성장 유망분야 정책추진, 정책 이행상황 및 현장 점검
- 3.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투자 분야 선정 및 투자 종합계획 마련
- 4. 민간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세제지원
- 5. 혁신성장 관련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 이해관계자 협의 및 개선방안의 수립
- 6. 기업 등의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및 애로 해소방안의 제시
- 7. 혁신성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업
- 8. 혁신성장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분석
- 9. 혁신성장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각종 현장행사 등 기획 및 실행
- 10. 그 밖에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 7.
- 6)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sup>4) 「</sup>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종합적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지원, 혁신사업 등 혁신성장 유망분야 정책추진, 정책 이행상황 및 현장 점검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에 동 조직의 운영을 위해예비비 12억 200만원을 배정받았다.

#### 나. 분석의견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의 정책대상 산업분야가 일부 중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령상 각 정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업무의 내용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 등의 2가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무행정조직 운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의 주요산업 분야로서 8대 선도 프로젝트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8년 8월에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을 통해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드론, 바이오헬스 등의 8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및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에 따라 D.N.A(Data, Network(5G), AI)+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도 혁신성장 대상분야로 포함하였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댐·5G·인공지능(AI)·자율주행·스마트시티,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녹색산단, 안전망강화 분야에서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및 미래적응형 인재양성 강화 등이다.

① 기획재정부에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up>1.</sup> 한국판 뉴딜 관련 종합적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지원

<sup>2.</sup>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과 다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지원

<sup>3.</sup> 한국판 뉴딜 관련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및 성과 점검

<sup>4.</sup>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sup>5.</sup>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 등의 지원

<sup>6.</sup> 한국판 뉴딜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업 지원

<sup>7.</sup> 한국판 뉴딜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분석

<sup>8.</sup> 한국판 뉴딜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

<sup>9.</sup> 그 밖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두 개의 정책대상을 비교해 보면, 데이터, 5G, 인공지능(AI), 스마트 시티, 신재생에너지, 미래자동차(수소차·전기차) 등 주요한 정책대상 산업 분야가 중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성장 정책 및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대상 산업 분야]

구분     혁신성장     한국판 뉴딜       ○8대 선도 분야     ○디지털 뉴딜	
○8대 선도 분야 ○디지털 뉴딜	
- <u>미래자동차: 전기차, 수소차</u> - <u>에너지신산업</u> - 스마트시티 - 스마트공장 - 프테크 정책 - 드론 대상 분야 - <u>Data, 5G, 인공지능(AI)</u> ○BIG3 분야 - 미래차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비이오헬스 - 비이오헬스 - 마래차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비이오헬스 - 비이오헬스 - 비이오헬스 - 비이오헬스 - 나이오헬스	트 간 녹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한편, 각각의 정책이행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근거규정에 따라 두 조직의 업무내용을 비교하면, 각각 혁신성장과 한국 판 뉴딜에 대한 전략수립, 성과점검, 예산·세제지원, 협업지원, 홍보 등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주요 업무유형 비교]

구 분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전략수립	<ul><li>○혁신성장 전략수립 및 구체화</li><li>○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국</li><li>가 전략투자 분야 선정 및 투자 종합계획 마련</li></ul>	○한국판 뉴딜 관련 종합적 추진 전략 수립 및 시행 지원
성과점검	○혁신사업 등 혁신성장 유망분야 정책추진, 정책 이행상황 및 현 장 점검	○한국판 뉴딜 관련 부처별 실행 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및 성과 점검
예산 · 세제지원	○민간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혁 신성장 예산·세제지원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 등의 지원
협업지원	○혁신성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민간 기관· 단체와의 협업	○한국판 뉴딜 관련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업 지원
홍보 등	○ 혁신성장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각종 현장행사 등 기획 및 실행	○한국판 뉴딜 관련 공감대 형성 을 위한 홍보 등

자료: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한국판 뉴딜 실무지 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이처럼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은 주요 정책대상인 산업분야가 중복되고 정책지원 수단 및 정책분야에 대한 업무유형도 유사하므로, 실질적인 업무의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및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에 대한 행안부의 조직 검토결과에 따라 2차례('20.8월, '21.3월)에 걸쳐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였고,") 그 결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등을 전담하고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은 D.N.A 등 디지털 뉴딜,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전담하도록 개편하여 업무상 중복은 없다는 입장이다.8)

<sup>7)</sup> 혁신성장추진기획단에서 DNA(데이터, 5G, AI)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플랫폼경제탐'과 에너지신산 업, 스마트시티 등을 담당하던 '혁신산업탐'을 폐지하고 정원도 축소

<sup>8)</sup> 또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설치근거 훈령에 따라 2022년 4월 30일자로 조직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이라는 두 가지 정책의 지원 산업분야가 상당부분 동일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도 유사한 경우에 지원산업 분야를 두 개로 분리해서 각각 별도의 실무행정조직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대상인 각 산업분야별 전략수립, 성과비교, 효과적인 예산·세제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해서는 단일한 실무행정조직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수차례》 혁신성 장전략 점검과 한국판 뉴딜 점검을 하나의 회의로 개최하고 있고, 각 회의 의제에 서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 분야의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 정책을 지원하는 실무행정조직 운용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 및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현황]

하이며 하이 이게				
회의명	회의 의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21.5.28)	① 전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추진현황 ② 금융 지원방안 추진현황 ③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④ 철근·철강 수급동향 점검 ⑤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 보공유사항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21.5.21)	① 원자재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② 수출입물류 지원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 ③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21.5.14)	①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② 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효율화 방안 ③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현황 및 계획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 보공유사항			

주: 2021년도에 개최된 19차례의 정책점검회의 중 최근 3차례의 회의를 표시(21.5.31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9)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와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개최 현황(2021년 5월 31일 기준)

회의 내용	연도	횟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2021	19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2020	7회

# 대규모 정보화시스템 구축시 예산편성 전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의무화 필요

#### 가. 현 황

복권기금의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구축지원1) 사업은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보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의료·정보시스 템을 최신 정보기술 적용이 가능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 는 것이다.

동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사업2)의 내역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에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구축지원 사업의 예산현액 20억 8,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 [2020회계연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전년도	계획	지출액	다음연도	불용액	집행률
十世	당초	수정	이월액	현액(A)	(B)	이월액		(B/A)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지원	53,845	53,845	-	53,845	53,845	0	0	100.0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구축	3,709	2,081	-	2,081	2,081	0	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구축 사업은 4가지 하위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통합 요양정보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구축, 정보연계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sup>1)</sup> 코드: 복권기금 6440-311

<sup>2)</sup> 보조금 사업임

[2020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 내용]

구분	내 용
병원정보시스템	○EMR <sup>1)</sup> 시스템(원무, 진료, 진료지원, 보훈의료 등) 구축(요양 병원 EMR 포함) ○병원 업무 선진화(모바일EMR 등)
요양정보시스템	○요양정보시스템(정서지원, 간호, 기능회복 등) 고도화 및 보훈 원 업무 신규 개발 등
의료·복지 정보 연계 및 공유 플랫폼	○보훈헬스케어 서비스(개인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보훈 의료·복지 데이터의 연계 및 공유 - 빅데이터 분석, 보훈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홈페이지	○본사, 병원 등 공단 홈페이지 구축

주: 1) EMR은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구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추진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에 401억 7,500만원, 통합 요양정보시스템 구축에 16억 2,30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9억 8,100만원, 정보연계 및 공유플랫폼 구축에 15억 9,900만원 등 427억 7,900만원이다.

#### [2020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 연차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 12	키. ㄱㄴ끈)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통합병원 정보시스템	40,175				6,047	22,374,	11,754
통합요양정보 시스템	1,623	506	1,117				
홈페이지	981			981			
공유플랫폼	1,599					1,599	
합 계	44,377	506	1,117	981	6,047	23,973	11,754

주: 1. 총예산 및 연도별 예산은 시스템 구축일정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동 연차별 사업비 계획은 2020년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에 따른 결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과 차이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대규모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사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더하여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까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요구되는 사전절차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과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컨설팅 등이 있다.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조직의 경영목표 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전략, 사업과제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활동임에 반해,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ISMP)은 특정 SW 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구축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정보화전략계획(ISP)과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의 비교]

구 분	정보화 전략계획(ISP)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목적	○경영전략과 정보화 전략연계 및 새로운 정보기술 반영	○특정 정보시스템 기능적·기술 적·비기능적 요구사항 상세화
범위	○전사, 서비스 또는 부서대상 정 보화 전략	○단위 프로젝트 또는 단위 프로 젝트의 묶음
주요활동	○경영환경분석(조직, 유관기관 및 고객 특성 분석 등) ○최근 정보기술 동향 분석 ○업무 분석(조직 내부 활동과 현 행 프로세스 분석) ○정보 시스템 구조 분석 ○정보전략 및 정보관리체계 수립 ○미래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 시 스템 구조 설계 ○To-Be 로드맵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및 방향 수립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적/기술 적(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 성 능, 테스트 등) 요건 도출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상세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예산 산정 및 업체 선정·평가 지원
	<ul> <li>경영환경분석 및 정보기술 동</li> <li>향 분석 보고서</li> <li>업무/정보시스템 분석 보고서</li> <li>IT 비전 및 전략</li> <li>이행 과제 및 로드맵</li> </ul>	○ RFP(제안요청서) ○ 정보시스템 예산

자료: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방법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9

현행「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시 원칙적으로 예산요구에 앞서 정보화전략계획(ISP)만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시스템의 경우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까지 수립해야 동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업무·기능·기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정확한 투입비용 산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2020년 동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20.3)가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일부인 요양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전체 시스템 구축 비용이 4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이므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sup>4</sup>) 컨설팅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당초 2020년도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은 37억 9,000만원이었으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추진에 따른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16억 2,800만원이 감액조 정되었고, 실집행실적은 계획현액 20억 8,100억원 중 11억 2,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다.

#### [2020년 차세대 의무기록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획액 및 실집행액]

(단위: 백만원)

				(1	-11. 144)
		계획	실집행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집행	다음년도 이월
차세대 의무기록시스템 구축	3,709	2,081	△1,628	956	1,125

자료: 기획재정부

<sup>3)</sup> 최근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대규모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시에는 ISMP를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했다

<sup>4)</sup> 특정 SW 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분석과 제안 요청서를 마련하기 위해 비즈니스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 기능적/기술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며, 구축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수립

이처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만을 수립한 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가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는「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정보화 사업예산 편성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전 '차세대 전자의무기록 구축'의 총사업비는 472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거친 후에는 총사업비 규모가 428억원으로 수정되어 예산규모가 48억원 축소되는 등 소요예산 규모의 정확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의 효용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각 공공기관의 정보화추진심의위원 회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요구<sup>5)</sup>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21일 행정규칙인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558호)」을 개정하여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후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ISMP)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별도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정보시스템마스터 플랜(ISMP) 수립 의무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6

그러나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정보화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 상7)인 사업인데, 앞에서 검토한 '차세대 의무기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가

제33조의2(정보화 사업)

<sup>5) •</sup> 사회보장정보원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1,970억원 규모)

<sup>。</sup> 주택금융공사의 '신기술 기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119억원 규모, 2단계 349억원 규모)

<sup>6) 「</sup>총사업비관리지침」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구축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스템 구축 이전에 ISMP를 수립해야 하며, ISMP 수립 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ISMP 수립비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427억 7,900만원으로 500억원 미만이므로 동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총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도 시스템 구축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up>7) 「</sup>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sup>1.</sup>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 국세청

# 1

#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716억 3,200만원이며, 5조 7,153억 9,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5.7%인 8,998억 1,600만원을 수납하고 4조 2,902억 6,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5,253억 1,4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 [2020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불납	수납률
十世	본예산	추경	에인연기	(A)	(B)		결손액	(B/A)
일반회계	871,632	871,632	871,632	5,715,397	899,816	4,290,267	525,314	15.7

자료: 국세청

2020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7,898억 1,100만원이며, 이 중 97.2%인 1조 7,396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501억 3,8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 [2020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	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B/A)
일반회계	1,837,356	1,789,192	1,789,811	1,739,673	1	50,138	97.2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 나. 재무 결산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국세청의 자산은 25조 8,693억 9,200만원, 부채는 21조 3,685억 7,700만원으로 순자산은 4조 5,008억 1,5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3조 7,126억 3,800만원(16.8%) 증가하였는데 유동자산 2조 8,491억 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6,176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미수국 세 3조 462억 1,7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증가 및 장기미수국세 6,168억 8,100만원 증가에 따른 기타비유동자산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3조 6,416억 9,700만원(20.5%) 증가하였는데 유동부채 3조 8,842억 700만원, 장기충당부채 △2,357억 6,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미지급국세 2조 6,918억 9,500만원 증가, 기타 선수수익 1조 1,996억 9,5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증가, 소송충당부채 2,357억 6,000만원 감소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감소에 기인한다.

#### [2020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л н	2020	2019	전년도 대비 증감		
구 분	회계연도	회계연도	급	비 율	
자 산	25,869,392	22,156,754	3,712,638	16.8	
Ⅰ. 유동자산	19,613,466	16,764,358	2,849,108	17.0	
Ⅱ. 일반유형자산	2,792,875	2,552,240	240,635	9.4	
Ⅲ. 무형자산	77,373	72,135	5,238	7.3	
Ⅳ. 기타비유동자산	3,385,678	2,768,021	617,657	22.3	
부 채	21,368,577	17,726,880	3,641,697	20.5	
1. 유동부채	20,123,962	16,239,755	3,884,207	23.9	
Ⅱ. 장기차입부채	48,929	55,679	△ <b>6,</b> 750	△12.1	
Ⅲ. 장기충당부채	1,195,686	1,431,446	△235,760	△16.5	
순 자 산	4,500,815	4,429,874	70,941	1.6	
I. 기본순자산	1,843,247	1,843,247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570,158	1,709,705	△139 <b>,</b> 547	△8.2	
Ⅲ. 순자산 조정	1,087,409	876,921	210,488	24.0	

국세청은 2020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6,199억 8,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174억 4,1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7,331억 3,900만원, 비배분비용 7,012억 5,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1억 4,600만원, 비배분수익 307억 5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 년도 대비 699억 5,700만원(2.7%) 증가한 2조 6,199억 8,2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331억 6,100만원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605억 2,100만원 증가와 대손상각비 504 억 800만원 감소에 따른 비배분비용 481억 1,600만원 감소 및 자산처분이익 896억 2,200만원 감소에 따른 비배분수익 855억 3,2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탈세대응강화(1,206억 3,100만원), 체납·징수관리 프로그램(517억 2,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2,406억 8,700만원과 복리후생비 2,270억 8,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6,978억 8,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0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л н	2020	2019	전년도 대비 증감		
구 분 	회계연도 회계연도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16,295	244,275	△27 <b>,</b> 980	△11.5	
가. 프로그램 총원가	217,441	245,097	△27,656	△11.3	
나. 프로그램 수익	1,146	822	324	39.4	
॥. 관리운영비	1,733,139	1,672,618	60,521	3.6	
Ⅲ. 비배분비용	701,253	749,369	△48,116	△6.4	
IV. 비배분수익	30,705	116,237	△85,532	△73.6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2,619,982	2,550,025	69,957	2.7	
VI.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V-VI)	2,619,982	2,550,025	69,957	2.7	

국세청의 2020년도 기초순자산은 4조 4,298억 7,4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조 5,008억 1,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09억 4,100만원(1.6%) 증가하였다. 이는 회계 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699억 5,700만원,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2,884억 6,3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이전은 기초 대비 973억 9,8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0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3조 3,813억 4,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9,009억 1,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 재평가이익 2,104억 8,8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 [2020회계연도 국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E11. 12.3, 7.6)					
7 8	2020 2019		전년도 대비 증감			
구 분	회계연도	회계연도	금액	비율		
1. 기초순자산	4,429,874	4,480,041	△50,167	△1.1		
Ⅱ. 재정운영결과	2,619,982	2,550,025	69,957	2.7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480,435	2,577,833	△97,398	△3.8		
Ⅳ. 조정항목	210,488	△77,975	288,463	△369.9		
V. 기말순자산(I-II+III+IV)	4,500,815	4,429,874	70,941	1.6		

국세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 비주 거용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② 인건비가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적 운영임을 감안하여 5억원 감액(24억원→19억원)되었고, 인건비 예산은 공무원 증원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10% 정도 줄어듦에 따라 5억원(1조 2,804억원→1조 2,799억원)이 감액되었다.

국세청 소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으로 체납국세에 대한 징수강화 대책과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국세청에 요구하였다.

국세청은 ① 성실신고기간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 ②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③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와 선진납세문화조성, ④ 공정·효율적 세정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 ⑤ 책임운영을 통해 편하고 전문적인 국세상담 서비스제공 등을 2020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0년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국세청은 국외위탁교육 사업이역외정보전문인력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우편을 이용하는 성실신고안내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등은 모바일 발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미상환(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 세청은 상환률 제고를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1

## 역외탈세 대응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관리 필요

#### 가. 현 황

역외탈세대응활동1) 사업은 세수기반 잠식을 야기하는 역외탈세에 대응함으로써 역외탈세 심리를 차단하고 국세수입을 확충하려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현액은 64 억 600만원으로 이 중 55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역외탈세대응활동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111. 1	L L, /0)
	ИМШ	예신	<u> 난</u> 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년도	H 0 0H
사업명	본예산	추경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역외탈세대응활동	6,722	6,406	-	6,406	5,572	87.0	0	834

자료: 국세청

#### 나. 분석의견

첫째,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은 불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등 역 외탈세에 대응하여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역외 탈세는 대기업·재산가 등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 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청의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매년 200건 가량의 조사를 실시하여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에도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233건 실시한 결과, 1조 3,896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sup>1)</sup> 코드: 일반회계 2132-300

#### [역외탈세대응활동을 통한 조사건수 및 세금 추징금액]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사건수	156	202	211	226	223	228	233	226	233
추징금액	9,637	8,258	10,789	12,179	12,861	13,072			

자료: 국세청

다만, 최근의 역외탈세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다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등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혜택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등의 비정상적역외탈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8월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국적 등 신분 세탁 및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는 매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실시하는 대상국가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정보 공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 계좌에 대한 정보를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3)에 따라 매년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우리나라도 외국 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정보를 협정 체결국으로 매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실시하는 국가가 2017년 46개국에서 2020년 102개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등 국가간 정보공조는 지속 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sup>2) 2020</sup>년 조사분은 집계중

<sup>3)</sup> 한국과 미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등

#### [금융정보자동교환 현황]

(단위: 개)

연도	대상국가	국가수
2017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만제도 등	46
2018	중국,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등	79
2019	홍콩, 마카오, 마셜제도, 바하마, 바베이도스 등	96
2020	터키, 페루, 몰디브, 도미니카연방 등	102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2020.8.27.

해외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역외탈세와 대기업·재산가의 사익편 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역외탈세혐의자들에게 세무조사 를 지속하고 역외탈세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20년 신규로 편성된 국외위탁교육 사업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육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흡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은 동 사업이 역외정보 전문인력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고도화되는 역외탈세수단에 대응하여 역외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0년 역외탈세대응활동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국외위탁교육 예산 8,400만원을 편성하였다.

#### [국외위탁교육 사업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배 경	• 전문가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 스킴은 날로 고도화
- III 6	⇒ 새로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외정보 전문인력 양성 필요
목 적	• 역외정보 수집·분석 역량개발에 필요한 사례 중심의 국외위탁교육을
<b>=</b> 4	통하여 역외정보 전문가 양성
교육인원 / 기간	• 16명 내외 / 4일
교육예산	• 국외교육여비: 56백만원(항공료 40백만원, 체재비 16백만원)
표적에건	• 일반수용비: 28백만원(IBFD 교육비, 금액 협의 중)
	• 네덜란드 IBFD
교육기관	- 각 국의 조세제도 연구 등 목적의 비영리 단체
	- 국세청 요구 사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가능
	• 내부 공모를 통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대상자 선발
대상자	-역외정보 전문가 과정 이수자 중 성적 우수자
선발기준	-외국어 성적 2급 이상자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및 역외탈세조사 업무 경력자
	-국제조사전문요원 및 국제거래전문보직자 등

자료: 국세청

하지만 해외 역외정보 수집·분석사례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네덜란드 IBFD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플랫폼을 활용하여 2020년 11월 2일 ~5일간 역외조세회피에 대한 조사전략(Compliance Strategy for Offshore tax avoidence and evasion)이라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온라인 재택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인해 사업 편성 시 기대되었던 역외탈세정보수집 현장실습 및 선진 탈세 조사 경험자인 강의자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정보라인 형성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 중 해외 역외정보 수집·분석사례 교육 집행결과]

구분	대상기관 (대상국가)	교육과정	인원	집행액
일반수용비 (국외위탁교육)	IBFD (네덜란드)	해외 역외정보 수집·분석사례	20명	34백만원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대면교육 지향 및 교육기관 사전협의 강화 등을 통해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역외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1)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형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 예산현액은 19억 3,900만원으로 이 중 19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HAR	예산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 토	ном
사업명	본예산	추경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1,939	1,939	-	1,939	1,938	99.9	0	1

자료: 국세청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시가(時價)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2)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한다.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활용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이 직접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매년 별도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고, ② 그 외의 고시되지 않은 건물들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계산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고 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3)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sup>1)</sup> 코드: 일반회계 1133-303

<sup>2)「</sup>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기준]

¬ н	0151	예외(보충적 평가방법)				
구 분	원칙		과세기준가격	가격산정주무기관		
E 7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된		국토교통부장관
토지 			개별공시지가	지방자치단체장		
	시가(時價)	공동 (時價)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표준주택가격	当上世帯下る社		
		단독 개별		지방자치단체장		
오피스텔 및		대형 개별기준시가		,1] →]		
상업용 건물		소형	기준시가 계산방법	국세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상속세 및 중여세 과세를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 가격공시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 등에 시간을 소요하며 해당 업무가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가격공시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주변의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가를 찾기 용이한 주택에 비해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확인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시세를 반영하여 매년 개별 고시되는 대형 오피스텔·수도권 건물과 달리 개별 고시되지 않는 비주거용 소형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저평가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2019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에 근접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⁴) 기존에 평가기간5) 이내(☒),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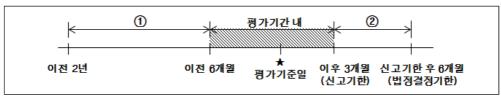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

<sup>3)</sup> 기준시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sup>4) 「</sup>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이(①)에 더하여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가(②)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증여의 시가인정 가능기간]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개정 시행령 취지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고가의 비주 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가치에 가까운 금액 을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비주거 용 부동산의 시가가 현실화 되면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되는 아파트 등 다른 재산과 의 과세형평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국세청은 모든 고액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 증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sup>5)</sup> 상속: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 증여: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sup>6)</sup> 매매사례가액: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

<sup>7) (</sup>상속)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부터 9개월 (증여)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터 6개월

#### [2020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집행결과]

(단위: 건, 백만원)

건물가액	건수	감정평가 수수료 (A)	부가가치세 (B)	감정평가 비용 (C=A+B)	감정평가 횟수 (D)	집행액 (E=C×D)
100억원 이상	49	564	56	620		1,240
50~100억원	64	312	31	343	2	686
합계	113	876	87	963		1,926

주: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2. 감정평가수수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수수료(13백만원) 미포함 자료: 국세청

상속·증여 건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은 시가에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과세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행정비용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형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축건물가액을 기준으로 각종 지수를 곱해 계산하는 원가법에 따른 계산방식(단일 기준가액, 단일 비표준 방식)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산에 비례하여 일부 상속·증여 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엄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산정체계가 분산되어 과표의 정확성·형평성이 떨어지고 각 기준시가 계산방법의 시가반영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1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근거가 마련되었다.8)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국세청은 동 제도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에 원활히 이관될 수 있도록 기관간 사전협의를 충분히 할 것을 제시한 바였다.9) 2018년 7월 국토교통부는 평가모델 개발 연구용역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업무가 국세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동 제도의 업무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대형 집단상가 등 기

<sup>8) 「</sup>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0조~제23조

<sup>9) 2017</sup>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국세청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업무 가 국토교통부에 원활히 이관될 수 있도록 기관간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이관 완료 이후에는 국세청장이 해당 업무를 잠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상 근거조문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준시가 산정사업은 중단하고, 차질 없이 국토교통부로 관련사업을 즉시 이관하겠다고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국토교통부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여전히 내부 검토 중이며, 국세청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시행을 확정하면 이를 통해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 주택,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과세기준가격을 일원화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일원화된 과세기준가격 공시를 바탕으로 국세청·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는 국세·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1)은 납세의무 이행의 필수적 절차인 납세고지서, 독촉 장 등의 송달을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현액 467억 4,200만원 중 466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200만원을 불용하였다.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 사업2)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안내문과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현액 116억 6,000만원 중 116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납세고지서 등 발송 및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본예산	<u>·</u> - 학 구경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납세고지서 등 발송	46,742			46,742	` ′	, ,		82
근로 · 자녀장려세제운영	11,660	11,660	0	11,660	11,648	99.9	0	12

자료: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2019.6.26.) 과제 를 선정하였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로 행정·공공기관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³)

- 1) 코드: 일반회계 2233-300
- 2) 코드: 일반회계 3135-300
- 3)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 1. 개념: 온라인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
  - 2. 주요요소: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송수신 및 열람내역을 유통증명서로 입증

요소	설명	법적근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ul> <li>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을 중계하는 자</li> <li>PC 중계자(3): 아이앤텍, 포스토피아, 더존비즈온 모바일 중계자(2): 카카오페이, KT</li> </ul>	「전자문서법」 제31조의18
유통증명서	·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확인서	「전자문서법」 제18조의5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를 이용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에 2020년에 성실신고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등을 모바일로 발송하였다. 등기우편은 기존과 동일한 중이우편 방식으로 발송되었다.

[2020년 국세청 납세고지서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안내문 발송 현황]

(단위: %)

	구분	종이우편	모바일발송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종류		
나비그기니바소	납세고지서	등기	100.0	0.0
│ 납세고지서발송 │	성실신고안내 등	일반	57.2 (30.0)	42.8 (70.0)
	지급명세서 안내	일반	73.3 (30.0)	26.7 (70.0)
그는 기나 자녀시시기	신청안내	일반	69.5 (30.0)	30.5 (70.0)
근로·자녀장려세제 	결정통지(계좌이체)	일반	100.0	0.0
	결정통지(현금수령)	등기	100.0	0.0

주: 괄호 안 수치는 계획치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일반우편을 이용하는 성실신고안내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등은 모바일 발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up>4)</sup>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선정 현황

구분	기관명	과제명
국가 기관	국세청	• 국세 안내문의 모바일 발송 서비스 구축
지방	서 <del>울특</del> 별시청	• 스마트 고지 기반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서비스 구축
자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부평구 통합 전자고지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
단체	충청북도 진천군청	• 진천 스마트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777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공공   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기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의 연도별 우편물 발송은 2016년 56백만건에서 2020년 74백만건으로 크 게 증가되고 있다. 이 중 모바일로 송부되는 일반우편도 2020년 24백만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되었다.

[연도별 우편물 발송현황]

(단위: 천건)

연도	합계	등기우편	일반우편		
연포	[ 업계	중기구원 	서면	모바일	
2016	56,319	16,511	39,808	-	
2017	54,742	17,482	37,260	-	
2018	58,071	18,266	39,805	-	
2019	65,921	19,080	41,208	5,633	
2020	74,775	16,461	34,414	23,900	

주: 전자고지 건수 제외

자료: 국세청

2020년 우편물 발송단가는 등기우편은 2,480원, 규격 외 일반우편은 590원, 규격 내 일반우편은 380원이다.

[연도별 우편요금 단가]

(단위: 원)

구분	등기우편	일반우편(규격내)	일반우편(규격외)
2012.10.	1,900	270	480
2013.08.	1,930	300	510
2017.04.	1,960	330	540
2018.08.	2,130	330	540
2019.05.	2,180	380	590
2020.07.	2,480	380	590

자료: 국세청

이에 반해 2020년 모바일 발송단가는 카카오페이 110원(열람기준), KT 165원 (발송기준)으로 일반우편 비용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모바일 발송단가(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구분	단가
전문(MMS)	165
장문(LMS) 플랫폼 URL 포함	151
단문(SMS) 플랫폼 URL 포함	131
장문(LMS)	77
단문(SMS)	61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0년 일반우편 발송 대신 모바일로 발송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에서 약 41억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등에서 약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20년도 모바일 고지로 인한 예산절감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모바일	일발송	일반우편 발송 시	절감액	
사업명	건수 금액 (A)		예상금액 (B)	В-A)	
납세고지서 발송	17,223	1,927	6,021	4,094	
근로·자녀 장려세제 운영	2,450	353	884	531	

자료: 국세청

다만, 2020년 일반발송의 모바일 발송계획은 모두 70%였으나 납세고지서 발송사업 중 성실신고안내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42.8%가 모바일로 발송되었으며, 근로·자녀장려세제 중 지급명세서 안내는 26.7%, 신청안내는 30.5%가 모바일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발송단가가 KT(이동통신 3사 대표), 카카오페이 등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별로 계약함에 따라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통계청의 모바일 통지 계약 단가는 다음과 같다.

[2020년 통계청의 모바일통지 계약(부가가치세 별도)]

			월 발송량별	기본 요금		
구분		1백만건 이하	1백만건 ~ 2백만건	2백만건 ~ 4백만건	4백만건 초과	비고
키크 바소	MMS 표지 발송료 (전체고객)	85원	75원	75원	75원	
최초 발송 시 요금	유통증명서 비스료 (문자수신 동의고객)	100원	100원	90원	80원	전용선, 개발비 등 별도 협의
ē	<b>¦</b> 계	185원	175원	165원	155원	
	의 고객 대상 시 요금	182원	173원	160원	150원	

자료: 통계청

일반적으로 문자나라, 문자라인 등 유료단체문자 발송사이트에서는 전문(MMS) 100원 내외, 장문(LMS) 30원 내외, 단문(SMS) 10원 내외(부가가치세 별도)에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은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일반우편 대신 모바일 발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되, 보다 효율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요금 단가와 관련 된 각 부처간 협력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sup>1)</sup>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대출원리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함으로써 학자금 상환율을 높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유지에 기여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 2억 3,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 [2020회계연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EII: 166, 7								
UOR		예신	<u>·</u> -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년도	П 0 СН
	사업명	본예산	추경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234	234	0	234	234	100.0	0	0

자료: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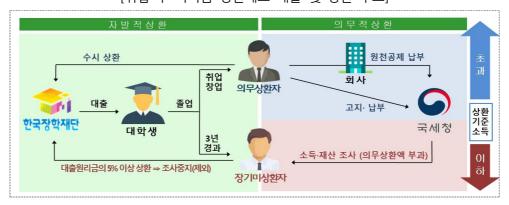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2이다.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며, 한국 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신청 접수 및 대출실행 등 대출 관련 업무와 자발적 상환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발행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체납처분, 장기미 상환자 등 상환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퇴직소득자에 대해서 원천공제 상환을 관리하고, 종합소득자·양도소득자,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고지납부 상환을 관리하고 있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sup>1)</sup> 코드: 일반회계 3136-300

<sup>2)</sup> 근거 법률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10.1.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출 및 상환 구조]



자료: 국세청

#### 나. 분석의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미상환(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은 상환률 제고를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및 상속·증여 재산가액 등 연간 소득금액에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여 20%를 의무상환액으로 계산한다.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3)

<sup>3) 「</sup>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

<sup>「</sup>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연간소득금액 등)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상환기준소득을 고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2020년도 상환기준소득]

(단위: 만원)

귀속연도	총급여액 환산 시 소득금액 기		월 급여 환산 시	비고	
2020	2,174	1,323	181	매년 1월 고시	

주: 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연간 의무상환액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고용주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며, 퇴직자의 경우 직접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종합소득자 등의 경우 의무상환액을 고지한다.

2020년 현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누적인원 155만명에게 13조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하였고, 이 중 6.6조원이 상환되었으며 101만명 6.4조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수시로 상환하는 자발적상환액은 5.5조원규모가 상환되었고, 국세청이 담당하는 의무상환액은 1조 1,053억원이 상환되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체납(미상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0년 3만6천명 427억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 상환액을 부과하는데 실직하거나 폐업하는 등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연도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상환대상·상환실적·미상환(체납) 현황] (단위: 천명, 억원)

аг	상환대	대상 <sup>1)</sup>	상환	실적	미상환(체납) <sup>2)</sup>		
연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7	164	1,794	151	1,649	13	145	
2018	185	2,129	168	1,923	17	206	
2019	225	2,611	198	2,289	27	322	
2020	259	3,095	223	2,668	36	427	
누계 ('11~'20)	-	11,480	-	11,053	-	427	

주: 1) 의무상환액 통지자(근로소득) 및 고지자(종합소득 등)

2) 전년 미상환(체납)은 다음 해 상환대상으로 이월

자료: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의 대출은 체납이 늘어나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대신하여 채권지급을 대납해야 하는 국가보증채무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증채무는 26.4조원(15년)에서 14.8조원(19년)으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장학재단채권이 국가보증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9%에서 73.6%로 증가하였다.

[2015~2019년 국고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가보증채무	26.4	24.2	21.1	17.0	14.8
예보채상환기금채권	14.7	12.6	9.7	5.9	3.9
한국장학재단채권	11.6	11.7	11.4	11.2	10.9
(전체 국가보증채무 대비 %)	(43.9)	(48.3)	(54.0)	(65.9)	(73.6)
수리자금	0.04	0.03	0.02	0.01	-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0.

「20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신규 학자금 대출과 대출회수 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2023년 이후에는 채권발행을 1.1조원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의 대출이 체납되지 않고 상환되어 다음 대학생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2024년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 전망 및 근거]

(단위 :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ㅇ 취업 후 학자금 대출	0.9	1.1	0.9	0.9	0.9
지출	ㅇ 일반 학자금 대출	0.9	$0.9^{1)}$	0.9	0.9	0.9
기골	ㅇ 채권원금 상환(A)	1.6	1.5	1.7	1.2	1.2
	소 계(d)	3.4	3.5	3.6	3.1	3.0
수입	ㅇ 대출회수액	2.0	2.0	2.0	1.9	1.9
구합	소 계(e)	2.0	2.0	2.0	1.9	1.9
	채권 발행(B=d-e)	1.4	1.5	1.7	1.1	1.1
전년도말 보증잔액(C)		10.9	10.7	10.7	10.6	10.6
	기말 보증잔액(C+B-A)	10.7	10.7	10.6	10.6	10.5

주: 1) 2021년 저금리전환대출 0.03조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0.

따라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 하에서 실직 또는 폐업 후 2년간 상환유예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국세청은 소득발생 여부, 재산보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납부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모니터링하는 등 상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 코로나19를 고려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가. 현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sup>1)</sup>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운영을 위하여 대리납부자인 신용카드사에 필요 경비 및 제도 홍보, 대상사업자 안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현액 20억 1,100만원 중 15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HOR	예신	·上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년도	H C CH
사업명	본예산	추경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부가가치세	2,011	2.011	0	2.011	1,509	75.0	0	502
대리납부제도 운영	2,011	2,011	0	2,011	1,309	75.0	U	502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2에 따라 부가가치세

- 1) 코드: 일반회계 1134-300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거래 발생 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다.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국세청은 자체 가맹점망을 보유한 8개 신용카드사를 대리납부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6항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필요경비는 카드사의 대리납부제도 운영에 소요된 개발비·구축비·인건비 등이며, 국세청은 이를 검증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홍보 리플렛 및 안내문 제작 등도 동 사업에서 일반수용비로 집행되고 있다. 동 사업은 유흥주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결재금액의 4/110(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의 4%)를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에 대리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산된다.

③ 특례사업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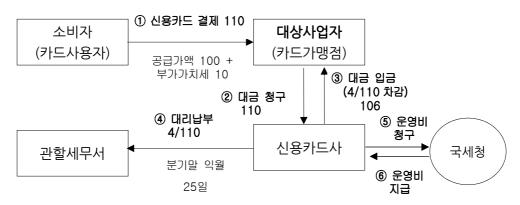
④ 특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부가가치세법」및「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제60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에 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사업자 지정 통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과정]



자료: 국세청

#### 나. 분석의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2019년부터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2020 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할 수 있는 정밀한 성과지표를 개발한 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목적은 체납률이 높은 특정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동 사업은 2019~2021년까지 3년간 한시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동안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향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업종 확대 검토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보인다.

2020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사업성과는 2019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유흥주점업종의 카드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1조 4,954억이 감소한 2조 4,534억원이며, 거래건수는 전년에 비해 12,936천건이 감소한 18,858천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 대리납부 세액은 2019년(1,434억원)에 비해 543억원 감소한 891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이 콜라텍, 노래방 등과 함께 고위험 시설로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카드매출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수, 카드매출액, 거리건수, 대리납부세액] (단위: 명, 억원, 천건)

구분	2019	2020	2021.3
대상 사업자 <sup>1)</sup>	35,023	34,209	33,964
카드매출액	39,488	24,534	
거래건수	31,794	18,858	
대리납부 세액	1,434	891	79

주: 1) 사업자 수는 연도말 기준임 자료: 국세청

하지만 2019년 대리납부세액 1,434억은 2018년 유흥주점·단란주점업의 신고·납부세액 1,067억원에 비해 367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2019년 유흥주점·단란주점의 체납발생액은 2018년 체납발생액(501억원) 대비 402억원이 감소한 99억원이라는점 등을 살펴볼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시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

한편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용카드사의 대리납부세액'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국세청은 2019년 동 지표를 2016년 기준 대상사업자의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세액 중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70%로 산출하였다. 2020년 목표치 산출근거는 2016년~2018년 기준 대상사업자의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세액 평균치 중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노력지수(110%)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의해 대상사업자의 영업실적 변동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집행결과는 보여줄 수 있지만 동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체납률 인하 등의 효과를 보여주기에는한계가 있는 성과지표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 성과지표]

	4121212		EL 01	실	적 및 ·	목표치	
단위사업	성과지표	산출 근거	단위	구분	'19	'20	'21
		2016년~2018년 기준 대상사		목표	854	1,273	1,284
부가가치세 대리 신용카드사의 납부제도 운영 대리납부세액	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실적	1,434	891	-	
	세액 평균치 중 신용카드 사	억원					
	내리답무세액 	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성도	167.9	70.0	
		노력지수(110%) 반영					

자료: 국세청

따라서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코로나19가 유흥주점업에 미친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국세청은 매출액 대비 체납 발생액 등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연장 운영 등을 검토하는 데 반 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관세청

## 1

###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38억 2,300만원이며, 5,380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7.5%인 939억 2,400만원을 수납하고 4,408억 8,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1억 8,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 [2020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1	<u> 171. 71</u>	그 근, /0)
그ㅂ	예		예산현액	징수	수납액	미스나애	불납	수납률
구분	본예산	추경	에산연액	결정액(A)	(B)	미수납액	결손액	(B/A)
일반회계	143,823	143,823	143,823	538,001	93,924	440,888	3,189	17.5

자료: 관세청

2020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716억 900만원이며, 이 중 94.7%인 5,411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1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 [2020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7.11	예산		예산	지출액	다음연도	H O 01	집행률
구분	본예산	추경	현액(A)	(B)	이월액	불용액	(B/A)
일반회계	581,194	571,085	571,609	541,179	1,317	29,114	94.7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 나. 재무 결산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관세청의 자산은 3조 7,867억 3,400만원, 부채는 2조 6,341억 5,5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1,525억 7,9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조 5,419억 3,300만원, 일반유형자산 1조 1,994억 8,900만원, 무형자산 365억 9,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103억 3,100만원(15.3%)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3,182억원 증가, 일반유형자산의 토지가격 재평가로 인한 1,830억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조 5,440억 1,700만원, 장기충당부채 549억 3,100만원, 장기차 입부채 352억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898억 5,400만원(12.4%)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유동부채가 3,120억원 증가하였고 장기충당부채가 374억원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한다.

#### [2020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 기단단, /0)
구 분	2020	2019	전년도 대비	기 승감
구 분 	회계연도	회계연도	금 액	비 율
자 산	3,786,734	3,285,404	501,330	15.3
Ⅰ. 유동자산	2,541,933	2,223,705	318,228	14.3
Ⅱ. 투자자산	202	95	107	112.2
Ⅲ. 일반유형자산	1,199,489	1,009,588	189,901	18.8
Ⅳ. 무형자산	36,594	43,821	△7,226	△16.5
V. 기타비유동자산	8,516	8,195	321	3.9
부 채	2,634,155	2,344,301	289,854	12.4
1. 유동부채	2,544,017	2,228,369	315,648	14.2
Ⅱ. 장기차입부채	35,207	23,609	11,598	49.1
Ⅲ. 장기충당부채	54,931	92,323	△37,392	△40.5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1,152,579	941,103	211,477	22.5
I. 기본순자산	691,124	691,124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b>42,</b> 738	△62,543	19,805	△31.7
Ⅲ. 순자산 조정	504,193	312,522	191,671	61.3

관세청은 2020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327억 6,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718억 4,200만원, 관리운영비 4,691억 800만원, 비배분비용 193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275억 4,100만원이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212억 3,400만원(29.5%) 증가한 5,327억원 6,600만원이며, 이는 재화및용역수익, 기타수익 감소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746억 8,300만원 감소, 밀수감시단속, 수출입통관 등 프로그램의 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279억 3,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정보화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824억 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113억 2,000만원과 경비 1,577억 8,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92억 6,400만원과 감가상각비 1억 9,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0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л н	2020	2019	전년도 대비	l 증감
구 분	회계연도	회계연도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71,842	143,911	27,931	19.4
가. 프로그램 총원가	171,842	143,911	27,931	19.4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Ⅱ. 관리운영비	469,108	459,271	9,837	2.1
Ⅲ. 비배분비용	19,357	10,574	8,783	83.1
Ⅳ. 비배분수익	127,541	202,224	△74,683	△36.9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532,766	411,532	121,234	29.5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V-VI)	532,766	411,532	121,234	29.5

관세청의 2020년도 기초순자산은 9,411억 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1,525억 7,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114억 7,600만원(2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정항목 1,914억 6,4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590억 1,5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2020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6,465억 300만원과 국고이전 지출 등 재원의 이전 939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916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회계연도 관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7 4	2020	2019	전년도 대	비 증감
구 분	회계연도	회계연도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941,103	858,872	82,231	9.6
Ⅱ. 재정운영결과	532,766	411,532	121,234	29.5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52,571	493,556	59,015	12.0
Ⅳ. 조정항목	191,671	207	191,464	92,494.7
V. 기말순자산(I-II+III+IV)	1,152,579	941,103	211,476	22.5

##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

관세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와 수출입** 화물 검사지원 등이 있다.

인건비는 공무원 증원 조정으로 2억 6,100만원이 감액(3,172억원→3,169억원)되었고,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비용은 중견기업 지원분을 감안하여 7억 5,400만원이 감액(100억원→93억원)되었다.

관세청은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②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③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행정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 ④ 대외거래질서 확립으로 공정한 무역 생태계 실현, ⑤ 관세행정 지능화로 SMART CUSTOMS 구현, ⑥ 실용적 관세외교 전개로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 ⑦ 새로운 미래 50년을 대비하기 위한 성장동력 마련 등을 2020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0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은 마약의 국내 반입이 억제될수 있도록 감시·단속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탐지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세청은 감시정 축소에 따른 감시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드론 등 신규 도입 장비로 관세국경 감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세청은 AEO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각종 지원 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약 밀수 적발 증가에 따른 감시 단속 강화 필요

#### 가. 현 황

관세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수입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수·관세포탈·부정수입 등과 관련된 관세사범, 위조상품 등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원산지 위반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과 관련된 대외무역사범, 불법수출입 및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사범, 마약 밀수와 관련된 마약사범,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사범 등을 공항·항만의 세관 등에서 조사·감시·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관세청의 범죄 단속건수는 총 2,196건, 단속금액은 2조 2,711억원이다. 관세청의 범죄 단속건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 감소 등에 따라 관세사범·외환사범 등에 대한 단속건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과 보건사범의 단속건수는 2019년(각각 661건과 47건)에 비해 2020년 각각 696건과 6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2020년 관세청의 범죄 단속 내역(검거시점 기준)]

(단위: 건, 억원)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185	15,859	2,721	59,036	3,395	43,014	4,087	11,117	1,023	9,265
지재사범	177	3,323	155	1,486	175	5,217	273	6,609	176	2,602
대와무역사범	73	1,852	90	2,175	94	1,483	146	6,538	108	1,369
외환사범	728	41,127	379	40,041	601	30,478	365	34,461	130	7,189
마약사범	382	887	429	880	659	6,792	661	8,733	696	1,592
보건사범	-	-	-	-	26	239	47	316	63	694
계	3,545	63,048	3,774	103,618	4,950	87,223	5,579	67,774	2,196	22,711

주: 식품위생법 등 보건사범은 2017.12월 수사권 확보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밀수단속1)은 총기류 등 대테러물품, 마약류의 밀반입을 방지하고 관세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류사범, 지재권사범, 외환사범 등을 단속함으로써 국가경제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50억 300만원으로 이 중 40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밀수단속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ПОП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브요애
사업명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밀수단속	5,327	5,003	-	_	5,003	4,045	80.9	-	958

자료: 관세청

#### 나. 분석의견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은 마약의 국내 반입이 억제될 수 있도록 감시·단속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탐지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청에서 단속된 마약사범은 2014년 308건에서 2020년 696건으로 증가하였다. 밀수가 적발된 마약의 중량은 2014년 71.7kg에서 2020년 148.4kg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412.1kg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규모이다.

[2014~2020년도 마약사범 단속 및 마약류 적발실적]

(단위: 건, kg)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마약사범	308	325	382	429	659	661	696
마약류적발량(세관)	71.7	91.6	50.0	69.1	362.0	412.1	148.4

<sup>1)</sup> 코드: 일반회계 1331-300

2020년 마약류 밀수단속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87 건 60.8kg, 코카인 7건 0.2kg, 대마류 326건 66.0kg, 기타 340건 21.5kg 등 총 696건이 단속되어 148.4kg의 마약이 적발되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등은 전년에 비해 단속건수나 중량이 감소하였으나 대마는 전년에 비해 단속건수는 15%, 중량은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도 품목별 마약류 밀수단속 현황]

(단위: 건, g)

품목	2018년		201	2019년		2020년		2020년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메트암페타민	110	222,935	108	116,773	87	60,758	△19	△48	
코카인	14	8,195	18	183,002	7	153	△61	△100	
헤로인	2	8	-	-	-	-	-	-	
대마	309	59,910	284	51,145	326	66,038	15	29	
기타	294	70,908	333	61,156	340	21,480	2	△65	
총합계	729	361,956	743	412,076	760	148,429	2	△64	

주: '20년 품목별 적발건수가 760건으로 실제 적발건수 696건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의 적발 건수에 2개 이상의 마약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를 중복 계산하였기 때문임 자료: 관세청

2020년 마약류 밀수단속 현황을 반입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312건 55.6kg, 수출입화물로 적발된 건수는 374건 90.7kg, 기타 10건 2.1kg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객 감소2)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반입적발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점과 수출입화물 중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단속건수 및 중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up>2)</sup> 방한 외국인관광객(19: 17,502,756명 → '20: 2,519,118명), 우리 국민 해외관광객(19: 28,714,247명 → '20: 4,276,006명) <자료: 한국관광공사>

#### [2016~2018년도 반입경로별 마약류 밀수단속 현황]

(단위: 건, g)

바입	경로	2018년		20	2019년		20년	2020년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항공	58	87,223	313	181,589	311	55,195	△1	△70
여행자	해상	3	572	12	4,112	1	396	△92	△90
	소계	61	87,795	325	185,701	312	55,591	△4	△70
	일반화물	9	157,400	2	63,894	3	2,182	50	△97
수출입	특송화물	176	75,066	38	28,521	79	50,295	108	76
화 물	국제우편	407	36,913	292	33,133	292	38,217	0	15
	소계	592	269,379	332	125,548	374	90,694	13	△28
기 타	선원·불상	6	4,783	4	100,827	10	2,143	150	△98
총합	합계	659	361,956	661	412,076	696	148,429	5	△64

자료: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 증가는 해외 마약조직의 한국을 경유한 마약 운송 증가, 북미 등 대마합법화 지역 증가에 따른 여행자의 마약밀반입 증가, 수출입 화물 등을이용한 마약류 반입경로 다양화, 해외직구 및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통한 마약거래로 마약구매가 예전에 비해 간편해짐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 밀수 증가에 더하여 마약과 관련된 강력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국내마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관세국경에서 국내로 마약 반입이 억제될 수 있도록관세청은 마약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준 마약탐지기 도입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고정용탐지기 72대와 휴대용 탐지기 10대 등 총 82대의 마약탐지기를 운용중에 있다. 이중 내구연한이 도과된 13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용 마약탐지기 10대 중 9대는 내구연한(11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세청은 마약 감시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마약탐지장비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020년 기준 마약탐지기 운용 현황]

(단위: 대)

구분	마약폭발물팀	기(고정용)	마약폭발물팀	기(휴대용)
*************************************		내구연한 도과		내구연한 도과
인천본부	39대	1대	-	-
서울세관	2대	-	2대	2대
부산세관	10대	1대	2대	2대
대구세관	6대	-	3대	3대
광주세관	11대	2대	3대	2대
평택세관	4대	-	-	-
합 계	68대	4대	10대	9대

#### 가. 현황

감시장비 운영관리사업<sup>1)</sup>은 세관이 보유한 컨테이너 검색기, 감시정 등 감시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195억 4,500만원으로 이 중 183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다.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2은 세관이 보유한 컨테이너 검색기, 감시정 등 조사 감시장비를 교체하거나 마약폭발물탐지기, 드론, X-ray검색기 등 첨단과학검색장비를 신규도입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183억 1,900만원으로 이 중 163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00만원을 이월하고 18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감시장비 운영관리사업 및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ПОЩ	예	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브요애	
사업명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감시장비	10 545	10 545			10 545	10 200	94.1		1 157	
운영관리	19,545	19,545	-	_	19,545	18,389	94.1	_	1,156	
조사감시장비	17.705	17 705	F24	161	10 210	16 277	00.4		1 007	
현대화	17,795	17,795	524	△161	18,319	16,377	89.4	55	1,887	

자료: 관세청

## 나. 분석의견

첫째, 관세청은 감시정 축소에 따른 감시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과 유류 등 밀수 차단,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수속 및 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2대의 감시정을 보유하고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sup>1)</sup> 코드: 일반회계 1332-301

<sup>2)</sup> 코드: 일반회계 1332-302

있다. 2021년 현재 기준 9대의 감시정이 내구연한을 도과하였는데 이 중 1대는 2021년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2대는 2022년 매각 예정이다.

[관세청 보유 감시정 중 내구연한을 경과한 감시정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년, 시간, 마일)

감시정명	선질	내구 연한	선령	운행년도	해상 활동시간	운항거리	비고
경남398	알루미늄	15	21	′00.12월~'21.1월	369:30	1,155	2021년 매각 진행중
전남301	알루미늄	15	19	′02.12월~현재	359:30	2,321	2022년 매각 예정
전남399	알루미늄	15	19	′02.05월~현재	524:40	2,731	2022년 매각 예정
부산302	알루미늄	15	17	′04.03월~현재	572:40	2,485	
충남303	알루미늄	15	17	′04.03월~현재	73:35	917	
인천304	알루미늄	15	17	′04.12월~현재	185:55	2,000	
전남305	알루미늄	15	17	′04.12월~현재	563:55	3,720	
전북306	알루미늄	15	16	′05.12월~현재	119:35	1,022	
울산307	알루미늄	15	16	′05.12월~현재	1005:10	3,419	

주: 해상활동시간과 운항거리는 2020년 기준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감시정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노후 감시정 중 선령이 20년을 경과한 감시정은 항해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에 그치고 전속력 운항 시 진동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되어 해상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부 감시정의 경우 선체 누수가 발생하고 외판 경도, 인장강도 및 굽힘강도3)가 감소하는 등 감시정의 해상 안전 운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9년부터 노후 감시정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까지 총 8대의 감시정을 매각하고, 1대의 감시정을 신규로 건조·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운용하는 감시정은 총 30대로 감소하게 될 예정이다.

<sup>3)</sup> 인장강도 : 재료가 절단되도록 끌어당겼을 때 견뎌내는 최대 하중 굽힘강도 : 재료가 절단되도록 굽혔을 때 견뎌내는 최대 하중

[2019년~2023년 관세청 감시정 교체 계획]

		톤			선령	및 교체	계획	
감시정명	선질	<del>간</del>   수	건조일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부산393	FRP	29	′98.12.28	21년				
一一一一	I IXI	29	90.12.20	(감축)				
충남392	FRP	29	′98.05.28	21년				
요급392	FNF	29	96.03.26	(감축)				
241 1-206	FRP	06	200.02.11	20년	21년			
전남396	FRP	86	′99.03.11	20년	(감축)			
01=1204	EDD	20	100 12 11	2413	21년			
인천394	FRP	29	′98.12.11	21년	(감축)			
7101207	01207	20	100 11 15	20년	0414	22년		
강원397	FRP	29	′99.11.15		21년	(교체)		
741 F200	아르미노	25	100 12 01	1013	20년	21년		
경남398	알루미늄	25	′00.12.01	19년	20년	(감축)		
241 F2 O O	아근미노	20	102 OF 12	4713	4013	19년	20년	
전남399	알루미늄	32	′02.05.12	17년	18년	19년 	(감축)	
741 1-201	아르미노	22	102.12.27	4713	4013	1013	20년	
전남301	알루미늄	33	′02.12.27	17년	18년	19년	(감축)	
		2척	2척	2척	2척	-		
	건조	계획		-	1척	-	-	-
관세청	보유 감/	시정 다	수(예정)	37척	34척	32척	30척	30척

자료: 관세청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과태료, 통고처분, 유치(적발), 고발의뢰 등 감시정에 의한 적발 건수는 2017년 62건에서 2018~2019년 20건대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85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정에 의한 적발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감시정(척)	2017	2018	2019	2020
인천세관	3	-	2	-	3
부산세관	7	30	15	24	58
창원세관	1	-	-	-	1
마산세관	1	-	-	-	1
경남남부세관	3	3	1	-	2
경남서부세관	1	1	-	-	-
울산세관	3	2	2	4	11
포항세관	1	-	-	-	-
동해세관	1	1	-	-	-
광양세관	1	-	1	-	2
목포세관	3	2	-	1	7
대전세관	1	-	-	-	-
여수세관	2	21	2	-	-
군산세관	2	1	2	-	-
제주세관	1	-	-	-	-
평택세관	2	1	-	-	-
합계세관	33	62	25	29	85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감시정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수준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세청은 드론 등 신규로 도입하는 장비를 활용하는 부처와 연계하여 관세국경 감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2017년 수립한 "관세청 미래발전전략"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활용한 감시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드론을 이용한 공항·항만 감시를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8년까지 총 6대의 드론4)을 도입하여 시범운 영하였으며, 그 결과 총 6건의 관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관세청은 시범운용성과에 따라 2019년부터는 드론을 정식 운용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10대의 드론을 부산세관에, 2020년 총 4대의 드론을 인천세관에 도입하였다. 관세청은 드론 운용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운용의 이론 및 실기 등 교육과정을 위탁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9년 30명의 관세청 직원이 교육과정을 수료, 28명이 드론 운용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관세청 드론 도입 관련 경과]

연도	내용
2017	- 관세청 미래발전전략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항·항만 감시 추진 계획 - 드론 1대 도입
2018	- 드론 5대 도입 - 총 6대 드론 감시업무에 시범운용5): 6건의 관세법 위반행위 적발
2019	- 국산드론 10대 도입(부산) - 드론 운용 인력 양성 과정(외부위탁) 실시(30명 수료, 28명 자격증 취득)
2020	- 국산드론 4대 도입(인천) - 드론 운용 인력 양성 과정(외부위탁) 실시(18명 수료, 18명 자격증 취득)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19년 10대의 드론기체, 고성능카메라(열화상(EO/IR)카메라 5대, 야시경(Color Night Vision) 카메라 5대), 2020년 4대의 드론기체, 고성능카메라 4대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항만감시 및 범죄현장 증거채집 등 조사, 화물반출입 위험요인 감시 등 통관 업무 지원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sup>4)</sup> 중국 DII 사의 1대당 약 200만원 상당의 드론

<sup>5)</sup> 관세청은 시범운용을 위해 도입된 6대의 드론은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정식으로 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제조회사인 중국 DJI사의 보안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운용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론 운용으로 관세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실적은 시범적으로 운용한 시기에 적발한 실적 뿐이다.

[관세청 드론장비 구입내역]

구분	구입내역	
下正	2019	2020
구성	① 통합관제시스템 1식 ② 드론 10대(ND-605C) ③ 카메라 10대 (EO/IR 5대, Color Night Vision 5대)	① 통합관제시스템 1식 ② 드론 4대(DS30) ③ 카메라 4대(EO/IR 4대)
도입일	2019.12.26.	2020.12.22.
사업비	599백만원	397백만원

자료: 관세청

2019.12.26. 도입된 10대의 드론은 부산세관에 배치되어 직원 대상으로 2020.2.9.까지 도입 기종에 대한 조종 교육을 진행하였고, 2020.2.10.부터는 실제 운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드론 조종기와 기체간 송수신 전달 오류로 전복되거나 부산항만 내의 전파간섭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성능 문제로 인하여 2020.4.10.부터 2020.6.26.까지 고장 발생에 따른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부산세관이 보유한 10대의 드론은 2020년 운용일수가 62일, 총 운용시간이 27시간에 불과하고 드론을 이용한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없다. 2021년 3월까지의 운용결과도 부산세관의 드론은 운용일수 21일, 총 운용시간은 9시간이며, 인천세관의 드론은 운용일수 17일, 총 운용시간은 16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드론 도입 이후 운용일수, 총 운용 시간, 드론을 이용한 위법행위 적발 건수]

구분	2020년	2021.3월
부산세관	<ul><li> 운용일수: 62일</li><li> 운용시간: 27시간</li><li> 적발건수: 없음</li></ul>	<ul><li> 운용일수: 21일</li><li> 운용시간: 9시간</li><li> 적발건수: 없음</li></ul>
인천세관		<ul><li> 운용일수: 17일</li><li> 운용시간: 16시간</li><li> 적발건수: 없음</li></ul>

관세청은 운용 중인 드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이하여 드론 기체 추락 등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국내 보험회사는 도입된 드론 기종에 대하여 야간 운용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간 운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하여 관세청은 야간 감시 활동을 위하여 야시경 카메라를 구입하였으나 드론의 추락 등 사고로 인한 인적 사고, 기체 파손 및 재물 손괴 발생 우려로 야간 운용이 제한적이었다. 관세국경에서 범법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야간에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감시장비로서 드론 도입의 효과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다만, 관세청은 2020.12.30.부터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야간 운용시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이 도입한 드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7)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에 따라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제작한 드론만 구입할 수 있어 드론의 감시역량에 대한 기술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드론과 같은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국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관세청은 관세국경의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상(차량 등)·해상(감 시정)·공상(드론)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드론을 구매하여 활용하는 정부 부처들과 연계하여 드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up>6)</sup> 관세청은 2019년 12월부터 1년간 연간 드론 1대당 320만원, 총 3,2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sup>7) 「</sup>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중소기업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가. 현 황

AEO 공인심사 위탁 사업1)은 「관세법」 제255조의2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위한 서류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관세탈루심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9억 9,000만원으로 이 중 9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관세탈루심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	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브요애
시합성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골승역
관세탈루 심사	3,597	3,484	-	-	3,484	3,143	90.2	-	341
AEO 공인심사 위탁	990	990	-	-	990	952	96.2	-	38

자료: 관세청

AEO 업체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한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 등 통관절차 상 혜택을 받게 되며, AEO제도 시행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 2)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sup>1)</sup> 코드명: 일반회계 1231-300의 내역사업

Arrangement)을 통해 상대국 수입통관 시에도 검사생략,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AEO제도는 미국·중국·일본·EU 등 전세계 97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20개국이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FTA와 함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양대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 [FTA와 AEO의 비교]

FTA	체결국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관세장벽 해소
AEO	체결국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등 생략 ⇨ 비관세장벽 제거

자료: 관세청

## 나. 분석내용

관세청은 AEO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각종 지원 제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AEO 공인대상은 수출입업체를 비롯하여 관세사, 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등무역공급망을 구성하는 9개 부문이며, 2021년 4월 현재 AEO 공인기업은 834개 업체(유효업체 기준)이다. AEO 업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9%, 수입액의 30%를 차지(2020년 기준)하고 있다.

#### [부문별 AEO 공인현황('21.4월)]

(단위: 개)

구 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운송 · 주선업체	기 타	총 계
전 체	261	156	102	241	74	834
(중소기업)	142	26	100	206	28	502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AEO 기업에 대해 검사율 축소 등 통제·관리를 최소화하여 非AEO 기업에 대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AEO 상호인정약정(MRA)<sup>3)</sup>을 통해

<sup>3)</sup> 현재 우리나라는 22개 국가와 AEO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여 세계 최다 체결국이다. 미국·캐나다·싱가포르(10년), 일본·뉴질랜드(11년), 중국(13년), 홍콩·멕시코·터키(14년), 도미니카(공)·이스라엘·인도·대만(15년), 태국(16년), 호주·UAE·말레이시아·페루·우루과이(17년), 카자흐스탄(19), 인니(20)

우리나라 AEO 업체가 체결 상대국에서 수입검사율 축소 등 특혜를 제공받게 되어수출 지원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AEO 인증기업의 입장에서는 非AEO기업과비교하여 검사율 축소 및 신속통관 등으로 물류비 및 검사비용 등이 크게 절감되는효과가 있으며 법규준수도/내부통제/안전관리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 안정성 제고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AEO 공인을 받기 위한 신규 심사 건수가 2018년 이후 40~56건에 머물고 있으며, AEO 공인만료·반납으로 인한 취소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EO 공인 위탁심사 건수]

(단위: 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	138	127	71	56	40	55
재공인	150	6	54	152	194	109
(중소기업)	(96)	(2)	(34)	(130)	(133)	(74)
(중소기업비율)	(64%)	(33%)	(63%)	(84%)	(69%)	(68%)
합계	288	133	125	208	234	164

자료: 관세청

#### [연도별 부문별 공인 및 취소 현황]

(단위: 건)

														(난우	l: 건)				
				201	8					2019	9			2020					
부	문	신규	재	공인취4		소	공인	신규	재	공	인취:	소	공인	신규	재	공인취소			공인
		공인	 공인	공인 만료	반납	취소	업체 수		 공인	공인 만료	반납	취소	업체 수	공인	공인	공인 만료	반납		업체 수
수	출	20	10	2	17	2	278	11	46	3	12	2	272	18	34	8	6	1	275
수	입	5	9	1		1	142	5	43	1	3	1	142	15	23		1		156
관사	<del> </del>  사	1	8		3	1	102	4	20	1	3		102	4	28		2	1	103
주신	선업	21	9	4	8	1	204	7	46	2	3		206	8	45	4	3		207
운송	<del>)</del> 업	1	2	1			31	4	9	1			34	1	8				35
운영	병인	4	4	1	1		49	7	16			2	54	7	7	1	1		59
선박	<b>낙업</b>	-	1	1			8	-	3				8	-	-				8
항공	子사	-	-		1		2	-	-				2	-	-				2
하의	벽업	-	-				6	-	2				6	-	-				6
합	계	52	43	10	30	5	816	38	183	8	21	5	820	53	145	13	13	2	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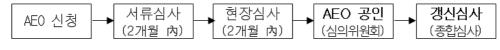
AEO 공인신청업체는 공인기준에 대해 자체 평가 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AEO 공인기준은 4개 부문(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의 관리기준으로 이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AEO 공인 및 갱신(공 인유지)이 가능하다. AEO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AEO 공인기준]

기 준	내 용
법규준수	결격사유,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 준수 여부, 시스템 법규 준수도 확인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내부통제시스템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위험관리,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
	사 소통 및 통제 체제를 평가
ᆀᄗᅯᅯᄸ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규모 및 재정상
재무건전성	황(예:조세 체납여부,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 등) 확인
	물리적 위해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도록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안전관리	인사, 취급절차, 시설, 장비, 정보기술, 교육, 훈련 등의 안전성 충족여
	부를 평가

자료: 관세청

[AEO 공인 절차]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신규 심사 건수의 감소 추세와 공인만료 및 반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 중단4)과 AEO 공인 취득 또는 공인 유지 및 심사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5)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

<sup>4) 2016</sup>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AEO 공인획득까지 이루어지는 컨설팅 및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외에 중소수출기업은 안전관리 구축비용 등이 발생하고,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AEO 협회의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간접보조사업자 격인 컨설팅기관 선정 절차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중소수출기업의 자발적인 인증획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2년이내 단계적 폐지"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폐지되었다.

통제시스템,6)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7)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일정수준을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AEO업체로 공인하고 있으며, 공인 이후 AEO업체는 매년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력, 시스템,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사전 검점하는 과정에서 외부 컨설팅비용(선택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관세청은 AEO 공인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벤처부의 수출바우처사업 등 타 부처의 수출기업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非AEO기업에 대해 관세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신규공인 및 재공인에 필요한 적정비용 등을 지원하여 AEO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up>5)</sup> 관세청은 기타 이유로 국내사업장의 이전, 교역상대국의 바이어와 거래중단, AEO 관리인력의 퇴직 등을 제시하였다.

<sup>6)</sup>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

<sup>7)</sup> 안전관리: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훈련체계를 갖출 것

# 1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필요

## 가. 현황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은 5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신고 전에 관리대상 검사, 신고 후에는 일반 검사 및 부두직통관 검사를 시행한다. 수출화물 의 경우 적재지 검사와 신고지 검사를 시행한다.

## [관세청의 수출입 물품 검사]

화물 구분	신고 시점 구분	검사 구분	내용
	신고 전	관리대상 검사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으로 화물을 이동시켜 감 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화물을 검사하는 방법
수입 화물	월 신고	일반 검사	부두 밖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검사로서 수입 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 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
	ю́Н	부두직통관 검사	화주가 1명인 컨테이너 화물을 부두 밖 보세구역에 장 치하기 전에 부두내에 위치한 세관검사장으로 이동시켜 일반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는 방법
수출	적기	재지 검사	수출물품이 선적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방법
지크	화물 신고지 검		세관직원이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방법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비용 경감, ② 공익 확보, ③ 민원해소 및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해 검사결과 불법 물품이 아닌 경우 국가가 화주의 검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1)

수출입화물 검사지원의는 컨테이너화물 정밀검사 등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부담 비용(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3)을 예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2020년 신규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79억 9,200만원으로 이 중 29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 111	1 , 7%
사업명	예	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돌용액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9,251	7,992	-	-	7,992	2,932	36.7	-	5,060

자료: 관세청

제173조(세관검사장)

<sup>1) 「</sup>관세법」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sup>2)</sup> 코드: 일반회계 1131-304

<sup>3)</sup>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 지원금액은 관리대상화물(140천원), 부두직통관화물(465천원), 적재지검 사화물(75천원)이다. 관세청은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각 검사별 지급금액 상한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주가 부담한 비용이 지급금액 상한선 이내일 경우 현재 100%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나. 분석의견

수출입물품 검사지원 사업은 적극적인 세관검사 수행과 공익적 목적의 세관검사로 인한 화주의 물류비용 경감을 사업목적으로 하였으나, 동 사업 이전에 비해 수출입화물 검사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관세청은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원 중인 검사비용 외의 화주의 부담·비용에 대해 검사비용 지원을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입화물 검사가 전수검사가 아닌 선별검사로 시행되므로 화주에게는 검사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불필요한 부담으로 인식되어 민원이 발생하였다. 관세청은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따라 검사비용의 부담이 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화물에 대한 검사 중 관세행정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비용을 보전함으로서 불법 위해물품 등을 통관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세관검사를수행할 목적으로 관세청은 2020년부터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20년 5종의 수출입화물 검사 중 ① 세관장이 수입적하 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관리대상 검사, ②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 이후 부두 외 컨테이너장치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화주의 공장 등으로 반출 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부두직통관 검사, ③ 수출신고수리 이후 적재지 검 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등에 대하여 세관검사비용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수출입화물의 검사건수는 2019년 290,580건에서 2020년 248,241건으로 감소하였다.

[2018~20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단위: 건)

성과지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4 = 01=15	목표	-	-	299,065	250,723
수출입화물 검사건수	실적	242,580	290,354	248,241	-
	달성도	-	-	81%	-

이에 대해 관세청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① 국내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조달물품 등에 대해 수입검사대상 선별을 최소화하였고, ②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행정을 실시함에 따라 창고관리인과의 접촉을 줄이고자 검사를 축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2020년 관리대상화물검사와 부두직통관화물검사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였음에도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2019년보다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등 제시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관세청은 향후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4)

[최근 3년간 검사종류별 검사건수]

(단위: 건)

구분	내용	2018	2019	2020
관리대상화물 검사	마약류,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수 반입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72,967	73,204	69,535
부두직통관화물 검사	부두 내 수입신고 수리 후, 직접 화주 의 공장 등으로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	32,882	44,615	44,026
수출화물적재지 검사	수출신고 수리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 하여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 부 등 수출물품 검사	3,650	5,604	6,797

자료: 관세청

또한, 동 사업의 목적은 화주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반발을 경감시켜 보다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화주 부담은 운송료, 상·하차료 등 금전적 비용 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화주의 부담·비용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sup>4)</sup> 관세청은 기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인 발췌검사 위주의 세관검사를 2인 기준 팀단위 전량검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수출입화물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불법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검사를 강 화하겠다고 밝혔다.

#### 가. 현 황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사업1)은 인천신항 신설,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신축('20.7.) 및 인천항 내항 재개발('17~'22)에 따른 기존 세관검사시설 폐쇄로 해상특 송화물이 집중되는 신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세관 통합검사장을 신축함에 따라 필요 한 장비를 도입하려는 사업이다. 통합검사장 건물 신축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 리기금 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장비도입 사업은 관세청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장비도입 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3억 9,7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다.

#### [2020회계연도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11. 1	L L, /º/
UME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H O 0H
사업명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1,397	397	0	0	397	397	100.0	0	0
장비도입									

자료: 관세청

#### 나. 분석내용

첫째,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이 공사부지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관세청은 신축사업 일정에 맞추어 분류 및 검색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직접구매가 활발해지는 등 국제화물 배송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된 국제특송화물 건수가 2015년 2,341만건에서 2020년 7,307만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해상특송 화물건수는 2015년에는 49만건에 불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2,339만건까지 증가하였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sup>1)</sup> 코드: 일반회계 1131-304

#### [2015~2020년 특송물품 건수]

(단위: 만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특송화물 건수	2,341	2,690	3,334	4,211	5,254	7,307
해상특송화물	50	101	276	516	1,131	2,339

자료: 관세청

이와 같은 해상특송화물의 증가와 함께 인천신항 신설, 신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및 인천항 내항 재개발에 따른 기존 세관검사시설 폐쇄가 예정됨에 따라, 관세청은 해상특송화물이 집중되는 신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세관 통합검사장을 신축하여 인천 내항·남항에 산재된 세관검사장(5개)와 컨테이너검색센터(3개)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사업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2)되어 총사업비 1,134억원으로 사업 추진이 예정되었다. 2019년 7월 기본계획이 제정되었으며, 2019년 10월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2020년 6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0년 7월 공사발주를 실시하여, 2022년 9월까지 준공 및 장비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 [2019년 당시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총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1	한제: 학교편)
	구분	2019	2020	2021	2022	계
	총사업비		10,877	56,057	45,645	113,390
건축	소계	811	8,782	28,953	21,716	60,262
공사	기본설계비	801	581			1,382
(국유	실시설계비		962			962
재산	공사비		6,924	27,697	20,773	55,394
관리	감리비		300	1,198	899	2,397
기금)	시설부대비	10	15	58	44	127
	소계		2,095	27,104	23,929	53,128
	특송 자동분류기		2,095	8,379	6,285	16,759
장비	컨테이너검색센터			18,725	14,044	32,769
(일반	X-ray 검색기				2,347	2,347
회계)	마약폭발물 탐지기				196	196
	방사능측정기				22	22
1 2	협업검사분석장비				1,035	1,035

<sup>2)</sup> B/C(비용대비편익) 0.94, AHP(종합평가) 0.503

사업 초기에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사업이 예정되었으나, 총사업비 조정(2회)을 통하여 완료기한이 2022년 9월로 변경까되었으며, 공사부지도 변경4되었다. 이후 사업기간을 다시 9개월 연장(완료기한 2022.9.→2023.6.)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139.9억원에서 1,274.5억원으로 증가되었다.

[2020년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총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ä	총사업비	811 ( 7)	996 (1,422)	7,534	52,644	61,865	127,450
	소계	811 ( 7)	599 (1,025)	5,798	38,643	39,164	85,015
건축	기본설계비	801 ( 0)	292 (1,016)	289	-	-	1,382
공사 (국유	실시설계비	-	300 ( 0)	662	-	-	962
재산 관리	공사비	-	-	4,588	36,902	36,903	78,393
기금)	감리비	-	-	240	1,625	2,233	4,098
	시설부대비	10 ( 7)	7 (9)	19	116	28	180
	소계	-	397 (397)	1,736	14,001	26,301	42,435
	특송 자동분류기	-	397 (397)	1,636	7,477	7,479	16,989
장비	컨테이너검색센터	-	-	100	6,524	15,222	21,846
(일반 회계)	X-ray 검색기	-	-	-	-	2,347	2,347
	마쁜물탕기	-	-	-	-	196	196
	방사능측정기	-	-	-	-	22	22
	협업검사분석장비	-	-	-	-	1,035	1,035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실적치

<sup>3)</sup> 구체적인 변경 사유는 공사규모·비용을 감안하여 시공사는 한정된 인력·장비의 중·중견기업으로 결정될 예정으로 당초 공사기간 내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총 공사기간 연장(15→24개월)이 필요하다는 사유였다.

<sup>4)</sup> 인천항만공사에서 세관 사용 면적 외에 잔여면적에 대한 활용도가 저하(출입구 등 문제로 타 물 류업체 입주 곤란)되므로, 세관에서 전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Gi5구역→Gi3구역)으로 이동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지를 변경하였다.

현재 장비도입은 신축 사업의 준공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특송 자동분류기 구축을 위한 2020년 본예산이 13억 9,700만원이었으나 2020년도 제3회 추경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3억 9,700만원만 집행하였다. 관세청은 해상특송 자동분류기 설계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2020년에 자동분류기 설계를 진행하였고, 2021년에 S/W 개발, 2022년 및 2023년에 장비 제작·설치·시운전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차별 해상특송 자동분류기 구축 계획]

구 분	1차(2020)	2차(2021)	3차(2022)	4차(2023)
사업예산	3억 9,700만원	16억 1,100만원	71억 1,600만원	72억 4,600만원
사업기간	계약일~2021.3.31.	2021.4.1.~2021.1130.	2021.121.~2023.131.	2023.2.1.~2023.6.30.
과업범위	자동분류장비 요구사항 분석 및 실시설계	S/W설계 및 개발(1차)	자동분류장비 자재구매, 제작, 설치 공장검사, S/W개발(2차)	설치, 검사, 교육, 승인시험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수행일정(2020.1.~2023.6.)]

구분		2020				2021				20	)22		20	)23
一个世	1	2	3	4	1	2	3	4	1	2	3	4	1	2
건축			설계	시공사 선정					착공 → 시공 → 준공					
해상			업체		<u> </u>									
특송장비	준비	선	정					*	' 감리 '	별도 진	행			
컨테이너							제	안서	업치	4	인 시	공 및 경	장비설.	치 →
검색기							준	비.	선경		허가		운전	

반면 컨테이너검색센터 전체 사업비는 327.7억원에서 218.5억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신규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이 3기에서 2기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검색기 3기를 모두 폐기한 후, 통합검사장에신규 컨테이너검색기 3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남항 ICT(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화주 물류비용 증가, 통관 효율성 저하, 인천항 물동량 감소 우려, 교통정체 등을이유로 존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에는 신규 2기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3차 총사업비 조정시(21.2월) 예산 감액을 요구하여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증가하는 해상특송화물의 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으로, 최근 해상특송화물 반입물량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인천항 특송통관장의 통관소요시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사업이지연되어 당초 계획보다 18개월 연장된 상황(2021.12.→2023.6)이므로, 증가하는 통관물량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진 물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차질 없이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해상 특송화물 반입 물량]

(단위: 천건)

					(	U11. (U'U)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천항 반입물량	365	628	2,414	4,519	8,981	8,659
평택항 반입물량	111	365	274	576	1,448	13,592
기타 항구 반입물량	29	23	72	69	886	1,143
총 반입물량	505	1,016	2,760	5,164	11,315	23,394

#### [연도별 특송통관장별 통관물량 및 통관소요시간 현황]

(단위: 천건, 분)

								( = 111	<u> </u>
		2017		2018		2019		2020	
세관	특송통관장	통관	소요	통관	소요	통관	소요	통관	소요
		물량	시간	물량	시간	물량	시간	물량	시간
01-27	특송물류센터(항공)	15,694	244	21,094	282	24,333	293	49,648	301
인천	인천항 <del>특송통</del> 관장(해상)	2,760	1,201	5,164	2,660	9,816	4,038	10,057	4,886
김포	김포공항 특송통관상(항공)	192	175	198	150	165	130	24	102
평택	평택항 <del>특송통관</del> 장(해상)	-	-	-	-	1,499	1,573	13,297	2,812

자료: 관세청

또한 현재 장비도입(해상특송 자동분류설비)을 위한 계약이 진행 중으로 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장비도입도 지연이 불가피해 계약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비가 지출될 수 있다. 현재 건축사업은 기본 설계가 완료되는 단계로 이후 실시 설 계 및 시공 단계가 남아있는데, 실시 설계 및 시공 사업자 선정 시 유찰 등으로 인 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바,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상특송 자동분류시스템은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의 항공특송 자동분류 시스템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설계함으로써 효율적인 분류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 항공특송 자동분류시스템은 해상특송 자동분류설비와 마찬가지로 특송화물의 반입, 우범화물(검사대상) 선별, X-Ray 검색, 화물분류(통관vs보류), 반출까지 최소한의 인력으로 특송화물을 신속·안전하게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의 자동화 처리비율은 2016년 개통 이후 56~63%의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자동화 처리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의 자동화 처리비율]

(단위: 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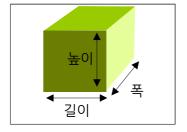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가 동	3,859(58%)	9,668(62%)	13,247(63%)	14,259(59%)	15,346(56%)
수 동	2,829(42%)	6,026(38%)	7,847(37%)	10,074(41%)	11,892(44%)

자료: 관세청

자동분류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격의 물품이여야 하고 바코드인식이 가능하여야 한다. 크기가 1m×0.8m×0.5m(가로×세로×높이) 초과이거나 박스포장이 아닌 물품, 바코드 인식이 불량일 경우는 자동분류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수동라인으로 처리된다. 해외직구의 범위가 다양한 물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최근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은 비정형 물품이 많아 자동분류시스템에서 제외되는 화물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라인 처리 가능 화물규격]

구분	최대	최소
길 이(mm)	1000	100
폭(mm)	500	60
높 이(mm)	500	10
중 량(Kg)	30	0.5



자료: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항공특송으로 반입되는 주요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의류 등 상대적으로 소형의 물품이며 해상특송으로 반입되는 주요품목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상대적으로 중대형의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해상 및 항공특송의 특송물품 주요 반입품목]

구분	주요품목
해상특송 통관장	가전제품, 완구, 의류, 생활용품 등
항공특송 통관장	건강식품(조제식료품 포함), 화장품, 의류 등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ULD(Unit Load Device, 항공 전용탑재용기) 단위로 자동라인, 수동라인을 구분하여 작업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단위로 운반되는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는 자동라인과 반자동라인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해상 및 항공특송의 자동분류시스템 장비 비교]

구분	해상특송(통합검사장 내설치 예정)	항공특송(인천공항 특송센터)
X-Ray 라인	■ 자동4, 반자동4, 수동2, 중형1 * 향후 4개 라인 증설 가능	■ 자동5기, 수동6기, 중형1개
화물	■ 컨테이너	■ ULD

- 주: 1. 자동: 반입(IPS에 의한 반입정보입력), 이동(컨베이어 이동), 분류(자동분류기로 분류), 반출(지정된 반출슈트로 이동)
  - 2. 반자동: 반입(작업자가 핸디스캐너로 반입정보입력), 이동(컨베이어 이동 후 자동화벨트 합류 시 사람의 힘 개입), 분류(자동분류기로 분류), 반출(지정된 반출슈트로 이동)
  - 3. 수동: 반입(작업자가 핸디스캐너로 반입정보입력), 이동(없음), 분류(작업자가 분류), 반출(작업 자가 반출슈트로 이동)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인천공항 항공특송 자동분류시스템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개소할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내 자동분류시스템에서는 설계단계부터 효율적인 분류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조달청

# 1

#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542억 7,500만원이며, 5,203억 4,500만원을 정수결정하여 이 중 90.3%인 4,699억 9,900만원을 수납하고 503억 4,6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 [2020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2 1 11 1 1 1	
그ㅂ	예	산	예산현액	징수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수납률
구분	본예산	추경	에산연액	결정액(A)	(B)	미수납액	결손액	(B/A)
조달특별회계	406,294	454,275	454,275	520,345	469,999	50,346	0	90.3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2020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826억 300만원이며, 이 중 96.3%인 4,647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5억 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 [2020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그ㅂ	예	산	예산	기출액	다음연도	불용액	집행률
구분	본예산	추경	현액(A)	(B)	이월액	골광역	(B/A)
조달특별회계	406,294	479,552	482,603	464,775	2,320	15,508	96.3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3736)

####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0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2억원(2.4%)이 증가한 2,615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73억 7,000만원(7.1%)이 증가하였다.

#### [2020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0		전년 대비			
구분 2019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A)	본예산	추경(B)	(C)	(C-B)	(C-A)
총수입	244,208	255,378	255,378	261,578	6,200	17,370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2020회계연도 조달청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5억 3,600만원(4.7%)이 감소한 1,75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50억 8,000만원(34.7%)이 증가하였다.

## [2020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9		전년 대비			
구분		예	<u></u> 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A)	본예산	추경(B)	(C)	(C-B)	(C-A)
총지출	129,940	161,582	183,556	175,020	△8,536	45,080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 다. 재무 결산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조달청의 자산은 2조 1,455억 3,000만원, 부채는 163억 4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1,292억 2,6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조 4,954억 6,300만원, 투자자산 38억 4,800만원, 일반유형자산 6,322억 6,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310억 5,700만원(6.5%) 증가하였다. 이는 마스크 비축 등에 따른 유동자산 970억 4,400만원 증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306억 3,3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99억 9,800만원, 장기차입부채 63억 3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0억 4,800만원(44.8%) 증가하였다. 이는 선수금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53억 9,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0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19	전년도 대비	증감
ТЕ	회계연도(A)	회계연도(B)	A-B	(A-B)/B
자 산	2,145,530	2,014,473	131,057	6.5
Ⅰ. 유동자산	1,495,463	1,398,419	97,044	6.9
Ⅱ. 투자자산	3,848	3,903	△55	△1.4
Ⅲ. 일반유형자산	632,265	601,632	30,633	5.1
IV. 사회기반시설	0	0	0	0
V. 무형자산	9,863	7,029	2,834	40.3
VI. 기타비유동자산	4,091	3,490	601	17.2
부 채	16,304	11,256	5,048	44.8
1. 유동부채	9,998	4,608	5,390	117.0
Ⅱ. 장기차입부채	6,303	6,644	△341	△5.1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IV. 기타비유동부채	4	4	0	0
순 자 산	2,129,226	2,003,217	126,009	6.3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수입(수익)이 재정지출(비용)을 초과 하여 순수익이 950억 8,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117억 1,400 만원, 관리운영비 382억 400만원, 비배분비용 8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302억 3,500만원, 비배분수익 224억 8,800만원, 비교환수익 등 △69억 1,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29억 7,300만원(14.6%) 감소한 △1,019억 9,300만원이며, 이는 혁신도시특별회계의 평가손실 미발생으로 비배분비용이 전년 대비 133억 9,000만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 [2020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7 8	2020	2019	전년도 대비 증감		
구 분 	회계연도(A)	회계연도(B)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18,521	△119,302	781	0.7	
가. 프로그램 총원가	111,714	105,529	6,185	5.9	
나. 프로그램 수익	230,235	224,830	5,405	2.4	
Ⅱ. 관리운영비	38,204	37,994	210	0.6	
Ⅲ. 비배분비용	812	14,202	△13 <b>,</b> 390	△94.3	
Ⅳ. 비배분수익	22,488	21,913	575	2.6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01,993	△89,020	△12,973	△14.6	
VI. 비교환수익 등	△6,911	△123,954	117,043	94.4	
Ⅶ. 재정운영결과(V-W)	△95,082	34,934	△130,016	△372.2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20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조 32억 1,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조 1,292억 2,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260억 900만원(6.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의 적립금 및 잉여금이 기초 대비 1,300억 1,600만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 [2020회계연도 조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л н	2020	2019	전년도 대비 증감		
구 분	회계연도(A)	회계연도(B)	A-B	(A-B)/B	
Ⅰ. 기초순자산	2,003,217	2,039,067	△35,850	△1.8	
Ⅱ. 재정운영결과	△95,082	34,934	△130,016	△372.2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6,070	0	26,070	-	
Ⅳ. 조정항목	4,857	△915	5,772	630.8	
V. 기말순자산(I-II+III+IV)	2,129,226	2,003,217	126,009	6.3	

자료: 조달청

## 라. 재정 구조

2020회계연도 조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조달특별회계로 253억원이 전입되었고, 조달특별회계에서 회전자금으로 1,131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회계·기금간 거래를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연금부담금 86억원을 전출하였다.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제1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중액된 사업**으로는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이 있다.** 조달정보화 사업은 '나라장터 전면개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19.11.27.)를 통과함에 따라 자체조달시스템 통합, 노후시스템 개선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나라장터 전면개편 초기분석(BPR/ISMP)' 예산 20억원이 증액(285억 6,500만원 → 305억 6,500만원) 되었다.¹)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사업,②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사업이 있다. 정부의「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20.3.5.)」및「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20.3.6. 식약처 고시)」결정 등에 따라,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사업'은 마스크 수급 안정 및 긴급 수요대응을 위해 843억 8,200만원 순증 되었고,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사업'에 비상대비 마스크 비축물자 보관을 위한 창고임대 비용으로 4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다.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 ②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 ③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사업 등이 있다. '정부조달 국제 협력체제 구축사업'은 K-방역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 전시회 행사 개최가 코로나19 지속 여부에 따라 불확실한 상황으로 온라인 행사 등의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은 혁신제품 구매사업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3)

<sup>1)</sup> 국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12.

<sup>2)</sup>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3.

한편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하반기 대유행 가능성 등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마스크 추가 비축 필요로 350억원이 증액(843억 8,200만원 → 1,193억 8,200만원) 되었다.⁴)

<sup>3)</sup>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0.6.

<sup>4)</sup>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7.

조달청은 ①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운영 확대 등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 확산, ②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 조달 구현, ③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 강화 등을 통한 조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④ 창업·벤처기업 등의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한 활력과 상생·협력이 함께하는 조달시장 조성, 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쇼핑몰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2020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0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조달청은 다양한 수요기관이 각 기관에 필요한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내용을 혁신장터에 신속하게 공개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특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나라장터로의 통합 여부를 판단하고, 나라장터로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

##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의 신속한 공개 필요

#### 가. 현 황

혁신제품 시범구매 관련 사업은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조달청이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게 공급한 후 사용 결과를 공개하여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초기판로를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조달청은 2020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관련 사업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공공 혁신 조달 사업1)'과 혁신제품 관련 홈페이지인 '혁신제품 조달플랫폼(혁신장터) 구 축 사업2)'을 추진하였다.

조달청은 공공혁신 조달 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 308억 2,700만원 중 96.3% 인 296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000만원을 이월하고 10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다. 혁신제품 조달플랫폼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11억 9,000만원 중 97.6% 인 1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5 11.	1, /9/			
ПОЩ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H O NH
사업명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조달물자 구매 및	10.014	20.415	1 526	0	20.041	20.701	96.3	110	1.040
관리지원(자본)	10,014	),014 29,415	5 1,526	U	30,941	29,791	90.3	110	1,040
공공혁신 조달 사업	9,900	29,301	1,526	0	30,827	29,678	96.3	110	1,039
조달정보화(정보화)	30,565	33,815	0	0	33,815	31,855	94.2	1,422	538
시스템 구축 사업	9,804	12,554	0	0	12,554	11,051	88.0	1,422	81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 구축	1,190	1,190	0	0	1,190	1,161	97.6	0	29

<u>주: 2020</u>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7-433의 내역사업

2) 코드: 조달특별회계 1131-501의 내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다양한 수요기관이 각 기관에 필요한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내용을 혁신장터에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에 대해 수요기관<sup>3)</sup>의 신청을 받아 혁신제품과 수요기관을 매칭하고, 시범사용기관(수요기관)과는 시범사용 협약,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시범구매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조달청은 2020년 기준으로 88종류의 제품과 375개 기관을 매칭하였고 66종류의 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계약하여 290개 기관이 시범사용하도록 공급하였다. 계약이 체결된 제품 중 39종류의 제품에 대해 245개 기관이 시범구매 사업과 별도로 각 기관 자체 예산으로 계약(후속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체결 제품 기준으로 59.1%(66종류 제품 중 39종류 제품)의 제품이 상용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 관을 말한다.
  -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기관
- 2.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소속 기관
-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sup>3) 「</sup>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 [2020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 현황]

(단위: 개, 백만원)

									C 111. 113	1
혁신	혁신		매칭			계약			후속계약 개를 제외	:  한 계약)
혁신 구분	雅 지장수	제품 종류수	기관수	금액	제품 종류수	기관수	금액	제품 종류수	기관수	금액
F1	66	17	102	10,995	14	87	8,604	8	33	5,713
F2 공급자	86	66	268	26,511	52	203	19,431	31	212	9,667
F2 수요자	7	5	5	1,210	0	0	0	0	0	0
F3	120	0	0	0	0	0	0	0	0	0
합계	279	88	375	38,716	66	290	28,035	39	245	15,380

- 주.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대상은 3종류로 구분됨
  - · F1(패스트트랙1):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 F2(패스트트랙2):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공급자 제안형: 기업이 먼저 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선택
    - 수요자 제안형: 수요기관이 먼저 과제를 제안하고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
  - · F3(패스트트랙3): 신기술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제품인증,(NEP: New Excellent Product) 등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 F1은 2020년 6월, F3는 2020년 10월부터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됨
  - 2. 후속계약 자료는 나라장터시스템상 등록된 전자계약 체결 건을 집계한 자료로, ① 계약서 작성 생략, ② 수기계약서 작성, ③ 나라장터 외 자체 계약업무시스템 계약체결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조회 불가능한 자료는 미반영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결과는 사용기관에서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20년도에 계약이 체결된 66종류의 제품 중 시범사용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제품은 27종류이며, 이 중 10개 이상의 다수 기관과 후속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4종류이다. 해당 제품들은 조경 관리, 화재 대비, 교통사고 방지,에너지 효율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상시적인 관리 또는 대비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되는 것으로 시범사용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 [다수 기관과 후속계약이 체결된 제품]

(단위: 개, 백만원)

제품명	시범사용기관	후속계약 기관수	후속계약 금액
친환경 잡초제거 소금	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기관	45	170
AI연동 스마트소화기 및 시큐리티 시스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등 6개 기관	29	1,077
안전이 강조된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	경상남도 창원시	23	1,294
빛공해 방지용 안전가이드를 접목한 LED등기구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등 2개 기관	14	833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범사용기관 의견: 다수 기관 후속계약 체결 제품]

제품명	시범사용기관 의견
친환경 잡초제거 소금	<ul> <li>잡초 억제 효과가 우수하고 사용 후 성능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 어 연중 작업 요구 빈도가 낮음</li> <li>예·제초 비용이 기존에 비해 저렴하며, 친환경 소금 사용이므로 안전하다고 봄</li> </ul>
AI연동 스마트소화기 및 시큐리티 시스템	• 디자인이 우수하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이 반영되어 기존 소화기 와 함께 사용시 재난 안전망 구축 및 시설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함
안전이 강조된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	•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보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바닥신호등이 확대 설치될 경우 시민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의 횡단보행자 주의, 경각심 고취 등 주·야간 횡단보행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빛공해 방지용 안전가이드를 접목한 LED등기구	• 빛공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설치하여 조도를 측정한 결과 내부는 기존 조명시설과 같은 밝기를 유지하면서 시설 외부에 대한 빛공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우수한 효과가 기대됨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소수의 기관과 후속계약이 체결된 제품도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질 문제,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한 음압장비 활용, LED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 서 시범사용기관으로부터 좋은 성능을 인정받고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활용이 가능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소수 기관과 후속계약이 체결된 제품]

(단위: 개, 백만원)

제품명	시범사용기관	후속계약 기관수	후속계약 금액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방진창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 4개 기관	5	381
음압캐리어	충청북도 소방본부 등 7개 기관	4	178
간단한 설치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신개념 LED엔진 솔루션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2개 기관	2	71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범사용기관 의견: 소수 기관 후속계약 체결 제품]

제품명	시범사용기관 의견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방진창	<ul> <li>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도 환기가 가능하여 사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판단함</li> <li>다중이용시설이나 관공서 및 학교 등에 설치를 권장함</li> </ul>
음압캐리어	<ul> <li>현장에서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에어프레임 구조로 환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C/T 촬영이 가능함</li> <li>파손되었을 때 A/S가 빨라 감염병 환자에 대처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됨</li> <li>국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환자 및 의료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공기관에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됨</li> </ul>
간단한 설치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신개념 LED엔진 솔루션	• 기존에 사용하던 등기구에 LED광원을 설치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LED도입에 부담이 되던 초기설치 도입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함 • 다양한 등기구에 적용하여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다수 기관과 후속계약이 체결된 제품뿐만 아니라 소수 기관과 후속계약이 체결된 제품도, 시범사용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수 기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품 사용에 대한 평가는 시범사용기관이 제출한 완료보고서에만 기재되어 있어 다른 기관들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라 시범사용기관은 시범사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은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4) 그러나 조달청은 시범사용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54종류(2021년 6월 기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개, 2021.6. 기준)

계약체결 연도	완료보고서 제출 제품 종류수
2019	27
2020	27
합 계	54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에는 제품 사용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기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기업의 제품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완료보고서의 내용은 다양한 수요기관이 각 기관에 적합한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다양한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용 기관으로부터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제품명, 기관명, 기관의 사용의 견, 기업의 시범구매 사업 참여 후 제품 개선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sup>4) 「</sup>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6조(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1호의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시범사용결과 공개)

① 조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 가. 현 황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는 조달업무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2020년 기준 6.1만개 기관과 47.1만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는 112.7조원에 달한다.

나라장터는 2002년에 구축된 이후 전면개편 없이 사용되어 시스템 과부하 문제와 노후화에 따른 오류·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나라장터와 별개로 운영 중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중복 투입, 조달업체의 여러전자조달시스템 사용에 따른 불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추진된 나라장터 전면개편 초기분석 사업1)은 나라장터 전면개편을 위한 구축전략 및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상세화하는 것으로 조달정보화 (정보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조달청은 2020년도 예산현액 2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2)

### [2020회계연도 나라장터 전면개편 초기분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H) -	1 년 년, /0)
ПОЩ	예	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п 50 55
사업명	본예산	추경	(A)	(B)	(B/A)	이월액	불용액
조달정보화(정보화)	30,565	33,815	33,815	31,855	94.2	1,422	538
시스템 구축 사업	9,804	12,554	12,554	11,051	88.0	1,422	81
나라장터 전면개편	2,000	2,000	2,000	2 000	100.0	0	0
초기분석	2,000	2,000	2,000	2,000	100.0	0	U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3736)

<sup>1)</sup> 코드: 조달특별회계 1131-501의 내내역사업

<sup>2)</sup> 조달청은 나라장터 전면개편 초기분석 사업의 낙찰차액을 동 사업의 감리비, 조달수수료로 집행 하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함

##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특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나라장터로의 통합 여부를 판단하고, 나라장터로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전면개편을 위하여 2020년 초기분석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수립하였다. 2021년부터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및 상세 설계 단계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개편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일정]

자료: 조달청

ISMP 보고서 상 구축된 4가지 추진전략은 ① 지능정보기술 기반 조달행정 혁신, ② 이용자 편의제고기반 조달서비스 혁신, ③ 공공조달 통합체계로 운용효율 혁신,

④ 디지털 공공조달을 위한 IT구조 개편이다.

4가지 추진전략 중 ③ 공공조달 통합체계로 운용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조달청의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과 함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의 필요하다. 그리고 협의 내용은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 초기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2021년 현재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관은 26개이다. 시스템 구축 시기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하며, 해당 시스템들을 통해 46만 8,051건, 39조 8,583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번	운영기관	구축시기	계약건수	계약금액
1	강원랜드	2009	2,750	197,100
2	방위사업청	2001	48,726	13,317,570
3	인천국제공항공사	2010	647	1,434,964
4	㈜에스알	2015	66	45,176
5	한국가스공사	2009	1,490	682,400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	670	42,879
7	한국교직원공제회	2011	-	-
8	한국국제협력단	2006	242	266,320
9	한국국토정보공사	2008	996	72,531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365,812	2,823,000
11	한국도로공사	2002	5,006	1,355,939
12	한국마사회	2006	564	93,559
13	한국석유공사	2006	469	196,910
14	한국수력원자력	2003	4,932	2,873,859
15	한국수자원공사	2001	10,286	1,640,735
16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310	13,490
17	한국전기연구원	2006	6,012	33,142
18	한국전력공사	2001	-	-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2,474	61,224
20	한국조폐공사	2008	3,932	316,461
21	한국지역난방공사	2008	1,922	777,447
22	한국철도공사	2007	4,877	1,367,809
23	한국철도시설공단	2006	1,041	2,345,950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3,529	9,681,006
25	한국환경공단	2015	463	7,776
26	한건KDN	2001	835	211,078
	<u></u> 합 계		468,051	39,858,325

주: 1. 계약건수 및 금액은 2019년 기준

<sup>2.</sup>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전력공사는 자료 미제출 자료: 각 기관의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3)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달청은 각 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기 위해 자체전 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통합을 추진 합 예정이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이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 각 기관별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조달업체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에 맞추어 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등 조달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할 경우 약 757.8억원의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up>3) 「</sup>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2018.12.31. 일부개정, 2019.7.1. 시행)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up>「</sup>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6.25. 일부개정, 2019.7.1. 시행)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sup>1.</sup>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sup>2.</sup>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sup>3.</sup>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 중 조달청장 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자체조달시스템 통합에 따른 정량적 기대효과]

(단위: 억원)

	( = 11: 1 =)
항 목	기대효과
조달업무 표준화로 조달업체 중복 유사서류 준비 최소화	479.2
기관별 자체조달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유지비용 절감	209.2
자체조달시스템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표준화-간소화	58.1
자체조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11.3
합 계	757.8

자료: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2021.1.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사용하는 조달업체 중 94.6%가 각 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은 조달업무 진행시 각 조달시스템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할 경우 조달업체는 각 기관별 양식이 아닌 나라장터의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입찰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조달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던 기관은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련 인력도 최소화하면서 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나라장터는 조달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조달업무의 전문성 이 강화되고 각 기관별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입찰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조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①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② 국가보안 유지 목적으로 자체전자조 달시스템 구축·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달업무의 비효율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통합에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을 위해 각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전력공사는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4)

이 중에서 방위사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법령에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5)

그 외에도 방위사업청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 다수의 군 내부 시스템들과 연계되어 있어 나라장터로 통합될 경우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계약방법 및 절차, 물품목록체계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에 기반하여 전국지자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시스템 연계 및 협의를 통해 우수 농식품의 단체급식 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관련 규정 개정이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범위가 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sup>4)</sup> 조달청은 2018년 ISP 수행 당시 나라장터로의 통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2020년 ISMP 수행 시에는 「전자조달법」개정에 따라 나라장터로의 통합 근거가 마련되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통합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각 기관의 의견은, 방위사업청,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8년 ISP 수행 당시 제출한 기관 의견서의 견해와 유사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범위 확대 등과 관련한 추가 의견이 있어 각 기관 의견서와 추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함.

<sup>5) 「</su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sup>1. 「</su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u>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u>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sup>1. 「</su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u>단체급식 식재료 전</u> 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sup>6) 「</su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2020.2.17.)으로 단 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범위 확대

<sup>: 「&</sup>lt;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u> 전 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sup>→</sup>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나라장터로의 통합될 경우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문제, 동 시스템 운영의 수탁기관인 더케이교 직원나라의 인력 승계 문제 등이 발생하여 통합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근거]

구분	방위사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① 법령 근거	·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조달 (「방위사업법」 제25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가능 (「국기를 당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전자거래 관련 업무 수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인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장치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장치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② 국가 보안	· 보안상 필요한 군수품은 직접 조달 (「방위사업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다수의 군 내부 시스템과 연계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정보는 국방망 이용자 외에는 접근 권한이 없으므로 나라장터로 통합될 경우 보안상 문제 발생 가능		
③ 조달 목적 달성	· 「방위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독자적 계약 방법 및 절차, 물품목록 체계 운영 중 · 나라장터로의 통합시 네트워크 증가에 따른 장애, 보안 문제, 업무 처리 지연 우려	· 전국지자체, 교육부, 시도 교육청, 농식품부, 식약처 등과 시스템 연계 및 협의를 통해 우수 농식품의 단체 급식 공급 확대 노력, 식재료 안전 공급망 확보, 공급업체 불시점검 등 업무 수행	

구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의 행·재정망(나이스, 에듀파인)과 시스템을 연계 하여 관계 기관(교육부, 학교,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시스템 개선, 표준 식재료 코드 구축, 관련 규정 제· 개정 등 수행 ·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재원 으로 사업 운영		
기타		· 농수산식품 공급업체와 단체급식 수요처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달 시스템은 자체전자조달시 스템에 해당되지 않음	· 나라장터로의 통합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시업에 대한 투자금 화수, 동 시스템 운영 사업 수탁기관의 인력 승계 등에 대한 문제 발생	

자료: 각 기관의 조달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전력공사는 법령에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할 경우 입찰방법 변경 등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고,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발생하지 않았던 이용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스템 오류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방안 마련,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13개 전력그룹사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이유로 나라장터의 검증이 완료된 후(2024년 이후)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할 경우 조달업체는 각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나라장터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입찰을 준비하여 조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각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은 조달업무와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조달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이전담하여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기준 적용을 통해 조달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별도 운영을 통해 조달목적을 달성해야하는 경우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달청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특성, 운영 내용, 운영 성 과 등을 파악하여 나라장터로의 통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3가지 사유 외에도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운영, 인력 승계 등의 문제로 통합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기관들이 있으므로, 조달청은 자체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기관에서 나라장터로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통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사업 예산 집행 문제

## 가. 현 황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사업1)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조달청은 2020년도 예산현액 4억 3,800만원 중 64.6%인 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00만을 이월하고 5,8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 11.	1 , /0)
TOUG	예	산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브요애
사업명 	본예산	추경	등	(A)	(B)	(B/A)	이월액	돌용액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2,575	3,345	±375	3,345	2,395	71.6		61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624	396	42	438	283	64.6	97	58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3736)

<sup>1)</sup>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3-331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2000년부터 매년 국내 최대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이하'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도 4월말에 엑스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가 유지되어 동 사업을 취소하였다.2)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활동 촉진과 소비 진작 노력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3)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엑스포 사업 예산액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1,300만원,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1억 5,400만원 그리고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1억 1,600만원 등 총 2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다.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	집행액	집행일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용역비	13	'20.6.26.
	용역 제안서 평가수당	2	'20.10.5.
	용역비	145	'20.12.15.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신규)	용역 수수료	1	'20.12.22.
	심사 수당	6	'20.12.4.
	소계	154	
	용역 제안서 평가수당	2	'20.11.4.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용역비 선금	97	'20.12.22.
순회 전시회	기념품	17	'20.12.15.~16.
	소계	116	
합 계		283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sup>2)</sup> 조달청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사업 관련 기관에게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0 행사 취소 안내」 공문을 발송(2020.3.12.)

<sup>3)</sup> 제2차 조달청 예산편성 및 집행 심의회에서 엑스포 사업을 혁신조달 전시회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집행하기로 의결함(2020.5.13.)

## 첫째, 조달청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사업 예산 집행시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예산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초 2020년 엑스포 사업 계획서에 혁신조달 사업은 혁신시제품, 국가연구개발 연계 제품, 신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혁신성장관 운영(이하 '전 시회')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당초 계획에 없던 제1회 혁신조달 경진 대회(이하 '경진대회')를 신규로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4개 공공기관이 혁신조달 추 진성과를 발표하고 4개 혁신기업이 혁신제품을 발표한 후, 민간전문가와 국민평가 단의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내용이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사업 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전시	• 제품전시관(11개) - <b>혁신성장관</b> , 벤처나라관. <b>혁신제품 전시</b> - 전통문화상품관: 전통문화상품 전시 - 그 외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등	•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 권)에서 혁신조달제품 소규모 전시
상담	• 상담회장(4개) - <b>해외바이어 상담</b> , 공공구매 상담 등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 해외바이어 초청 및 상담
홍보	• 홍보관(2개) - 조달청 업무 소개 및 우수제품 홍보	-
교육	• 교육장(2개) - 조달 전문과정 교육	-
경진대회	-	• 제1회 혁신조달 <b>경진대회</b> - 우수사례 발표 후 심사 및 시상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엑스포 사업 계획에 없던 경진대회를 엑스포 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과정에 없었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 ① 경진대회는 민간전문가 5명과 국민평가단 50명(47명 참여)이 심사하고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3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3점이 수여되는 규모의사업이다. ② 이러한 사업을 엑스포 사업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상품 공모전과 같이 엑스포 사업 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될 필요가 있으나, 경진대회 내용은 엑스포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또한 혁신조달 관련 사업

은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세부사업에 편성4)되어 있으므로, 혁신조달 경진대회는 동 세부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조달청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사업 예산 집행시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예산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엑스포 사업의 혁신조달제품 전시를 2021년 소규모 권역별 순회 전시회(이월예산)로 변경하여 개최하였으며, 코 로나19 상황 지속으로 2021년에도 대규모 엑스포 사업이 소규모 권역별 순회 전시 회(본예산)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소규모 권역별 순회 전시회가 서로 차별화된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2020년 코로나19로 대규모 전시회인 엑스포 사업이 불가능하여, 총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를 소규모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와 함께 추진된 수도 권 전시회를 제외한 3개 권역의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진행이 불가능하여, 사업 예 산 중 용역비의 일부인 9,700만원을 이월하고 2021년 6월 중 3개 권역의 전시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 [2020년 혁신조달제품 전시회 사업 변경 내역]

구 분	2020년 당초	2020년 변경
전시	• 엑스포 사업 중 혁신제품 전시 - 혁신성장관	•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 권)에서 혁신조달제품 소규모 전시
일정	2020.4. → 취소	2020.11.(수도권만 개최), 다른 3개 권역은 2021.6.로 연기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sup>4) 2021</sup>년 개최 예정인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예산액은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음

엑스포 사업은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2020년 엑스포 사업의 이월예산으로 집행되는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와 2021년 본예산으로 집행되는 엑스포 사업이 모두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1년 본예산으로 추진 예정인 엑스포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4월에서 9월로 개최가 연기되었으며, 2020년과 같이 대규모 엑스포에서 소규모 권역별 순회 전시회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5)

소규모 권역별 전시회는 대규모 엑스포에 비해 참여 업체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조달청은 2021년에 소규모 권역별 전시회가 두 번 개최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서로 차별화된 내용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이월예산 추진 사업과 2021년 본예산 추진 사업 내용 비교]

구 분	2020년 이월예산 추진 사업	2021년 본예산 추진 사업
전시	•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 3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혁신조달제품 소규모 전시	• 엑스포 사업 중 혁신제품 전시 - 혁신성장관
일정	2021.6.	2021.4. → 2021.9.(코로나19로 연기)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sup>5)</sup> 조달청은 2021년 7월 현재 엑스포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연기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계획에 따라 9월 정상 개최 예정이라고 설명함

## 2-1. 해외진출 지원 업체 만족도 측정 설문조사 항목 세분화 필요

## 가. 현 황

조달청은 2020회계연도 성과계획 중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부 정책지원을 위해 정부조달 국제 협력 강화 및 물품·용역·시설 등 조달사업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나라장터 수출 확대, ② 공공구매 혁신을 통해 다양하고 품질이 우수한 물품·용역을 적정가격으로 수요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조달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③ 선진 공사발주제도 및 설계·공사 관리 기법 적용과 공사비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시설물의품질 향상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다.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① 해외진출 지원 업체 만족도, ② 물품구매 종합만족도, ③ 시설분야 종합만족도이며 3개 지표는 모 두 설문조사로 측정되고 있다.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 목표 및 지표, 측정방법]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정부 정책지원을 위해 정	해외진출 지원 업체 만족도	G-PASS기업 등 조달청 지원 사업의 수혜기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부조달 국제 협력 강화 및 물품·용역·시설 등 조 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 영한다.	물품구매 종합만족도	조달청 물품구매에 대한 종합만족도 설문조사
	시설분야 종합만족도	조달청 시설분야 서비스(계약, 공사관리)에 대한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종합만족도 설문조사

자료: 조달청,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1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3736)

## 나. 분석의견

해외진출 지원 업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항목은 업체가 참여한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 불만족'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만족, 불만족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달청은 물품구매, 시설분야 중합만족도 설문조사와 같이 항목을 사업 전반이 아닌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여 만족도 결과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사업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해외진출 지원 업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항목은 '참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해외진출 지원을 받은 업체가 만족, 불만족 등을 선택한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반면, 물품구매와 시설분야의 종합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항목은 '입찰정보의 충분성, 낙찰자 선정의 투명성, 계약 체결의 신속성' 등과 같이 각 조달 사업에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조달 업체가 만족, 불만족 등을 선택한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 성과 달성률이 낮아지거나 미달성 될 경우, 보완할 부분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설문조사 주요 항목]

성과 지표	해외진출 지원 업체 만족도	물품구매 종합만족도	시설분야 종합만족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참여 사업명	입찰정보의 충분성	입찰정보의 충분성
	참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낙찰자 선정의 투명성	낙찰자 선정의 투명성
	향후 지원 확대를 바라는 사업명	계약 체결의 신속성	계약 체결의 신속성
조사 항목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참가 서류의 간편성	참가 서류의 간편성
		대금 청구의 편리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대금 지급의 신속성	시설공사의 품질 향상 효과
		대금 지급의 신속성	공사 관리 기술 업무의 전문성
			공사 관리 업무의 투명성

주: 물품구매, 시설분야 종합만족도 조사는 수요기관용과 조달업체용으로 구분되며, 위의 표는 조달 업체용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측정하는 것은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 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진출 지원 업체 만족도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항목은 참여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도를 묻는 단일항목이 아닌 참가 서류의 간편성, 지원 절차의 신속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여도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여 참여업체의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sup>1)</sup> 조달청은 2021년도의 경우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수정제출 기한(2021년 1월)이 경과되어 수정이 불가능하며, 2022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상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별로 결과·정량 지표 위주로 2~3개 설정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수출실적'만 반영되고, '해외진출 지원 업체 만족도'는 삭제되었다고 설명함

## 2-2. 정책연구용역 실무 활용률의 상세 활용도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필요

## 가. 현 황

조달청은 2020회계연도 성과계획 중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단위사업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정책연구용역 실무 활용률을 설정하였다.

해당 단위사업은 조달 관련 정책·제도·서비스의 변화 내용을 공공기관 및 조 달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수용도, 서비스 활용도 및 대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은 정책대안 및 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다.

## 나. 분석의견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실무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파악하는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으로 사용 중인 '활용된 정책연구과제 건수'는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여부'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조달청은 이를 '정책연구결과 활용도 점수'로 변경하여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인 정책연구용역실무 활용률을 완료된 전체 정책연구과제 건수 중에서 법·제도개선, 정책 개발에 활용된 완료 정책연구과제 건수의 비율로 측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매년 초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에서 실제 활용이 가능한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어, 정책연구용역의 실무 활용률이 높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2018~2020년) 정책연구용역 실무 활용률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100%를 달성하였다.

<sup>2) 「</sup>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4조(위원회 설치) 조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up>1.</sup>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sup>2.</sup>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sup>3.</sup>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sup>4.</sup>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달성률을 '활용된 정책연구과제 건수'로 측정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여부는 파악할 수 있으나, 활용 정도는 파악하기 어렵다.

[정책연구용역 실무 활용률 성과지표 달성률]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조달행정서비스	공공조달	정책연구용역	법·제도개선, 정책	목표	100	100	100
향상을 위해 인적 역량을	정책개발	실무 활용률	개발에 활용된 완료 정책연구과제 건수 <sup>1)</sup>	실적	100	100	100
강화한다.	및 효율화	(%)	/ 완료된 과제 건수	달성률	-	-	100%

주: 1) 법·제도개선, 정책 개발에 활용된 완료 정책연구과제 건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활용도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건수임

자료: 조달청,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1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될 경우 해당 용역 담당 부서는 활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의 구체성, 조달청 주요 업무계획 추진 과제 등과의 연계성, 정책연구용역의 정책 반영 가능 정도, 정책연구 결과의 실제 활용을 위한 소관부서의 노력 등과 같은 심의기준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평가한다. ③ 평가에 따른 종합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적합하게 활용한 것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 활용률은 점수로 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달청은 정책연구용역 활용률을 '활용된 정책연구과제 건수'가 아닌 '정책연구결과 활용도 점수'로 변경하여 측정함으로써, 정책연구과제가 정책 개발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에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수 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4)

<sup>3) 「</sup>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활용도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및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별표 2의 심의기준에 따라 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sup>4)</sup> 조달청은 2021년도의 경우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수정제출 기한(2021년 1월)이 경과되어 수정이 불 가능하며, 2022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상 성과관리 대상이 단위사업에 서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정책연구용역 실무 활용률' 단위사업 성과지표가 삭제되었고 동 단위사업이 포함된 '조달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성과측정 실익이 적어 2022년 성과계획서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함

[정책연구결과 활용도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기준		배점	
1. 용역보고서	정책연구결과 근거자료의 정확성	7		
품질	과업지시서의 연구과제를 충실하게 반영한 정도 8			
(등급평가)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의 구체성	10		
2. 정책연계성 (등급평가)	조달청 주요 업무계획 추진을 위한 과제, 조달청의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과제, 외부기관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과제, 기 타 조달업무 발전방향과 연계성 정도를 평가			
	실무참고 정도의 기여	10		
3. 정책화	정책에 직접 반영은 곤란하나 여건 충족 시 반영가능	15	2 5 74	
기여도 (절대평가)	정책연구용역 결론의 일부가 정책에 반영 가능	20	25점	
	정책연구용역 결론의 대부분이 정책에 반영 가능	25		
4. 연구결과 활용노력 (등급평가)	정책연구 결과가 조달청 및 정부 정책에 실제로 활용되었거나 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 과제 소관부서의 노력 등을 종 으로 평가		25점	
	종합점수		100점	

자료: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별표 2] 정책연구결과 활용도 심의기준

## [2020년 성과보고서에 포함된 정책연구결과 활용도 평가 결과]

연구 과제명	종합점수
불공정한 조달행위에 따른 위반 제재금(위약벌)제도 도입 방안 연구	80.9
우리기업을 위한 UN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85.4
국가소유 미술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미술품 관리 개선방안 연구	81.8
아프리카 공공조달 제도 및 시장현황 조사 연구용역	83.6
품목별 전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	84.5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 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적정 금속 비축량 도출 및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	86.1
자체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82.5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	84.5
수요기관의 구매방식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	83.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물품목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83.7
공공혁신구매 목표비율제도 연구	82.8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84.1
단가계약 보증금 체계 개선 연구	86.9
혁신조달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마련 연구	85.7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통계청

## 1

#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1억 2,600만원이며, 45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5%인 44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6,8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통계청 소관 세입 결산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 [2020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								
그ㅂ	예	산	에 Y F됨 에	징수	수납액	미시나에	불납	수납률
구분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결정액(A)	(B)	미수납액	결손액	(B/A)
일반회계	5,126	5,126	5,126	4,550	4,482	68	0	98.5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2020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729억 6,900만원이며, 이 중 95.5% 인 4,518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5억 8,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통계청 소관 세출 결산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 [2020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그ㅂ	예	산	예산	기 <del>출</del> 액	다음연도	불용액	집행률
下正	본예산	추경	현액(A)	(B)	이월액	골승객	(B/A)
일반회계	483,281	472,882	472,969	451,899	486	20,584	95.5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3736)

## 나. 재무 결산

2020회계연도 말 현재 통계청의 자산은 2,498억 1,100만원, 부채는 7억 7,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490억 3,4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89억 5,200만원, 일반유형자산 1,964억 2,500만원, 무형자산 392억 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17억 7,500만원(9.5%) 증가하였다. 이는 자본적 지출, 가격평가 및 자산 인수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153억 9,900만원 증가, 내부개발S/W 및 외부구입S/W(물품) 등으로 인한 무형자산 32억 9,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억 400만원, 장기차입부채 3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대비 4억 5,300만원(36.8%) 감소하였다. 이는 나라통계시스템 등 유동성 대체 4억 200만원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 [2020회계연도 통계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19	전년도 대비 증감			
一	회계연도(A)	회계연도(B)	A-B	(A-B)/B		
자 산	249,811	228,036	21,775	9.5		
Ⅰ. 유동자산	8,952	6,104	2,848	46.7		
Ⅱ. 투자자산	599	553	46	8.3		
Ⅲ. 일반유형자산	196,425	181,026	15,399	8.5		
IV. 사회기반시설	0	0	0	0		
V. 무형자산	39,204	35,907 3,297		9.2		
VI. 기타비유동자산	4,631	4,446	185	4.2		
부 채	777	1,230	△453	△36.8		
1. 유동부채	404	455	△51	△11.2		
Ⅱ. 장기차입부채	373	775	△402	△51.9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IV.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249,034	226,806	22,228	9.8		

통계청은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600억 2,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896억 7,100만원, 관리운영비 752억 9,900만원, 비배분비용 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6억 7,800만원, 비배분수익 22억 6,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77억 4,100만원(20.3%) 증가한 4,600억 2,900만원이며, 이는 외주용역비, 인건비 및 소모품비 등의 증가로 프로그램 총원가가 736억 7,1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총 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2,188억 2,45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15억 5,780만원과 경비 237억 4,096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1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0회계연도 통계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2020	2019	전년도 대비 증감		
구 분	회계연도(A)	회계연도(B)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86,993	312,983	74,010	23.6	
가. 프로그램 총원가	389,671	316,000	73,671	23.3	
나. 프로그램 수익	2,678	3,017	△339	△11.2	
Ⅱ. 관리운영비	75,299	71,314	3,985	5.6	
Ⅲ. 비배분비용	1	1	0	0.0	
Ⅳ. 비배분수익	2,264	2,010	254	12.6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460,029	382,288	77,741	20.3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V-W)	460,029	382,288	77,741	20.3	

통계청의 2020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268억 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490억 3,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22억 2,800만원(9.8%)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 연도 중에 국고수입 815억 6,600만원 증가, 기타재원조달 18억 1,600만원 증가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0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60억 1,1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0회계연도 통계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7 8	2020	2019	전년도 대비 증감			
구 분	회계연도(A)	회계연도(B)	A-B	(A-B)/B		
1. 기초순자산	226,806	211,269	15,537	7.4		
Ⅱ. 재정운영결과	460,029	382,288	77,741	20.3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66,244	393,041	73,203	18.6		
Ⅳ. 조정항목	16,011	4,784	11,227	234.7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49,034	226,806	22,228	9.8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사업, ②국가통계인식제고 사업 등이 있다.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로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 3억 1,100만원이 감액(39억 2,400만원→36억 1,300만원)되었고, 국가통계인식제고 사업은 언론홍보 관련 자체 업무수행도를 고려하여 2,500만원이 감액(6억 7,900만원→6억 5,4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중액된 사업**으로는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이** 있다.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통계대행이 최종 확정된 가족실태조사, 국가인권실태조사, 국제성인역량조사 예비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3억 4,800만원이 증액(9억원 → 22억 4,800만원)되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본부와 소속기관 인건비가 있다. 해당 인건비의 공무원 보수 불용 예상액과 연가보상비 미지급을 통한 41억원이 감액(1,480억원 → 1,439억원)되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인구주택총조사, ② 농림어업총조사 등 7개 사업이 있다. 총조사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실 기간제 인력과 공무원 실사지도 축소, 운영경비 절감 추진으로 50억원이 감액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4억원이 감액 (1,926억원 → 1,862억원)되었다.

통계청은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통계생산방식의 선진화를 위한 요구 증대에 따라 ①국가통계수요 확대 대응 강화, ②통계데이터 허브 구축 및 통계 패러다임 전환 대응, ③ 신뢰받는 국가통계 생산기반 강화, ④ 국내외 통계발전 선도를 2020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0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1년 실시되는 제3차 경제총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추가되는 행정사업체의 응답률이 준비조사 결과에서 낮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청은 행정사업체의 참여율이 높은 비대면조사의 참여 지원을 확대하여 행정사업체의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마이크로데이터와 연계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용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센터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 사업을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민간위 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내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1

# 비대면조사 참여 지원 확대를 통한 행정사업체 응답률 제고 필요

## 가. 현황

경제총조사 사업1)은 5년 주기로 전체 사업체의 기본현황, 종사자 및 영업실적 등을 조사하여 산업 전반의 운영형태와 규모, 고용구조, 경영실태 등 국내 경제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2021년 본조사를 위한 시범예행조사가실시되었다.

통계청은 경제총조사 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 13억 6,600만원 중 79.8%인 10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경제총조사 사업 결산 현황]

(다의 밴마워 %)

	(Uni. Tuu, 70									· ·, /0)
1 FOLDE		예	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사업명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돌용액
	경제총조사	1,366	1,366	0	0	1,366	1,091	79.8	0	275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는 분야별로 나누어 실시되던 산업총조사(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대상), 서비스업총조사(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서비스업 대상), 기타 각종 연간조사를 통합하여,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고용, 생산, 비용 등의 구조를 동일 시점에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2011년에 제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제2차 조사에 이어 2021년에는 제3차 조사를실시할 예정이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3736)

<sup>1)</sup> 코드: 일반회계 3033-306

제3차 경제총조사는 2017년에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2)를 활용하여, 기존에 조사하였던 '조사사업체'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운영되는 개인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별도의 사업장 없이 영업신고서 등 행정자료로만 존재하는 '행정사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제2차 및 제3차 경제총조사 비교]

구분	제2차 경제총조사(2016)	제3차 경제총조사(2021)
조사대상	조사사업체	조사사업체 + 행정사업체
조사규모	전수조사: 조사사업체 450만개	전수조사 <sup>1)</sup> : 조사사업체 217만개, 행정사업체 47만개 표본조사 : 조사사업체 36만개, 행정사업체 29만개
조사방법	대면: 종이 방문조사 비대면: 인터넷조사	대면: 종이 방문조사 비대면: 인터넷조사, 모바일조사

주. 1) 종사자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체, 공표단위(읍면동) 내에 1개만 있는 사업체 등 전수조사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계청은 제3차 경제총조사 본조사를 위한 준비조사로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였다. 준비조사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추가되는 행정사업체의 현장 조사를 위해 사업체 유형, 운영 형태 등 필요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고 그 밖에 신규 조사항목, 조사원 표준업무량 등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시범예행조사에서는 종이 방문조사와 함께 인터넷조사가 실시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었다.

<sup>2)</sup> 기업통계등록부(SB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기업 및 사업체 명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임

[제3차 경제총조사 준비조사 개요]

구분	제1차 시험조사 (2018)	제2차 시험조사 (2019)	시범예행조사 (2020)
조사지역	인천 서구, 광주 북구	경기 의왕시	서울 구로구, 부산 수영구
조사규모	전수조사: 12천개	전수조사: 16천개	전수조사: 28천개 표본조사: 10천개
조사방법	종이 방문조사	종이 방문조사	종이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조사기간	2018.10.1.~23.	2019.10.11.~11.4.	2020.7.6.~8.14.
조사인력	70명	87명	228명
중점 검토사항	· 행정사업체 조사가능성 · 행정사업체 산업분류 · 무등록사업체 조사방안 · 신규 조사항목 · 조사표 점검	· 행정사업체 조사가능성 · 사업체 명부 작성 및 비활동 사업체 · 신규 조사항목 · 조사원 표준업무량	· 행정사업체 조사가능성 · 표본조사 적용 · 인터넷조사 등 조사지원 · 신규 조사항목 · 조사원 표준업무량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2021년 실시되는 제3차 경제총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추가되는 행정사업체의 응 답률이 준비조사 결과에서 낮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청은 행정사업체의 참여율이 높은 비대면조사의 참여 지원을 확대하여 행정사업체의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3차 경제총조사 준비조사 응답 현황에서 행정사업체의 불응률은 4.1%, 13.3%, 1.4%로 조사사업체의 불응률 1.2%, 4.5%, 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준비조사 응답 현황]

(단위: 개, %)

	제1차 시험조사			제2차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구분   (2018)					(2019)		(2020)		
	응답	불응	합계	응답	불응	합계	응답	응 불	합계
조사	5,388	67	5,455	5,720	269	5,989	22,775	193	22,968
사업체	(98.8)	(1.2)	(100.0)	(95.5)	(4.5)	(100.0)	(99.2)	(0.8)	(100.0)
행정	2,329	100	2,429	3,181	490	3,671	5,993	86	6,079
사업체	(95.9)	(4.1)	(100.0)	(86.7)	(13.3)	(100.0)	(98.6)	(1.4)	(100.0)
합계	7,717	167	7,884	8,901	759	9,660	28,768	279	29,047
업계	(97.9)	(2.1)	(100.0)	(92.1)	(7.9)	(100.0)	(99.0)	(1.0)	(100.0)

주. 1. 준비조사의 조사대상 중 유고사업체(휴·폐업, 확인 불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체)는 제외 2. 불응에는 부재 포함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종이 방문조사만 실시되었던 시험조사에서 행정사업체의 불응률이 4.1%, 13.3%였던 반면, 인터넷조사가 병행 실시되었던 시범예행조사에서 불응률은 1.4%로 낮아졌다. 조사사업체의 불응률도 낮아졌지만, 제2차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비교해볼 때, 불응률 감소폭은 행정사업체(11.9%p)가 조사사업체(3.7%p)보다 크다.

그리고 시범예행조사 응답률에서 인터넷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행정사업체 (7.5%)가 조사사업체(3.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조사는 조사사업체 보다 행정사업체의 응답률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시범예행조사(2020) 조사방법별 응답률]

(단위: 개, %)

			(= 11 19 1)
구분 종이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합계
조사사업체	21,880	895	22,775
	(96.1)	(3.9)	(100.0)
	5,543	450	5,993
행정사업체	(92.5)	(7.5)	(100.0)
하게	27,423	1,345	28,768
합 계 	(95.3)	(4.7)	(100.0)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시범예행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에서 조사원들은 행정사업체를 조사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대표 응답자를 만나기어렵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기 때문에(37.4%), 대면조사가 어려운 행정사업체는 인터넷조사와 같은 비대면 조사를 통해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3차 경제총조사 본조사를 위한 준비조사에서 비대면 조사는 시범예행조사에서 인터넷조사로만 실시되었으며<sup>3)</sup>, 그 비중은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4.7%이다.

<sup>3)</sup> 통계청에 따르면 시험조사에서는 행정사업체 추가 관련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인터넷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모바일 조사는 2020년 말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 사에서 실시하지 않았음

<sup>\*</sup> 전화조사는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총조사 특성으로 인해 준비조사(시험조사 및 시범예 행조사)에서 실시되지 않았으며, 본조사에서도 실시되지 않을 예정임

#### [제3차 경제총조사 준비조사 조사유형별 응답 현황]

(단위: 개, %)

구분	종이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합계
시범예행조사	27,423	1,345	28,768
(2020)	(95.3)	(4.7)	(100.0)
제2차 시험조사	8,901	0	8,901
(2019)	(100.0)	(0.0)	(100.0)
제1차 시험조사	7,717	0	7,717
(2018)	(100.0)	(0.0)	(100.0)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에 본조사가 실시되었던 인구주택총조사 준비조사에서 비대면 조사가 제1차~제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에서 인터넷조사, 모바일조사, 전화조사로 실시되었고 인터넷조사의 응답률이 10%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경제총조사의 비대면 조사는 실시 횟수, 방법의 종류, 응답률이 모두 저조하다. 그리고 모바일조사는 경제총조사 준비조사에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 등 새로운 조사 방식도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유형별 응답 현황]

(단위: 가구, %)

(27).						
그ㅂ	구분 방문조사		인터넷	모바일	전화조사	합계
丁正	태블릿PC	종이	조사	조사	건최고시	합계
본조사	2,058,711	27,921	386,795	1,163,257	235,144	3,871,828
(2020)	(53.2)	(0.7)	(10.0)	(30.0)	(6.1)	(100.0)
시범예행조사	11,804	16	1,650	3,170	1,486	18,126
(2019)	(65.1)	(0.1)	(9.1)	(17.5)	(8.2)	(100.0)
제3차 시험조사	4,614	51	919	1,479	327	7,390
(2019)	(62.4)	(0.7)	(12.4)	(20.0)	(4.4)	(100.0)
제2차 시험조사	4,265	6	410	933	89	5,703
(2018)	(74.8)	(0.1)	(7.2)	(16.4)	(1.6)	(100.0)
제1차 시험조사	0	4,992	1,600	2,422	0	9,014
(2017)	(0.0)	(55.4)	(17.8)	(26.9)	(0.0)	(100.0)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설문조사에서 인터넷조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27.2%), 홍보 강화(25.6%), 시스템 편의성 제고(24.0%)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통 계청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비대면 조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준비조사에서 실시되지 않은 모바일조사와 관련하여 진행과정에 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보완함으로써 조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 행하는 한편, 사업체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때 응답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총조 사에 대한 기본사항, 항목별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제공하여 조사 참여 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실적 관리 필요

#### 가. 현 황

통계자료 제공 사업<sup>1</sup>)은 통계이용자들이 심층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sup>2</sup>)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계자료 DB수록 및 제공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마이크로데이터는 다운로드 서비스, 원격접근 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 이용센터 서비스(RDC: Research Data Center)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통계청은 동 사업을 한국통계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한국통계진흥원에 자료를 제공하면, 한국통계진흥원은 해당 자료를 각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자료이용료와 이용센터 서비스 설치기관의 부담금을 수납하여 통계청에 납부한다.

통계청은 2020년도 세출예산현액 5억 8,700만원 중 98.5%인 5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그리고 세입예산현액 4억 5,200만원 보다 8,800만원 많은 5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3736)

<sup>1)</sup> 코드: 일반회계 2031-301의 내내역사업

<sup>2)</sup>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는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임(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 https://mdis.kostat.go.kr 참고)

#### [2020회계연도 통계자료 제공 사업 세출예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тюн	예	예산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브요애
사업명 	본예산	추경	(A)	(B)	(B/A)	이월액	불용액
통계자료 DB수록 및 제공		1,171	1,171	1,154	98.5	0	17
통계자료 제공 및 통계간행물 판매 위탁	597	597	597	588	98.5	0	9
통계자료 제공	587	587	587	578	98.5	0	9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 [2020회계연도 통계자료 제공 사업 세입예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 본예산	산 추경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기타잡수입	1,309	1,309	1,309	1,651	1,651	0	0	100.0
통계자료 제공	452	452	452	540	540	0	0	100.0
- 자료 제공	290	290	290	378	378	0	0	100.0
- RDC 운영	162	162	162	162	162	0	0	100.0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는 총 3가지로 다운로드 서비스는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자 PC에 다운로드는 받아 분석하는 방식이고, 원격접근 서비스는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자 PC에서 통계청 서버에 접속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용센터 서비스는 가장 상세한 수준의 자료인 인가용·특수목적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안환경이 갖추어진 이용센터에 방문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유형별 비교]

구분	다운로드 서비스	원격접근 서비스	이용센터 서비스		
제공범위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sup>1)</sup>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 <sup>2)</sup>	인가용·특수목적용 마이크로데이터 <sup>3)</sup>		
이용신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문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용신청서 접수			
이용승인	불필요	인구계획서 등 검토 후 승인 필요 (연구계획서, 연구목적 등 검토)			
파일생성	이용자가 직접 추출	통계청 담당자가 이용자가 요청한 항목을 추출하여 제공			
파일위치	이용자 PC	통계청 서버	통계청 서버		
자료분석	이용자 PC에서 분석	이용자 PC에서 통계청 서버에 접속하여 분석	이용센터 내 PC에서 통계청 서버에 접속하여 분석		
자료반출	불필요	MDI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구결과물을 반출 신청 (통계청 승인 후 반출 가능)			

- 주: 1)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이용자를 위해 사전에 만들어진 익명화된 자료
  - 2)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 사전 인가 절차를 거쳐 원격접근 서비스와 이용센터 서비스 이용자 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자료
  - 3) 특수목적용 마이크로데이터: 사전 인가 절차를 거쳐 이용센터 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한적 으로 제공되는 자료
  - \* 공공용, 인가용, 특수목적용 마이크로데이터로 갈수록 상세한 자료를 제공
- 1. 제공자료가 한정적(사업체 기본정보, 가구명부 정보, 사망원인정보)인 주문형 서비스 제외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이용센터 서비스에서는 국가승인통계 48종의 통계기초자료만 제공되고 있으므로, 통계청은 이용센터 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마이크로데이터와 연계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의 사용실적은 3가지 모두 2019년 대비 증가하였다. 이용센터 서비스의 사용실적도 증가하였으나, 다른 서비스에 비해 사용실적 건수는 저조한 편이다.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유형별 사용실적]

(단위: 건, %)

			( 4 11 - 4 11
구분	2019(A)	2020(B)	증감률((B-A)/A)
다운로드 서비스	66,821	90,129	34.9
원격접근 서비스	463	565	22.0
이용센터 서비스	155	210	35.5

주: 다운로드 서비스는 자료 추출 건수, 원격접근 서비스 및 이용센터 서비스는 프로젝트 건수(이용센터 서비스 210건 중 166건은 계획 변경 없이 진행된 연구 건수이고, 44건은 추가 또는 변경하여 진행된 연구 건수임)

각 장소별 이용센터 서비스의 사용실적은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0건 미만인 곳이 6개소에 이르며, 전체 평균 사용실적은 17건에 불과하다.

#### [장소별 이용센터 서비스 사용실적]

(단위: 건)

설치장소		설치시기	이용실적			
		2시시기	2018	2019	2020	
합계			60	155	210	
평 균 <sup>1)</sup>			10	15	17	
통계센터	대전	2006.12.	2	7	6	
한국통계진흥원	서울	2007.6.	12	8	26	
한국개발연구원	세종	2008.4.	15	26	16	
서강대학교	서울	2014.4.	17	16	24	
서울대학교	서울	2018.1.	6	3	12	
국회도서관	서울	2018.4.	8	24	7	
건강보험공단 통합	원주	2018.12.	-	52	72	
전북대학교	전주	2019.3.	-	7	5	
제주대학교	제주	2019.7.	-	1	3	
세종국책연구단지	세종	2019.11.	-	3	22	
광주 통합청사	광주	2020.3.	-	-	2	
부산 통합청사	부산	2020.5.	-	-	6	
통계데이터센터 연계서비스 7	세공 세공	-	-	8	9	

주. 1) 통계데이터센터 연계서비스 제공(이용센터 서비스 서버에서 통계데이터센터 서버로 자료 전송) 제외 -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al Data Center)는 공표 전 행정통계 조사 자료와 민간자료를 제공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sup>1.</sup> 코로나19로 인해 국회도서관 RIX는 외부인 사용 불가 기간(2020.2.24.~7.24, 8.17.~10.26, 11.24.~12.9, 12.11.~12.31.) 및 폐쇄 기간(2020.12.10.~12.11.), 서강대학교 RIX는 폐쇄 기간(2020.8.29.~8.31.)이 있었음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센터 서비스의 특성상 프로젝트 1건을 장기간 수행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포함한 상세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프로젝트별 평균 사용 기간은 72.1일에 이르지만, 30일 이하로 저조한 곳도 있다.

#### [2020년 기준 장소별 이용센터 서비스 상세 사용실적]

(단위: 건)

설치장소			프로젝트별 평균 사용 기간
		941)	72.1
대전	2006.12.	6	19.7
서울	2007.6.	21	42.1
세종	2008.4.	13	112.8
서울	2014.4.	12	89.6
서울	2018.1.	5	19.6
서울	2018.4.	7	139.1
전주	2019.3.	3	30.3
제주	2019.7.	3	154.7
세종	2019.11.	13	75.5
광주	2020.3.	2	42.0
부산	2020.5.	4	44.8
제공		5	43.2
	서울 세종 서울 서울 전주 제주 세종 광주	서울 2007.6.  세종 2008.4.  서울 2014.4.  서울 2018.1.  서울 2018.4.  전주 2019.3.  제주 2019.7.  세종 2019.11.  광주 2020.3.  부산 2020.5.	94 <sup>1)</sup> 대전 2006.12. 6 서울 2007.6. 21 세종 2008.4. 13 서울 2014.4. 12 서울 2018.1. 5 서울 2018.4. 7 전주 2019.3. 3 제주 2019.7. 3 세종 2019.11. 13 광주 2020.3. 2

주. 1) 2020년 사용실적 210건 중 통계청에서 자료만 제공하는 방식인 건강보험공단 통합 RDC 72건은 제외하고, 기존 프로젝트에서 변경하여 추가로 진행된 44건은 최초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산정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용센터 서비스는 설치기관이 부담금을 납부하지만 운영을 위해 인력이 지원 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저조한 설치기관의 이용센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준 이용센터 서비스 운영형태]

설치장소		설치시기	운영형태
한국통계진흥원	서울	2007.6.	위탁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세종	2008.4.	
서강대학교	서울	2014.4.	
서울대학교	서울	2018.1.	
국회도서관	서울	2018.4.	기관별 각 1인 지원
전북대학교	전주	2019.3.	
제주대학교	제주	2019.7.	
세종국책연구단지	세종	2019.11.	
통계센터	대전	2006.12.	트 케리시트 케디
광주 통합청사	광주	2020.3.	통계데이터센터 통합운영 <sup>1)</sup>
부산 통합청사	부산	2020.5.	0 日 년 0
건강보험공단 통합	원주	2018.12.	자체운영

주: 1) 대전 통계센터, 광주 통합청사, 부산 통합청사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센터 서비스 자료 이용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기준으로 이용센터 서비스 사용목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술연구 및 논문작성(61.4%)이고 그 다음은 정책수립(28.1%)이다. 두 가지 목적이 이용센터 서비스 사용목적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용센터 서비스는 학술연구, 논문작성, 정책수립에 주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 [2020년 기준 이용센터 서비스 자료 사용목적]

(단위: 건, %)

이용목적	학술연구 및 논문작성	정책수립	조사수행 (표본설계)	기타	합계
건수	129	59	10	12	210
비중	61.4	28.1	4.8	5.7	100.0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용센터 서비스 설치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신청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30.0%)이 가장 많았으나 연구기관(28.1%)도 이와 비슷한 비중이며, 그 다음은 의료기관(19.0%), 국가기관 및 지자체(10.5%) 순서이다.

#### [2020년 기준 이용센터 서비스 자료 신청기관]

(단위: 건, %)

신청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기타	합계
건수	63	59	40	22	26	210
비중	30.0	28.1	19.0	10.5	12.4	100.0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용센터 서비스의 자료를 사용하는 목적과 신청기관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센터 서비스는 학술연구, 논문작성, 정책수립 등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위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한다.

통계청은 이용센터 서비스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사망원인 통계 등 국가승인통계 48종의 통계기초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보건, 행정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마이크로데이터 또는 마이크로데이터와 연계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용센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청은 운영 중인 이용센터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센터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 는 기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많은 활용이 예상되는 곳에 이용센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용센터 서비스는 2006년 대전 통계센터를 시작으로 각 기관에 설치되었으나, 매년 2~3개소씩 신설되며 설치가 활성화된 것은 2018년부터이다. 각 장소별 이용센터 서비스의 사용실적은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17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젝트별 평균 사용 기간은 72.1일에 이른다.

장소별로 실적이 저조한 설치기관도 있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센터 서비스는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위해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실적으로 설치 유지 여부를 판 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이용센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활용 자료, 운영 설비, 보안 등 다양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이용센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센터 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이용센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이용센터 서비 스의 신규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sup>3)</sup> 설치 요청 기관으로부 터 활용계획서 등을 제출받고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여, 많은 활용이 예상되 는 곳에 이용센터 서비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계청은 이용센터 서비스 운영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제공 위탁사업을 일 반용역비(210-14목)에서 집행하고 그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하여 적정 비목에서 집행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집 행내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이용센터 서비스 운영을 포함한 통계자료 제공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한국통계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한국통계진흥원이 위탁사업으로 대행 하고 있다.

한국통계진흥원은 위탁사업 예산으로 ① 이용센터 서비스 설치기관 7개소에 각 1명씩 인력을 지원하고 이용센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한다. ② 그리고 이용센터 서비스를 포함한 다운로드 서비스, 원격접근 서비스 등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안내 및 교육, 자료 생성 및 제공, 운영시스템 모니터링, 보안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sup>3) 「</sup>인가된 통계기초자료(Licensed Microdata) 이용규정」

제5조(이용센터의 설치) 이용센터는 통계서비스정책관 소속으로 서울, 대전, 세종시 등에서 설치 운영 중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한국통계진흥원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위탁사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에는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사용건수, 교육실시건수 등의 업무실적만 기 재되어 있고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의 집행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탁사업 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통계청은 통계자료제공 사업을 일반용역비(210-14목)에서 집행하고 수탁기관과 총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계자료 제공 사업은 「통계법」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사업이고,4) 한국통계진흥원은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된 동 사업의 수탁기관이다.5)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집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 계리하고, 위탁사업이 종료될 경우 잔액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6)

따라서 통계청은 동 사업비를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 (320-02목)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인 한국통계진흥원이수탁사업 예산을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하는지, 목적에 맞게 집행한 후 정산하여 잔액을 국고로 환수하는지 등 위탁사업의 예산 집행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37조(위임 및 위탁)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5.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 5)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 1. 수탁기관: 한국통계진흥원
  -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통계발전지원 사업	- 통계간행물: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통계자료 관리, 통계간행물 판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기타 내용 생략)

6)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0.4., p.204

<sup>4) 「</sup>통계법」

#### 가. 현 황

통계청은 통계간행물,1) 통계교육,2) 정기통계품질진단,3) 국제협력,4) 통계 작성 및 홍보,5) 통계정보화6) 업무에 대해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은 민간위탁 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 77억 8,000만원 중 96.8%인 7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민간위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 O LIB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보요애
	사업명		추경	(A)	(B)	(B/A)	이월액	불용액
민간	민간위탁 사업 <sup>1)</sup>		7,780	7,780	7,528	96.8	0	252
	통계간행물	1,099	1,099	1,099	1,084	98.6	0	15
	통계교육	12	12	12	12	100.0	0	0
	정기통계품질진단	1,404	1,404	1,404	1,344	95.7	0	60
	국제협력	697	697	697	620	89.0	0	77
	통계 작성 및 홍보	1,212	1,212	1,212	1,174	96.9	0	38
	통계정보화	3,356	3,356	3,356	3,294	98.2	0	62

주: 1) '민간위탁 사업'으로 구분된 별도의 사업명은 없으며, 민간위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합산한 내역임

자료: 통계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3736)

<sup>1. 2020</sup>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sup>1)</sup> 코드: 일반회계 2031-301의 내역사업

<sup>2)</sup> 코드: 일반회계 7011-253의 내내역사업

<sup>3)</sup> 코드: 일반회계 1031-301의 내내역사업

<sup>4)</sup> 코드: 일반회계 3034-307, 7031-303의 각 내내역사업

<sup>5)</sup> 코드: 일반회계 1031-301, 2031-303, 3037-309, 3037-310, 7011-251의 각 내내역사업

<sup>6)</sup> 코드: 일반회계 1031-301, 2031-302의 각 내내역사업

통계청이 지정한 수탁기관은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이다. 이 중 한국통계진흥원의 12개 수탁사업에 42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고, 한국통계정보원의 3개 수탁사업에 32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다.

## [2020회계연도 민간위탁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수탁기관	위탁기간	사업구분	집행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비목										
		통계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통계 자료 DB수록	502	2 496											
		간행물	통계간행물	10	10											
			통계자료 제공	587	578											
		통계교육	사회조사분석사 업무 관리	12	12											
한국	2019.1.1. ~ ~ 2023.12.31.	정기통계 품질진단	정기통계품질진단	1,404	1,344	일반 용역비										
통계 진흥원		국제협력	국제인구통계 협력	447	417											
(12개		국제합력	5세엽덕 통계청-ILO 공조 프로젝트	250	203											
사업)		국가통계개발 국가주요지표체계관리 통계조사 모니터링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 통계전시관 운영	국가통계개발	950	913											
			국가주요지표체계관리	77	76											
			통계조사 모니터링	85	85	관리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	47	47											
			통계전시관 운영	53	53	용역비										
													소 계	4,424	4,234	
한국 통계		통계	통계정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28	324	관리										
공계   정보원		정보화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1,339	1,309	용역비										
(3개	2023.12.31.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운영	1,689	1,661											
사업)			소 계	3,356	3,294											
			합 계													

자료: 수탁기관, 위탁기간, 사업구분은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타 항목은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통계청은 민간위탁 사업을 일반용역비(210-14목) 또는 관리용역비(210-15목)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통계법」제29조 및 제37조7에 위탁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고, 관련고시80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15개의 위탁사업을 운영하였다. 통계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를 사유로 수탁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비를 일반용역비(210-14목) 또는 관리용역비(210-15목)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제반 비용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에서 집 행하도록 되어 있다.

#### 7) 「통계법」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제37조(위임 및 위탁)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 1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2. 제8조의 통계교육
-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 5.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 8)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
-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비목별 적용범위 비교]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민간위탁사업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전문성이 필요한 <u>행사운영,</u>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소관)」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등 <u>기관의 운영과정에서</u>	또는 <u>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u>	
<u>일상적인 업무</u> 를 용역계약을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u>사무의 일부</u> 를 지방자치단체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일정기간 동안 <u>용역계약을</u>	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관 등에 <u>민간위탁</u> 하는 경우	
	<u>대행</u> 시키는 비용	제반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0.4., p.170, p.203

따라서 통계청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나라통계시스템은 조사기획, 자료처리, 집계 등 통계 생산의 모든 단계를 표준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계생산시스템이다. 나라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1)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 개선을 위한유지·보수 사업이고, 위탁운영 사업2)은 통계의 적시 생산 및 품질 제고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통계청은 나라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 14억 5,000만원 중 95.8%인 13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위탁운영 사업의 예산현액 40억 2,000만원 중 98.5%인 39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20회계연도 나라통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ПОШ	예산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브요애
사업명	본예산	추경	등	(A)	(B)	(B/A)	이월액	불용액
나라통계사스템 구축 (정보화)	6,857	6,857	0	6,857	6,715	97.9	0	142
나라통계시스템 유지관리	1,450	1,450	0	1,450	1,389	95.8	0	61
나라통계시스템 위탁운영	4,020	4,020	0	4,020	3,959	98.5	0	61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3736)

<sup>1)</sup> 코드: 일반회계 2031-305의 내역사업

<sup>2)</sup> 코드: 일반회계 2031-305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통계청은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지관리 사업과 위탁운영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시스템 개선과 각 통계조사 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나라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위탁운영 사업은 개선된 기능을 활용하여 개별 통계조사를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나라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위탁운영 사업 내용 비교]

구분	유지관리	위탁운영
사업 내용	• 나라통계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통계생산 기능: 조사표·내검·집계표 설계 등 - 부가기능: 조사원채용, 표본추출, 통계생산시스템(NARA-PC) 등 • 상용SW 관리 및 시스템 모니터링	• 나라통계시스템 기반의 개별 통계생 산시스템 운영 - 나라통계시스템의 표준화된 통계생산 기능을 활용하여 개별 통계조사 일정에 따라 조사표 설계, 내검, 조사별 홈페이 지 및 입력시스템 운영 - 248개 기관 465종 국가통계생산 지원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계청은 유지관리 사업은 나라통계시스템의 핵심인 통계생산 기능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위탁운영 사업은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사표설계, 입력, 자료처리, 시스템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유지관리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위탁운영 사업의 통계생산 적시 지원을 위해 두 사업을 구분하여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은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력과 전문성을, 위탁운영 사업에서는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작성기관의 지원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 다. 그러나 위탁운영 사업에서도 각 통계조사를 위한 조사표 설계, 자료 생성, 통계 표 작성 등 시스템 운영 지원, 오류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나라통계시스템 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유지관리 사업과 위탁운영 사업을 두 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모두 계약한 내역을 통해서도 두 사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4년간 1인 입찰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sup>3)</sup>을 체결한 후 2020년에는 중소기업자 제한경쟁입찰<sup>4)</sup>로 계약자를 선정하여, ㈜A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5년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라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자별 지분율 및 계약방식]

(단위: %)

7 8	계약상대자	그 외 침	계약방식	
구 분	㈜A기업	㈜B기업	㈜C기업	계약경역
2016	61.0	-	39.0	
2017	55.7	-	44.3	일반경쟁→수의
2018	54.7	-	45.3	(1인 입찰 등)
2019	61.4	38.6	-	
2020	62.8	37.2	1	제한경쟁 (중소기업자)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sup>3) 「</su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sup>1.</sup>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sup>2.</sup>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sup>4) 「</su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 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sup>8. 「</sup>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위탁운영 사업은 2016년에는 긴급한 사유5로, 이후 2020년까지 4년간은 1인 입찰 등의 사유로 ㈜B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5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라통계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계약자별 지분율 및 계약방식]

(단위: %)

	(21). 79						
구 분	계약상대자		계약방식				
十世	㈜B기업	㈜A기업	㈜D기업	(재)E	71707		
2016	51.0	49.0	-	-	일반경쟁→수의 (긴급한 사유)		
2017	38.0	31.0	31.0	-			
2018	43.7	36.3	20.0	-	일반경쟁→수의		
2019	52.4	33.8	13.8	-	(1인 입찰 등)		
2020	44.2	29.8	15.5	10.5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탁운영 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다르지만 컨소시엄 구성기업에는 모두 ㈜A기업과 ㈜B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지관리 사업과 위탁운영 사업은 사실상 두 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에는 동일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스템의 개선된 기능을 각 통계조사에 활용하고, 각 통계조사에서 필요 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 지관리 사업과 위탁운영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지관리 사업과 위탁운영 사업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시스템 개선과 각 통계조사 지원을 유기적으로 적용하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sup>5) 「</su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up>1.</sup>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결산분석시리즈Ⅱ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1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435-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